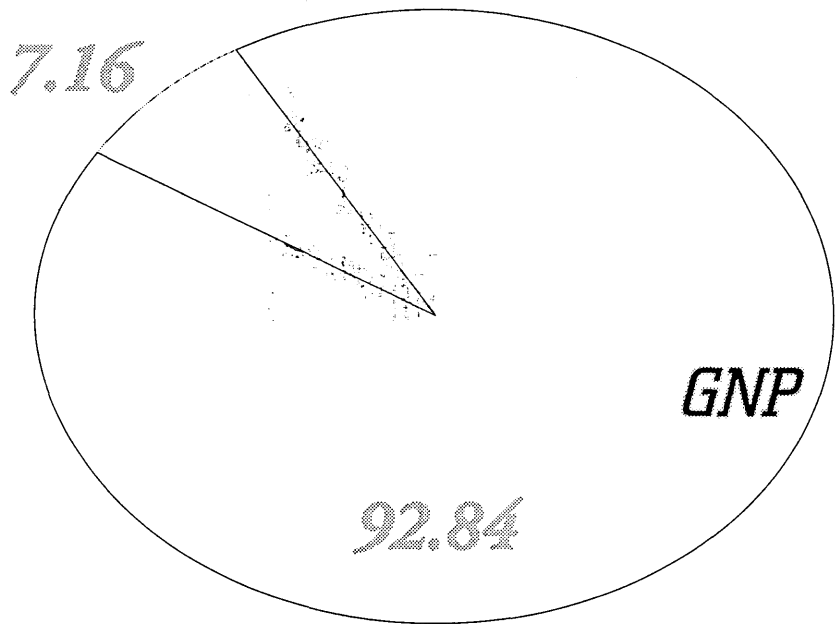


남북

經濟會談

핸드북



남북회담사무국

머 리 말

남과 북은 지난해 오랜 적대와 대결에 종지부를 찍고 화해와 협력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는 역사적 장전인 「남북기본합의서」와 이의 구체적 대책을 담은 분야별 부속합의서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부속합의서의 이행기구인 각 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남북간에 경제교류·협력이 활성화되고 끊어진 철도와 도로 및 우편·전기통신이 연결되며 해로, 항로도 다시 개설되는 등 한반도가 하나의 민족경제권으로 복원되어 민족공영의 길로 성큼 다가설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측은 우리의 방어적 훈련을 구실로 남북회담을 일방적으로 중단시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생존과 직결되고 한반도 및 세계 평화에 위협이 되는 핵문제 해결에 무성의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단절과 대결로 특징지워진 냉전의 시대를 마감하고 화해와 협력을 통해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면서 유럽공동체, 동남아국가연합, 북미자유무역지대, 남미공동시장 등 각 지역별로 거대한 경제블럭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남과 북이 같은 민족으로서 서로 교류와 협력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매우 가슴아픈 일이라 생각됩니다.

북한의 핵문제로 인해 남북관계가 잠시 긴장상태로 머물러 있지만 이념적 대결을 청산하는 세계사의 흐름은 결코 이러

한 남북관계를 오래 두지 않게 될 것이며 가까운 시일내에 남과 북은 화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진정한 동반자 관계가 되리라는 강한 신념과 희망을 가지고 민족의 슬기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 「남북경제회담 핸드북」은 남북간 경제교류·협력을 통해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며 민족경제공동체를 회복하여 공존공영할 수 있는 길을 트는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가 개최될 것에 대비한 자료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I 장에서는 지난 1984-1985년 사이 5차례 진행된 바 있는 남북경제회담의 추진경과와 쌍방 주장을 비교하였으며, 제 II 장은 「남북기본합의서」 및 「남북교류·협력부속합의서」의 타결과정중 경제교류·협력부문을 중심으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제 III 장에서는 1988년 「7·7선언」이후부터 1993년 10월까지의 남북간 경제교류·협력 현황을 살펴보고, 제 IV 장에서는 북한의 경제일반 및 교통, 우편·전기통신, 관광, 과학기술, 환경 등 북한경제 전반에 대해 현황을 설명하고 제 V 장은 UNDP주관하에 추진되고 있는 두만강지역개발계획의 추진경과·현황과 북한의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의 실태와 전망을 담았습니다.

한편, 부록에는 남북간 교류·협력분야와 관련한 주요 합의서와 교류·협력 관련 제법령 그리고 최근에 발표되어온 북한의 대외경제 관련 법령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이 책자에서 미진한 부분은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새로이 입수되는 자료는 보충하여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 드립니다.

본 책자의 원고는 외부인사에게 의뢰하지 않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지식과 입수된 자료를 활용하여 운영 2부장님의 지도하에 경제회담과장과 직원들이 내용을 분담하여 불과 두 달 동안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여 집필하였습니다. 각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집필자들의 심도있는 토의과정을 거쳐 방향을 정하고 집필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책자가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 위원 및 수행원을 포함하여 남북회담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남북경제교류·협력사업과 관련된 단체나 인사들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자료가 되었으면 합니다.

1993. 12.

운영 2부
경제회담과

목 차

I. 남북경제회담(1984—1985) 추진경과 및 결과	5
1. 남북경제회담의 성립배경 및 경과	7
가. 성립배경	7
나. 성립경과	7
2. 남북경제회담의 진행	9
가. 회담일정 및 대표단 명단	9
나. 회담경과	10
3. 남북경제회담시 쌍방 주장 비교	20
가. 경제교류·협력에 대한 기본원칙 및 입장	20
나. 물자교역 방안	21
다. 경제협력 방안	24
라. 경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 방안	26
II. 「남북교류·협력부속합의서」 타결과정	29
1. 「교류·협력」에 대한 쌍방 기본입장	31
2. 남북기본합의서(경제교류·협력부문)타결과정	33
가. 타결과정	33
나. 쌍방 제의 및 주장 비교	35
3. 남북교류·협력부속합의서(경제교류·협력부문) 타결과정	39
가. 타결과정	39
나. 쌍방 제의 및 주장 비교	43
III. 남북간 교류·협력사업 현황	73

1. 개 황	75
2. 교역현황	77
가. 교역규모	77
나. 교역수지	78
다. 반입·반출 승인기관	79
라. 교역품목	80
마. 교역방식 및 교역형태	86
바. 교역중개지	88
3. 평 가	90
IV. 북한경제 현황	93
1. 경제일반	95
가. '92년도 경제시책 방향	95
나. 경제총량 규모와 성장추이	99
다. 주요 산업별 동향	103
라. 대외경제 동향	109
마. 평 가	113
2. 교 통	117
3. 우편과 전기통신	121
4. 관 광	124
5. 과학기술	128
6. 환 경	132
V. 두만강지역 개발계획을 통한 남북경제협력	135
1. 두만강지역 개발계획(TRADP)의 추진경과 및 현황	137

가. 추진배경	137
나. 목표와 추진현황	138
다. 지리적 위치 및 개발범위	141
라. 개발대안 및 관련국 입장	142
마. TRADP 실현을 위한 과제	147
2. 나진 - 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의 실태와 전망	151
가. 개 황	151
나. 개발계획	162
다. 평가 및 전망	173

【부 록】

I. 남북간 교류 · 협력분야 주요합의서	177
1.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 협력에 관한 합의서	179
2. 남북교류 · 협력부속합의서	184
3. 남북교류 · 협력공동위원회 구성 · 운영에 관한 합의서	193
II 남북교류 · 협력 관련 법령	197
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199
2.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208
3. 남북협력기금법	227
4.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232
III. 북한의 대외경제 관련 법령	239

1. 사회주의 헌법(경제분야)	241
2. 외국인투자법	245
3. 합작법	249
4. 합영법	252
5. 외국인기업법	256
6.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261
7. 자유경제무역지대법	274
8. 외화관리법	282
9. 토지임대법	286
10. 외국투자은행법	294

IV. 남북경제회담 및 남북고위급회담(교류·협력분야)

일지	301
1. 남북경제회담 일지	303
2. 남북고위급회담 일지	304

I. 남북경제회담(1984—1985) 추진경과 및 결과

1. 남북경제회담의 성립 배경 및 경과

가. 성립배경

- '83년 10월 9일 북한에 의해 저질러진 버마 랭군사건으로 인해 '84년 상반기까지 남북간 분위기가 경색되어 있었음.
- 이러한 상황하에서 우리측은 남북한 교역·경제협력제의 및 물자·기술 무상제공 용의 표명('84. 8. 20, 대통령 하계기자회견)과 수재물자 인수('84. 9. 29~30)를 계기로 남북대화를 재개, 그동안 경색되었던 분위기를 완화하고 남북간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남북경제회담을 개최할 것을 북한측에 제의하였음.
- 북한측은 랭군사건 이후 계속되고 있는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고 일본 및 미국을 비롯한 서방제국과의 자본 및 기술합작을 위한 『합영법』('84. 9. 8발표)실시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남북경제회담이 다른 어떤 회담보다도 적합하다고 보아 우리측의 남북경제회담 제의를 수락하였음.

나. 성립경과

- '84. 8. 20 : 전두환 대통령, 남북한 교역·경제협력제의 및 물자·기술 무상제공 용의 표명
- 9. 8 : 북한, 『합영법』발표

- 9. 29~30 : 북한 적십자회의 수재물자 제공제의를 수용, 수재물자 인수
 - 판문점, 인천항, 북평항
 - 쌀 5만석, 옷감 50만미터, 시멘트 10만톤, 의약품 14종

- 10. 12 : 신병현 부총리, 남북경제회담 제의
 - “수재물자 인도·인수와 북한의 합영법 제정·발표를 계기로 이를 보다 폭넓은 교류·협력단계로 발전시키고자”

- 10. 13 : 경제4단체장, 남북경제회담 수락 촉구 합동성명 발표
 - “남북한 물자교역 및 합작투자 방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부가 제의한 남북경제회담이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북한측의 긍정적 호응을 촉구”

- 10. 16 : 북한 김환 부총리, 남북경제회담 제의 수락
 - “차관급을 단장으로 한 남북경제회담을 '84년 11월 15일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하기로”

2. 남북경제회담의 진행

우리측의 남북경제회담 개최 제의를 북측이 수용함에 따라 남북 쌍방은 '84년 11월 12~13일 남북경제회담 대표단 명단을 교환하고 11월 15일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였음.

가. 회담일정 및 대표단 명단

(1) 회담일정

○ 제1차회의 : '84. 11. 15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

○ 제2차회의 : '85. 5. 17 "

※ '84.12. 5 제2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쌍방이 합의하였으나, 북한은 소련 외교관 견습생의 판문점 군사분계선 월경으로 발생한 총격사건('84. 11. 23)을 구실로 회담일정을 1차 연기('85. 1. 17)하였다가 「타임스피리트 85」훈련 발표를 계기로 「타임스피리트 85」훈련이 끝나는 4월 중순 이후로 회담일정을 다시 연기했음.

○ 제3차회의 : '85. 6. 20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

○ 제4차회의 : '85. 9. 18 "

○ 제5차회의 : '85. 11. 20 "

※ '86. 1. 22 제6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쌍방이 합의하였으나 북한은 「타임스피리트 86」훈련을 구실로 회담을 지연시키다가 결국은 남북경제회담을 중단시켰음.

- 남북 쌍방은 회담의제에 대해 집중토의를 진행, 회담의제를 단일의제로 하되 북측이 제시한 초안에서 “합작”을 “협력”으로 하기로 의견접근을 이루었음.
- 남북 쌍방은 이미 가설되어 있는 남북 직통전화 회선중에서 경제회담용 회선을 별도로 지정하여 이용하기로 합의하였음.

<제1차 회의시 쌍방제의 내용 비교>

우 리 측	북 측
<p style="text-align: center;">회담의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간에 교역을 실시하는 문제 ○ 남북간에 경제협력을 실시하는 문제 	<p style="text-align: center;">회담의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과 남사이의 경제분야에서 합작과 교류를 실현할데 대하여」
<p style="text-align: center;">물자교역 문제</p> <p>(교역품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입희망품목 : 무연탄, 철광석, 선철, 연괴, 아연괴, 규사, 고철 등과 명태, 누에고치, 팥, 옥수수, 피마자 등 농수산물, 기타 한약재 ○ 판매가능품목 : 철강 및 제품, 동 및 제품, 알미늄 제품 등, 가정용 및 공업용 재봉기, 경운기, 승용차, 2륜자동차 등 기계류, 시계, 천연색 텔레비전 수상기, 음향기기 등 전기· 	<p style="text-align: center;">물자교류 문제</p> <p>(교류품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매희망품목 : 철광석, 석탄, 마그네샤크링카, 일반공작기계, 채취설비 등 공업상품과 명태, 쌀, 강냉이 등 농수산물 ○ 구입희망품목 : 철강재, 중석광, 납사, 섬유 등 공업상품과 남해어족, 소금, 감귤 등 농수산물

우 리 측	복 측
<p>전자제품, 섬유원료, 섬유직물, 담요 등 섬유류, 기타 고무벨트, 피아노, 황산카리, 정제 글리세린 및 의약품 등</p> <p>(교역량)</p> <p>○ 쌍방 대내수급 사정과 대외무역 규모 등을 고려하여 품목별로 정함.</p> <p>(가 격)</p> <p>○ 원칙적으로 객관적 국제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교역 당사자간의 상담을 통해 결정함.</p> <p>(거래당사자)</p> <p>○ 교역주체는 쌍방당국이 지정하는 특정 교역기관 또는 상사로 하고 가급적 거래창구를 일원화하되 점차 다원화함.</p> <p>(거래방식)</p> <p>○ 원칙적으로 제3국은행 발행 L/C에 의한 거래방식이 가장 합리적임.</p> <p>○ 교역 초기단계에는 구상무역형태도 무방함.</p> <p>○ 교역이 확대될 경우 청산협정방식도 고려할 수 있음.</p>	<p>(거래방식)</p> <p>○ 물자교류는 원자재, 완제품과 농수산물을 유무상통하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자재는 원자재끼리 - 완제품은 완제품끼리 - 농수산물은 농수산물끼리 교류하는 것이 합리적임.

우 리 측	북 측
<p>(결제업무의 취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국은행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진전에 따라 양측의 외국 환은행을 창구로 고려할 수 있음. <p>(결제통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국제교환성 통화(US\$, DM, ¥, £ 등)중에서 선정하여 사용함. ○ 장차 남북간의 결제에만 통용되는 새로운 결제단위 창출을 고려함. <p>(관 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간의 무역이 아니므로 관세부과는 불필요함. <p>(수 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량화물의 경우 원칙적으로 구입측 선박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함. ○ 교역이 확대됨에 따라 철도수송이 가능토록 남북간 철도연결 작업도 추진함. ○ 소량 화물은 자동차를 이용하며 이를 위해 판문점에 공동하역장을 설치함. 	<p>(수 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항만 이용이 능률적임. - 우선 경의선을 연결함. - 남포항, 원산항과 인천항, 포항항을 개방·이용토록 함.

우 리 측	북 측
<p>(기타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자교역에 수반되는 통관, 검사, 통신 문제, 사고처리 및 이견조정 문제 등 구체적 사항은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함. ○ 이상의 문제를 포함하여 지속적이고 원활한 남북간 교역을 추진하기 위하여 남북관계당국간에 교역협정을 체결하고 이에 수반되는 관련 제반 세부약정을 체결함. 	
<p style="text-align: center;">경제협력 및 합작투자 문제</p> <p>(공동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이미 20개 시범실천사업을 통해 남북간에 자연자원의 공동개발 및 공동이용, 남북어민들을 위한 공동어로구역 설정 추진 등을 제의한 바 있음. <p>(합작투자 및 기술협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간 물자교역을 추진하면서 무연탄, 철광석 등 자원개발, 천연색 텔레비전 수상기, 음향기기 등 가전제품 생산, 폴리에스틸계 등 섬유류 생산, 의 	<p style="text-align: center;">경제합작 문제</p> <p>(지하자원 공동개발 및 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쌍방이 자기의 노력, 설비로써 상대측 광산과 탄광을 이용하는 문제부터 시작할 수 있음. 우리는 철광산, 탄광을 제공하고 귀측은 중석광산, 몰리브덴(수연)금속광산 등을 우리측에 제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함. <p>(어업분야의 합작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과 남이 공동어로구역(귀측에서도 제기한 바 있는데 개념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실무토의가 있어야 하겠음)을 설정하고 남북의 어민들이 자유로

우 리 측	북 측
<p>약품 및 화장품 생산, 기타 관광 및 해운사업 등 서비스 분야에 대한 합작투자도 가능함.</p> <p>○ 광범한 경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자본·기술 및 인적교류가 필요함.</p>	<p>이 물고기를 잡게 함.</p> <p>○ 이와 동시에 새로운 어장을 공동개발, 이용할 수도 있음.</p> <p>○ 수산합영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음.</p> <p>(농업분야의 합작문제)</p> <p>○ 남쪽 지역의 서해안 간석지를 공동개발하거나 군사분계선에 의해 끊어진 관개망을 다시 연결·이용함.</p>
<p>경제협력기구 설치문제</p> <p>○ 남북의 물자교역 및 경제협력 문제를 협의하며 동 문제를 원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쌍방의 관계당국 및 경제단체 인사들로 구성되는 가칭 「남북경제협력위원회」설치를 제의함.</p>	<p>공동협력기구 설치문제</p> <p>○ 합작·교류의 통일적 조절을 위한 공동협력기구를 설치해야 함.</p> <p>○ 쌍방에서 각 5명 정도의 각 부문 경제전문가를 망라해 「북남경제협력위원회」를 발족시킬 것을 제의함.</p>

(2) 제2차회의('85. 5. 17)

- 우리측은 남북간 교역과 경제협력 사업의 범위와 실현방법이 협의·결정된 다음 이에 적합한 공동협력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순리임을 지적하고, 1차회의시 합의하지 못한 회담의제 문제를 우선 토의·

해결한 후 쌍방의 공통제의사항을 중심으로 토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하였음.

- 아울러 우리측은 남북간의 교역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북한으로부터 30만톤의 무연탄을 구입할 것을 제의하였음.
- 이에 대해 북한측은 「북남경제협조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제안」을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우선 토의를 고집하였음.
 - － 북측은 쌍방의 차관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현재의 경제회담을 대체, 쌍방의 부총리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동위원회를 발족시켜 회담을 사실상 격상시키고 등 공동위원회에서 모든 남북간 합작과 교류문제를 협의·이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였음.
- 또한 북측은 공동위원회가 실현해야 할 합작과 교류의 방향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음.
 - － 합작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우선순위, 합작의 형태, 규모, 세제상의 특혜보장, 사업에 필요한 물자의 자유반입, 합작회사 운영에 대한 법적보장 등에 관한 자기측 입장을 제시하였고,
 - － 물자교류에 대해서는 우리측이 1차회의시 제안한 교역관련 10개항에 대응하여 자기들의 입장을 밝혔는 바, 그 내용은 거래방식과 결제업무 취급은행 문제를 제외하고는 우리측 입장과 유사하였음.

- 이와 같은 북측의 태도를 종합해 볼 때, 북측은 2차 회담에서「先 기구설치, 後 실질문제토의」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써 교역과 협력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방법을 토의한 후 이를 토대로 합의서를 채택하고 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집행적 성격의 기구로서 남북간 공동협력 기구를 발족시키고자 하는 우리측의 의도와는 상반되는 입장을 취하였음.

(3) 제3차회의('85. 6. 20)

- 우리측은 북한측의 입장을 감안하여 남북한 물자교역 및 경제협력 실시를 위한 사업추진 방안과 경제협력기구 구성·운영문제를 일괄적으로 합의하자는 입장에서「남북간 물자교역 및 경제협력 추진과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설치에 관한 합의서(안)」을 제시하고 북측의 호응을 촉구하였음.
- 아울러 우리측은 무연탄 30만톤 구입문제와 경의선 철도연결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쌍방 실무자 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하였음.
- 이에 대해 북한측은「북남경제협조공동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합의서」초안을 제시하면서 경제협력기구 설치문제가 우선적으로 토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태도를 바꾸어 남북한 물자교역 및 경제협력 방안과 경제협력기구를 하나의 합의서로 채택하자는 우리측 주장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였음.
- 또한 북한측은 무연탄 구입과 경의선 철도연결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실무접촉을 갖자는 우리측 제

안에 대해 동 문제는 「북남경제협조공동위원회」가
구성되면 동 공동위원회 산하 분야별 분과위원회에
서 협의·처리할 수 있다는 주장을 견지하였음.

※ 남북간 경제분야 교류·협력의 용어문제와 관
련, 우리측에서 제시한 “교역과 협력”, 북한측
에서 제시한 “합작과 교류”를 절충하여 「교류
와 협력」으로 하기로 합의하였음.

(4) 제4차회의('85. 9. 18)

- 우리측은 제3차회의에서 포괄적인 단일합의서를
채택하기로 쌍방이 합의한 만큼 쌍방이 제시한 검
토안을 놓고 토의를 통해 주요문제에 대한 상호이
견의 차이를 좁힌 다음, 구체적인 합의서 문안작성
을 위해 실무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하였음.
- 또한 우리측은 이미 제의한 무연탄 30만톤을 구입
하는 문제와 쌍방간에 의견이 일치하고 있는 경의
선 철도 연결사업의 연내 착수를 희망하고 이에 대
한 북한측의 긍정적인 호응을 촉구하였음.
- 북한측은 제3차회담에서 쌍방이 합의한 데 따라
— 경제협력기구 구성과 경제협력 및 물자교류안을
일괄한 하나의 합의서안(북과 남사이의 경제협
력 및 상품교류의 실현과 부총리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북남경제협조공동위원회 구성에 관한 합의
서)을 제시했으며 그 내용에서도 우리측 안을 부
분적으로 수용했음.

- 그러나 북측은 교류품목, 경제협력대상·규모·방법·기간 등 사업실시와 관련된 사항들을 공동위원회에서 협의·결정하자고 함으로써 공동위원회 구성을 우선시키려는 그들의 입장을 견지하였음.
- 또한 북측은 우리측이 촉구한 무연탄 구입문제와 경의선철도 연내 연결작업 착수에 대해서는 더 이상 경제회담에서 토의하기를 기피하면서 종합적인 합의서를 채택하여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서 토의할 수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 하였음.

(5) 제5차회의('85. 11. 20)

- 우리측은 제4차회의에서 쌍방이 제시한 합의서 초안 가운데 쌍방간의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는 다음 7개항의 문제에 대한 의견조정을 끝낸 후 이를 문안조정을 위한 실무회의에 넘길 것을 촉구하였음.

<우리측이 제기한 7개항>

- | | |
|---------------|------------|
| - 합의서 명칭 | - 경제협력 대상 |
| - 사업추진 원칙 | - 공동위원회 기능 |
| - 교류대상 품목 | - 분과위원회 수 |
| - 거래방식 및 결제은행 | |

- 이에 대해 북측은 우리측이 제기한 7개항뿐만 아니라 합의서 서명시 최고책임자로부터의 권한위임 문제와 서명시 호칭문제(국호사용 여부)도 협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이에 따라 쌍방은 우리측이 제기한 7개항과 북측이 제기한 2개항을 포함, 9개항을 토의할 것에 합의하고 이중 합의서 명칭문제, 사업추진 원칙문제, 교류대상품목 명시문제 등 3개항에 대한 토의가 진행되었으나 아무런 합의도 이루지 못하였음.
- 우리측은 오후 회의를 속개, 나머지 6개항의 문제에 대해 토의를 계속하자고 했으나 북측이 회의 종결을 주장함으로써 6개항의 문제에 대해서는 토의를 하지 못한 채 차기회담으로 넘겼음.

3. 남북경제회담시 쌍방 주장 비교

남북 쌍방이 경제교류·협력방안과 경제협력기구(공동위) 구성·운영에 관한 포괄적인 합의서를 제시한 제4차 회의를 기준으로 한 쌍방의 주장은 다음과 같음.

가. 경제교류·협력에 대한 기본원칙 및 입장

구 분	우 리 측	북 측
물자교류·경제협력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혜평등 및 상호 존중 ○ 민족번영과 복지 증진 ○ 경제적 유대회복 및 평화통일에 기여 ○ 신의와 성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국통일 3대원칙에 충실 ○ 상호신뢰와 호혜 원칙 ○ 민족공동번영에 절실한 분야부터 경제협력 추진 ○ 상호성과 유무상 통의 원칙에서 상품교류

구 분	우 리 측	북 측
교류·협력의 선후문제	○ 순수 경제적 차원에서 先 교류, 後 협력(기능적, 점진적, 단계적 접근 방법 제시)	○ 先 협력, 後 교류를 원칙으로 하되 협력과 교류의 동시 실현도 무방(일괄적, 포괄적 접근방법 제시)
물자교류 방식	○ 객관적인 국제거래 방식을 제시	○ 자주적인 교류방식을 제시

나. 물자교역 방안

구 분	우 리 측	북 측
교역품목	○ 우선 쌍방의견이 합치된 아래 품목부터 하며 상호보완의 원칙에 따라 확대 - 우리측판매: 철강재, 섬유, 남해수산물(김, 미역, 굴, 멸치), 소금, 감귤 - 북측판매: 무연탄, 칠광석, 마그네슘, 크롬, 명태, 옥수수	○ 쌍방이 제안한 교역품목을 고려하여 공동위에서 협의·결정

구 분	우 리 측	북 측
교역량	○ 상호 수급 사정을 감안, 공동위에서 연간교역규모를 조정한 후 품목별로 교역당사자간 상담을 통해 결정	○ 쌍방의 가능성과 희망을 고려하여 결정
교류물자의 가격	○ 국제시장 가격을 고려하여 교류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결정	○ 국제시장 가격을 고려하여 쌍방 거래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
의 건 일 치		
거래당사자	○ 품목별·사업별로 쌍방이 각각 지정하는 해당 기관	○ 협력대상·교류품목에 따라 거래대상자(상사, 기업체, 법인 및 경제기관)들이 담당
거래방식	○ 청산결제 방식으로 하되 청산약정이 체결되기 전에는 제3국은행 발행 신용장 활용	○ 청산결제를 기본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 다른 방법도 가능
의 건 접 근		
결제업무의 취급	○ 쌍방이 지정하는 남과 북의 은행이 직접 담당하도록 하되 쌍방 은행간	○ 쌍방이 지정하는 북과 남의 은행이 담당

구 분	우 리 측	북 측
	청산약정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쌍방이 공동으로 거래하고 있는 제3국은행이 담당	
의 견 접 근		
결제통화	○ 스위스 프랑	○ 스위스 프랑
※1 \$ = 2.7027 SF('85년 5월) = 1.4062 SF('92년 평균) = 1.51 SF('93년 8월 현재)		
의 견 일 치		
관 세	○ 관세 및 이와 유사한 세금부과 면제 가능	○ 관세는 일체 면제
의 견 접 근		
수 송	○ 철도, 선박, 자동차 등 수송수단 및 방법에 대해서는 교류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 ○ 경의선 철도 연결 ○ 남측의 인천항, 포항항과 북측의 남포항, 원산항을 각각 개방하고 물자 교류 및 경제협력 사업이 진전됨에	○ 수송수단은 기차, 자동차, 배로하며 수송통로는 우선 다음과 같이 설정 - 경의선 철도 연결 - 개성 - 문산간 도로 연결 - 남포항, 원산항과 인천항, 포항항 개항

구 분	우 리 측	북 측
	따라 무역항을 추 가로 개방	
	의 건 접 근	
통관, 검사, 사고처리 등	○ 대외거래에 적용 하는 규정을 준용	○ 대외거래에서 적용 되고 있는 규정을 고려, 쌍방이 협의 · 작성하는 규정에 의거
	의 건 접 근	

다. 경제협력 방안

구 분	우 리 측	북 측
대 상	○ 우선 공동어로구 역 설정사업 및 지 하자원 공동개발 을 시작하고 쌍방 합의에 따라 확대	○ 자연자원의 공동 개발과 이용분야 부터 먼저 시작하 고 점차 그 범위를 확대
	의 건 접 근	
방 법	○ 경제협력사업 당 사자간 협의를 통 하여 결정	○ 원칙적으로 공동 위에서 협의·결 정 ○ 상대측 지역에서 자기의 설비와 기 술, 노력, 자금을 가지고 단독으로

구 분	우 리 측	북 측
		<p>경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대상에 따라 합작형태도 적용</p>
규 모	<p>○ 경제협력사업 당사자간 협의를 통하여 결정</p>	<p>○ 원칙적으로 공동위에서 협의·결정 ○ 투자액은 원칙적으로 1,500만 스위스 프랑 이상</p>
협력사업 조건 및 문제처리	<p>○ 경제협력사업 당사자간 협의를 통하여 결정</p>	<p>○ 원칙적으로 공동위에서 협의·결정 ○ 쌍방간에 체결되는 협약에서 따로 확정</p>
조세 및 사용료	<p>○ 쌍방이 합의하는 경우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관세 및 기타 조세부담 면제 가능</p>	<p>○ 기업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관세 일체 면제 ○ 면세는 경제협력사업이 진행되는 전 기간에 걸쳐 실시 ○ 토지이용세, 자원세는 제품생산이 이루어진 다음부터 적용 ○ 협력기간중의 전기사용료, 물세 등은 대부형태로 납부기일 연장 가능</p>

구 분	우 리 측	북 측
소요물자의 조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사업에 필요한 소요 물자에 국한 ※ 타목적의 물자를 위장반입할 우려가 있으므로 무제한 반입 곤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작대상에 필요한 자재, 설비와 운용물자는 무제한 반입 ○ 협력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해당지역에서 생산되는 물자들은 당국 또는 관계기관을 통해 우선적으로 보장

라. 경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 방안

구 분	우 리 측	북 측
명 칭	○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 북남경제협조공동위원회
성 격	○ 합의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집행적 성격의 기구	○ 합의서를 협의·채택하고 그 이행을 보장하는 협의·집행적 성격의 기구
구 성	○ 위원장 (부총리급)1명, 부위원장 (장관급)1명,	○ 위원장 (부총리급)1명, 부위원장 (장관급)1명,

구 분	우 리 측	북 측
	<p>당국 및 경제계 인사로 구성되는 위원(장·차관급) 5명</p> <p>○ 공동위 안에 분과위 설치</p> <p>— 2개분과위 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자교류분과위원회 • 경제협력분과위원회 <p>— 필요시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특별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 구성</p> <p>○ 공동위 산하에 실무문제를 관장하는 공동사무국 설치</p>	<p>위원 (장·차관급) 7명</p> <p>○ 공동위 안에 분과위 설치</p> <p>— 6개분과위 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개발분과위원회 • 공업 및 기술분과위원회 • 농업 및 수산분과위원회 • 상품교류분과위원회 • 운수 및 체신분과위원회 • 금융재정분과위원회 <p>○ 공동위 밑에 공동사무국 설치</p>
기 능	○ 남북간의 물자교류 및 경제협력 사업에 관한 합의사항 이행	○ 북과 남사이의 경제협력과 상품교류 방안을 협의하고 필요한 합의 문건 채택

구 분	우 리 측	북 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간의 물자교류와 경제협력의 기본방향과 방법 협의·결정 ○ 남북간의 물자교류와 경제협력의 대상과 규모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협의·결정 ○ 남북 경제거래기관들 사이에 제기되는 분쟁문제 협의·조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과 남사이의 경제협력과 상품교류를 위한 합의사항 이행 보장 ○ 북과 남사이의 경제협력과 상품교류사업에 필요한 규정과 세칙 토의·비준 ○ 북과 남사이의 경제협력과 상품교류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문제 협의·조절 ○ 경제협력과 상품교류 관련 자료교환, 전시회 및 박람회 조직 문제 등 협의·결정 및 이행
운 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장소: 판문점 (쌍방 합의시 서울, 평양가능) ○ 회의주기: 분기1회(쌍방 합의시 수시 개최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장소: 평양, 서울 ○ 회의주기: 분기1회(쌍방합의시 임시회 개최)

Ⅱ. 「남북교류·협력부속합의서」 타결과정

1. 「교류·협력」에 대한 쌍방 기본입장

<「다방면적 합작과 교류」>

- 북한측은 남북조절위원회 회의('72년)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북과 남 사이에 합작과 단결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정치·경제·문화·군사 등 「다방면에서 합작」할 것을 주장하였음.
- 그러나 북한측은 다방면적 합작과 교류를 「광범한 균등을 민족적으로 계급적으로 각성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위대한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고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치게 하며,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 나서게 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리론」, 사회과학출판사)고 정의함으로써
- 「다방면적 합작과 교류」는 민족적 단결을 내세워 남북의 광범한 각계각층 인사와 통일전선을 형성하려는 「정치적 의미」로 쓰여지고 있음.
- 남북경제회담('84. 11)에서 북한측은 또다시 「합작과 교류」 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우리측은 「합작」 용어는 정치적 의미로 쓰이고 있어 경제회담의 성격과 목적, 그리고 취지에 맞지 않으며 또한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합작」 대신 「협력」 용어의 사용을 강력히 주장하자, 북한측은 이를 수용한 바 있음.

<「교류」와 「협력」의 선후 문제>

- 우리측은 남북경제회담('84~'85년)에서 경제교류를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하면서 경제협력을 실시하자는 입장에서 합의서 명칭을 「남북간의 물자교류 및 경제협력추진…」으로 제시하였음.
- 그러나 북한측은 「북과 남사이의 경제협력과 상품교류…」로 제시하였으며 또한 남북기본합의서('92. 2)에서도 「협력·교류」를 주장, 「협력」을 「교류」보다 우선시키고 있음.
- * 비록 북한측은 「합작」 대신 「협력」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교류」보다 「협력」을 더욱 강조하면서 우선시하는 데에는 그들의 정치적 의도가 내재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교류·협력」과 「정치·군사」의 선후 문제>

- 우리측은 남북고위급회담 예비회담('89~'90년)시 본회담 의제와 관련, 경제, 사회문화, 인도분야 등 제반분야에서 「교류·협력」을 우선적으로 진행시키면서 정치 및 군사적 문제도 함께 병행하여 협의한다는 입장에서
 - 「남북간의 다각적인 교류·협력과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문제」로 일단 주장하였으나
 - 의제 표기순서가 토의순서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전제아래 「남북간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다각적인 교류·협력 실시문제」를 수용하였음.
- 그러나 북한측은
 - 「남과 북이 정치와 군사분야에서 대결하고 있는 상태에서 남과 북 사이에 오랜동안 쌓여온 오해와 불신을 가실 수 없고 협력과 교류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통일로 나갈

수 없다」고 강조하고

-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는 문제는 당면하게 남북 사이에서 해결해야 할 초미의 문제이며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 남북고위급회담 의제와 관련,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문제를 「교류·협력 실현문제」보다 先 표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음.
- 결국, 북한측은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문제에 있어 「협력」을 우선시하고 「교류·협력」과 「정치·군사적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치·군사적 문제」의 우선해결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2. 남북기본합의서(경제교류·협력부문) 타결과정

가. 타결과정

- 남북 쌍방은 제5차 고위급회담('91. 12)에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고 제6차 고위급회담('92. 2)에서 이를 발효시켰는 바, 남북기본합의서 「제3장 남북교류·협력」(제15조-제23조)의 타결과정은 다음과 같음.
- 우리측은 이산가족재결합, 교역문호개방 및 물자교류 등 10개항으로 된 「다각적인 교류·협력실시 방안」과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서 「남북통행에 관한 방안」(10개항), 「남북통신에 관한 방안」(9개항), 「남북경제교류·협력에 관한 방안」(13개항)을 제시하였음.
- 그러나 북한측은 처음에는 정치·군사적 해소방안만을 제시하고, 동 문제가 해결되면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

다고 주장하다가 그후 각계 인사의 왕래·접촉 등 8개항으로 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선언」을 제시하였음.

- 또한 우리측은 포괄적인 단일합의서로 「남북간의 화해·불가침과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안)」을 제시하였는 바, 「교류·협력」 관련조항은 신문·라디오·TV 등 언론매체 상호 개방, 이산가족문제 해결, 통행·통신과 통상 및 경제협력지원·보장 등 4개조이었음.
- 북한측 역시 단일합의서인 「남북 불가침과 화해 및 협력, 교류에 관한 선언(안)」을 제시하였는 바, 「제3장 남북협력교류」에서 경제교류와 협력실시, 철도·해로·항로개설, 이산가족문제 해결 등 6개조항을 제시하였음.
- 남북 쌍방은 4차례에 걸쳐 진행된 합의서 문안정리를 위한 대표접촉에서
 - ① 여러분야에서의 상호 교류와 협력, ② 이산가족문제의 해결, ③ 육로·해로·공로 등 통행로 개설, ④ 우편 및 전기통신의 교류, ⑤ 경제교류와 협력실시, ⑥ 교류·협력분과위원회 설치 등에 합의하고,
 - 제5차 고위급회담에서 북한측이 「신문·라디오·TV 및 출판물의 상호개방」 문제를 수용함에 따라 남북기본합의서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제15조-제23조를 완전히 타결지었음.
- 남북기본합의서 「제3장 남북교류·협력」 타결과정에서 나타난 북한측의 특징적 태도는
 - 경제분야와 관련, 물자교류보다는 협력을 우선해야 한다는 태도를 견지하였는 바, 이는 그들이 처한 경제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본과 기술유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의 표출로 판단됨.
 - 문학·예술, 체육분야의 교류·협력에 대해서는 비교적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는데, 이는 남북간에 예술단교환, 국제대회 단일팀구성·참가, 국제예술제 공동참가 등 경협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한편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개방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가 하면 언론·종교 분야의 교류·협력에 대해서 강력히 거부하는 입장을 보였는데 이러한 분야의 교류·협력이 이루어질 경우, 그들의 정치체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나. 쌍방 제의 및 주장 비교

(1) 제15조(경제분야 교류·협력)

우 리 측	북 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역문호개방 및 물자교류 ○ 자원공동개발 및 합작투자, 경제분야에서의 공동대외진출 및 대외협력사업 추진 ○ 관광자원 공동개발 및 관광사업 공동추진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과 남은 민족공동의 리익과 번영을 위하여 경제합작과 물자교류를 실현하며… (제3차 남북고위급회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측은 경제분야의 교류와 협력이 유무상통과 상호보완의 원칙에 따라 경제교류와 협력을 별개의 조항으로 할 것과 물자교류, 합작투자, 자원의 공동개발 등의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고, 이의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측은 경제협력교류 문제를 한개 조항으로 하여 경제협력에 중점을 두었고, 그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기구들은 향후의 분과위원회의 토론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주장

우 리 측	북 측
화를 위한 통행·통신·통상 및 경제협력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제의	
○ 이 조항은 우리측의 경제교류와 협력의 2개조항 주장을 통합하여 경제교류협력의 한개 조항으로 하는 북한측의 주장을 수용하는 대신 그 내용에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을 명기하여 합의함.	
제15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 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2) 제19조(교통로 개설)

우 리 측	북 측
○ 남북간 철도·도로 복원 및 해로·공로개설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	○ 교통·체신망 연결 (제3차 남북고위급회담)
○ 우리측은 통행을 위한 구체적인 통과지점과 통행로를 지정하고 하루속히 복원·연결할 것을 제의	○ 북측은 철도와 도로의 육로 연결과 해로, 항로개설 및 체신망을 연결한다는 내용만을 제시
○ 쌍방은 체신망 연결을 별도 조항으로 하고, 철도·도로연결 및 해로·항로를 개설한다는 선에서 합의함.	
제19조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	

(3) 제20조(우편·전기통신 연결)

우 리 측	북 측
○ 우편물교환 및 전신·전화 개통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	○ 교통·체신망 연결 (제3차 남북고위급회담)
○ 우리측은 「3통」의 하나인 우편·전기통신 설치·연결을 교류협력 실시의 기초적인 장치로 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	○ 북측은 이 문제를 육로·공로 연결과 묶어서 제시해 오다가 남북고위급회담 제2차 대표접촉('91. 11. 15, 평화의 집)에 와서야 분리하여 규정하였음.
제20조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연결하며, 우편·전기통신 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	

(4) 제21조(국제무대에서의 상호협력, 대외공동진출)

우 리 측	북 측
○ 남북간 제반경제협력 실시, 경제분야에서의 공동대외진출·공동대외협력 사업 추진 (제2차 남북고위급회담)	○ 국제무대에서 경쟁과 대결 중지, 대외적 협력과 공동 진출 (제3차 남북고위급회담)
○ 우리측은 국제무대에서의 대결·경쟁 중지문제는 정치문제로서 「화해」 분야에 별도 규정(제6조)을 두고, 본 조항과 관련한 내용은 주로 경제분야에 한정하여 대외공동진출·협력으로 하는 안을 제시	○ 북측은 국제무대에서의 대결·경쟁 중지문제와 대외공동협력·진출문제를 분리하지 않고 「교류·협력」분야에 포괄적으로 규정할 것을 주장

우 리 측	북 측
○ 쌍방은 경제, 문화 등 여러분야에서 대외공동협력과 진출문제를 별도조항으로 규정하는데 합의함.	
제21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경제와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5) 제22조·제23조(합의서 이행기구 구성·운영)

우 리 측	북 측
○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이내에 남북정치군사분과위원회와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협의·해결 (제3차 남북고위급회담)	○ 북남협력, 교류분과위원회를 선언이 발표된 때부터 2개월 안에 구성·운영 (제3차 남북고위급회담)
○ 우리측은 회담의제에 따라 「정치군사분과위」와 「교류·협력분과위」 등 2개의 협의기구를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이내에 설치할 것과 「3통」위원회, 군사위원회 등 5개 실천기구의 구성·운영 근거를 합의서(안)에 제시	○ 북측은 정치와 군사를 구분하여 정치·군사·교류협력분과위원회 등 3개 협의기구를 선언 발표 후 2개월안에 구성·운영할 것을 제안하고, 우리측이 제시한 5개 실천기구는 「분과위원회」에서 토의·해결할 문제라고 주장
○ 쌍방은 「화해», 「불가침», 「교류협력」의 3개 주요부문을 구성된 단일합의서를 채택함에 따라 각 부문별 분과위원회를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구성키로 하고, 합의서 실천기구로서 「군사공동위원회»,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 등 부문별 「공동위」를 합의서 발효후 3개월 안에 구성·운영하기로 합의	

우 리 측	북 측
제22조 남과 북은 경제와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비롯한 부문별 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제23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안에서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협의한다.	

3. 남북교류·협력부속합의서(경제교류·협력부문) 타결과정

가. 타결과정

-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와 「남북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가 발효('92. 2. 19)됨에 따라 남북한 쌍방은 남북기본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분야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92년 3월 18일 교류·협력분과위 첫 회의를 가진 이래 제8차 고위급회담까지 교류·협력분과위 회의 7회, 위원접촉 6회, 위원장접촉 1회를 진행하여 4장 20조 50항으로 구성된 「교류·협력부속합의서」를 채택하였음.
- 「교류·협력부속합의서」는 전문, 1장 경제교류·협력(1조-8조, 30개항), 2장 사회문화교류·협력(9조-14조, 15개항), 3장 인도적 문제의 해결(15조-18조, 5개항), 4장

수정·발효(19조-20조)의 체계로 되어 있음.

(1) 교류·협력부속합의서의 수 및 형식문제

- 제1차 교류·협력분과위 회의에서 우리측은 ‘이산가족’, ‘통행·통신’, ‘경제교류·협력’, ‘사회문화교류·협력’ 분야의 4개 부속합의서(안)을 제시하고 북측은 ‘북남 협력, 교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초안)’이라는 포괄적인 단일부속합의서를 제시하였음.
- 남북 쌍방은 협의과정을 통해 단일부속합의서를 채택하되 분야별 「장」 편성을 하기로 합의하고, ‘통행·통신’ 분야는 경제교류·협력과 사회문화교류·협력 장에 포함시켜 부속합의서 체계를 제1장 경제교류·협력, 제2장 사회문화교류·협력, 제3장 인도적 문제의 해결, 제4장 수정·발효로 합의하였음.

(2) 경제교류·협력분야(제1장 : 제1조-제8조)

- 경제교류·협력분야부터 토의하자는 북측 주장을 우리측에서 수용하여 토의를 시작, 대부분의 조항에서 어렵지 않게 의견접근을 이루었으나,
 - 경제교류·협력 당사자의 당국 승인문제, 교통로 개설의 군사적 대결상태 해소 연계문제,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의 우선사업 보장문제, 경제사무소 및 경제상담소 설치·운영문제 등에서 서로 이견을 보여 난항을 거듭하였음.
- 남북 쌍방은 여러차례 회의에서의 협의결과를 토대로 경제교류·협력분야 쟁점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음.
 - 경제교류·협력 당사자의 당국 승인문제는 경제교류·협력 당사자간에 직접계약을 체결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음.(제1조 ⑤항)

- 교통로 개설의 군사적 대결상태 해소 연계문제는 군사적 대결상태가 해소되는데 따라로 명기하되 「해소」라는 표현에 「완화」의 의미가 포함되는 것으로 하였음. (제3조 ②항)
-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의 우선사업 보장문제는 공적사업과 인도적 사업을 우선 보장하기로 하였음.(제4조 ②항)
- 경제사무소 및 경제상담소 설치·운영문제는 기구 설치문제로 규정하여 경제교류·협력공동위에서 협의하기로 하였음.(제7조)

(3) 사회문화교류·협력분야(제2장 : 제9조-제14조)

- 사회문화교류·협력분야의 협의과정에서도 많은 조항에서 의견접근을 이루었으나 자유왕래에 저촉되는 법적·제도적 장치의 철폐문제, 자료교환실 설치·운영문제 등이 쟁점사항으로 대두되었음.
- 남북 쌍방은 여러차례의 협의결과를 토대로 사회문화교류·협력분야의 쟁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음.
 - 자유왕래에 저촉되는 법적·제도적 장치의 철폐문제는 부속합의서 말미에 「부기」로 규정, 화해공동위 법률실무협의회에서 토의·해결하기로 하였음.
 - 자료교환실 설치문제는 기구 설치문제로 규정하여 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에서 협의하여 정하기로 하였음. (제13조)

(4) 인도적 문제의 해결분야(제3장 : 제15조-제18조)

- 북측은 시급한 인도적 문제부터 토의하자는 우리측 주장에 반대하는 등 인도적 문제의 해결분야에서 소극적 태도를 보였음.
- 남북 쌍방의 협의과정에서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당국간

의 구체적 대책 마련 문제’, ‘이산가족 범위결정 문제’, ‘이산가족면회소 설치’, ‘남북적십자회담 개최시기’ 등이 쟁점이 되었음.

- 여러차례 회의 결과 남북 쌍방은 쟁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음.
 - 당국간의 대책마련 문제는 남북 쌍방 당국이 대책을 마련하고 적십자단체 주관으로 실천하도록 하였음.(제15조 전문, 제18조)
 - 이산가족범위 결정문제, 이산가족면회소 설치문제는 쌍방 적십자 단체에서 협의·해결하기로 하였음.(제15조 ①, ③항)
 - 남북 적십자회담 개최시기는 한두달을 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빠른시일」내에 열도록 하였음.(제16조)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타결과정>

- 우리측에서 ‘인도’, ‘통행·통신’, ‘경제교류·협력’, ‘사회문화교류·협력’의 4개 공동위를 제시하고 북측에서 ‘경제교류·협력’, ‘사회문화교류·협력’의 2개 공동위를 제시하였음.
 - 남북 쌍방은 협의과정을 통해 ‘인도’분야에서의 합의사항 이행은 쌍방의 적십자 단체에 위임하기로 하고 ‘통행·통신’분야는 ‘경제교류·협력’, ‘사회문화교류·협력’분야에 포함시키기로 함으로써 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경제교류·협력’과 ‘사회문화교류·협력’의 2개로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음.

나. 쌍방 제의 및 주장 비교

(1) 제목, 전문

○ 제 목

우 리 측	북 측
○ 남북사이의 교류·협력 이행과 준수에 관한 부속합의서	○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북남협력, 교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우리측에서 북측안을 수용하여 합의	
<합 의>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 전 문

우 리 측	북 측
○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데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북남협력, 교류분과위원회는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북남협력, 교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북측에서 우리측안을 수용하여 합의	
<합 의>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데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2) 경제교류·협력분야(제1장 : 제1조-제8조)

○ 제1조 본문

우 리 측	북 측
○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물자교류, 자원의 공동개발, 투자 등과 과학·기술, 환경분야의 교류·협력 및 교통, 통신의 연결·운영을 지원보장한다.	○ 북과 남은 경제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지원, 보장한다.
북측에서 기본합의서 제15조를 수정안으로 제시하고 우리측에서 수용하여 합의	
<p><합 의></p> <p>제1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 내부 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현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 기본합의서 제15조와 일치</p>	

○ 제1조 ①항(경제교류·협력 가능분야)

우 리 측	북 측
○ 남과 북은 물자교류와 공업, 광업, 농업, 어업, 건설, 운수, 전력, 통신, 금융, 관광 등 각 분야에서의 공동개발과 투자 등 경제협력사업을 실시한다.	○ 북과 남은 민족경제의 통일적 발전과 민족 전체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석탄, 유색 및 희유금속광물, 수산자원 등에 대한 공동개발을 진행한다.

우 리 측	북 측
○ 「남과 북은 물자교류와 광물, 수산자원 등 자원의 공동개발 및 공업, 농업, 건설, 전력, 금융, 관광 등 각 분야에서의 경제협력사업을 실시한다」로 수정안 제시	
북측에서 우리측 수정안을 수용하되 「석탄」을 추가하고 「전력」을 삭제하기로 합의	
<p style="text-align: center;"><합 의></p> <p>제1조 ① 남과 북은 물자교류와 석탄, 광물, 수산자원 등 자원의 공동개발과 공업, 농업, 건설, 금융, 관광 등 각 분야에서의 경제협력사업을 실시한다.</p>	

○ 제1조 ②항(경제교류·협력 사업의 대상 및 규모)

우 리 측	북 측
○ 물자교류의 대상품목, 교류규모는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결정하며, 품목별 수량은 공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교류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정한다.	○ 자원의 공동개발과 공업, 농업, 건설, 관광을 비롯한 각 분야의 합영, 합작 대상과 물자교류품목은 공동위원회에서 토의결정된 방향에 따라 거래당사자들 사이에 직접 토의하여 정한다.

우 리 측	북 측
○ 「남과 북은 자원의 공동개발, 합영·합작투자 등 경제협력 사업의 대상과 형식, 물자교류의 품목과 규모를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로 수정안 제시	○ 「북과 남은 자원의 공동개발, 합작투자 등 경제협력사업의 대상과 형식, 물자교류의 품목과 규모를 경제협력, 교류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로 수정안 제시
북측에서 우리측 안을 수용하여 「합영·합작투자」로 합의	
<p><합 의></p> <p>제1조 ② 남과 북은 자원의 공동개발, 합영·합작투자 등 경제협력사업의 대상과 형식, 물자교류의 품목과 규모를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p>	

○ 제1조 ③항(경제교류·협력에 관한 실무적 문제 토의방법)

우 리 측	북 측
○ 물자교류의 대상품목, 교류규모는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결정하며, 품목별 수량은 공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교류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정한다.	○ 자원의 공동개발, 합영, 합작의 형식과 규모, 물자교류의 량과 지불조건 등은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되는 합의서 또는 계약서에 따라 정한다.
	○ 「북과 남은 자원의 공동개발 합작투자 등 경제협력사업의 규모, 물자교류의 품목별 수량과 거래조건을 비롯한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쌍방 협력, 교류당사자들 사이에 토의하여 정한다」로 수정안 제시

우 리 측	북 측
북측 수정안에서 「합작투자」를 「합영·합작투자」로 수정하여 합의	
<합 의>	
제1조 ③ 남과 북은 자원의 공동개발, 합영·합작투자 등 경제협력사업의 규모, 물자교류의 품목별 수량과 거래조건을 비롯한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쌍방 교류·협력 당사자들 사이에 토의하여 정한다.	

○ 제1조 ④항(경제교류·협력 당사자의 개인 포함문제)

우 리 측	북 측
	○ 경제거래의 실질적인 당사자들로서는 법인으로 등록된 상사, 회사, 기업체 및 경제기관이 된다.
○ 우리측에서는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법인이건 개인이건 전연 차별을 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	○ 법인으로 등록되어야 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이므로 법인으로 등록이 안되면 상업활동을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
개인도 경제교류·협력사업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우리측 주장을 북측에서 수용하여 합의	
<합 의>	
제1조 ④ 남과 북사이의 경제협력과 물자교류의 당사자는 법인으로 등록된 상사, 회사, 기업체 및 경제기관이 되며 경우에 따라 개인도 될 수 있다.	

○ 제1조 ⑤항(경제교류·협력 당사자의 당국승인 문제)

우 리 측	북 측
<p>○ 남북사이의 물자교류의 당사자는 자기측 당국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하며, 남북사이의 경제협력사업의 당사자는 사업별로 자기측 당국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p>	
<p>○ 「경제교류·협력 당사자에 대한 당국승인」은 상이한 경제체제를 갖고 있는 남과 북이 정부당국의 책임성을 분명히 함으로써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고 선의의 교류·협력 당사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임을 강조함.</p> <p>○ 「남과 북은 당해사업에 대해 각기 자기측의 필요한 절차를 거쳐 당사자간에 직접 체결된 계약에 대해 물자교류와 경제협력 사업을 실시한다」로 수정안 제시</p>	<p>○ 북남 당국사이에 통일정책에서 견해를 달리하고 있으며, 또한 군사적 대결상태도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조건에서 당국승인 문제를 합의서에 규정하게 되면 북남 경제협력, 교류가 당국의 정략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경제교류·협력당사자에 대한 당국승인」을 반대함.</p> <p>○ 「북과 남은 협력·교류 당사자간에 직접 체결된 계약에 따라 자기측의 필요한 절차를 거쳐 경제협력사업과 물자교류를 실시한다」로 해야 협력·교류사업에 대해 사전에 승인받는데 아니라 계약을 한 후에 그 내용을 승인받는 것이 된다고 주장</p>

우 리 측	북 측
우리측 주장인 '계약에 대해'와 북측 주장인 '계약에 따라'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로 절충하여 합의	
<합 의>	
제1조 ⑤ 남과 북은 교류·협력 당사자간에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 경제협력사업과 물자교류를 실시하도록 한다.	

○ 제1조 ⑥항(교류물자 가격)

우 리 측	북 측
○ 교류물자의 가격은 국제시장 가격을 고려하여 물자교류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 물자거래에서 가격은 국제시장가격을 고려하여 거래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정한다.
일부 표현을 조정하여 합의	
<합 의>	
제1조 ⑥ 교류물자의 가격은 국제시장가격을 고려하여 물자교류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정한다.	

○ 제1조 ⑦항(물자교류 원칙문제)

우 리 측	북 측
○ 남과 북은 상호보완의 원칙과 쌍방의 수급사정을 감안하여 교류대상 품목과 교류규모를 조정하며, 품목별 수량은 물자교류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결정한다.	○ 북과 남은 상품 대 상품, 원료 대 원료를 유무상통하는 원칙에서 물자교류를 실현한다.

우 리 측	북 측
○ 남북간 경제교류·협력은 상호보완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제품 대 제품 혹은 원료 대 원료의 형태로는 실질적인 교류·협력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주장	○ 북과 남이 호상 대등성을 보장하기 위해 원료 대 원료, 제품 대 제품 등 동차상품을 교환해야 한다고 주장
북측에서 「북남사이의 물자교류는 호상성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실현한다」로 수정안을 제시하고 우리측에서 수용하여 합의	
<p style="text-align: center;"><합 의></p> <p>제1조 ⑦ 남과 북사이의 물자교류는 상호성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실현한다.</p>	

○ 제1조 ⑧항(대금결제 방식)

우 리 측	북 측
○ 남북사이의 물자교류에 따른 대금결제는 청산결제 방식으로 합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포함하여 남북사이의 교류·협력에 따른 대금결제 및 자본의 이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 북과 남사이의 물자거래에서 결제는 청산결제 방식을 기본으로 하면서 쌍방 거래당사자들 사이의 합의에 따라 다른 결제방식도 취할 수 있다.

우 리 측	북 측
○ 「남북사이의 물자교류에 대한 대금결제는 청산결제 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의 합의에 따라 다른 결제방식으로 할 수 있다」로 수정안 제시	
우리측 수정안을 북측에서 수용, 「쌍방의 합의에 따라」로 합의 <합 의>	
제1조 ⑧ 남과 북사이의 물자교류에 대한 대금결제는 청산결제 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의 합의에 따라 다른 결제방식으로 할 수 있다.	

○ 제1조 ⑨항(결제통화 선정 등)

우 리 측	북 측
○ 남북사이의 물자교류에 따른 대금결제는 청산결제 방식으로 합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포함하여 남북사이의 교류·협력에 따른 대금결제 및 자본의 이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 북과 남은 물자거래에서 청산 결제를 맡아 수행하기 위한 은행들을 정하며 결제업무와 관련한 실무적 문제들은 지정된 은행들이 토의하여 해결한다. ○ 북과 남사이의 결제화폐는 스위스 프랑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의 합의에 따라 다른 전환성 화폐로도 할 수 있다.

우 리 측	북 측
○ 「청산결제 은행 지정, 결제통화 등 남북사이의 대금결제 및 자본의 이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로 수정안 제시	
우리측 수정안을 북측에서 수용, 일부 표현을 조정하여 합의	
<합 의>	
제1조 ⑨ 남과 북은 청산결제은행 지정, 결제통화 선정 등 대금결제와 자본의 이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 제1조 ⑩항(민족내부 거래로서의 무관세 문제)

우 리 측	북 측
○ 남과 북은 교류물자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남북간의 경제관계를 민족내부 관계로 정착·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협의·추진한다.	○ 북과 남은 물자거래에서 관세를 면제하며 그밖의 특혜조건에 대해서는 공동위원회에서 토의결정한다.
우리측 안을 북측에서 수용, 일부 표현을 조정하여 합의	
<합 의>	
제1조 ⑩ 남과 북은 물자교류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남북사이의 경제관계를 민족내부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협의·추진한다.	

○ 제1조 ⑪항(경제자료 교환 「통계 및 통계기준」 포함 문제)

우 리 측	북 측
○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경제분야 교류와 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자료, 통계 및 통계기준과 공업규격 등을 상호교환하며, 교류·협력 당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자기측 관련 법규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 북과 남은 경제협력과 교류를 원활히 추진하는 데 필요한 각종자료, 공업규격 등을 서로 교환하며 협력·교류당사자가 지켜야 할 자기측의 해당법규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 경제교류·협력을 위해서는 통계자료가 매우 중요하므로 통계자료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함.	○ 각종자료라고 표현하면 그안에 통계자료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구태여 통계자료를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함.
「각종자료」라는 표현속에 「통계자료」도 포함된다는 데에 남과 북이 의견을 같이하고 「통계자료」를 명시하지 않기로 합의함.	
<p style="text-align: center;"><합 의></p> <p>제1조 ⑪ 남과 북은 경제교류와 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공업규격을 비롯한 각종자료를 서로 교환하며 교류·협력 당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자기측의 해당 법규를 상대측에 통보한다.</p>	

○ 제1조 ⑫항(경제교류·협력관련 제도적 장치 마련문제)

우 리 측	북 측
○ 남북사이의 물자교류와 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분쟁조정절차 등에 대해서는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 북과 남은 경제협력과 교류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투자보장, 자본의 이동과 이중과세방지, 분쟁조정절차 등을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북측에서 우리측 안을 수용, 문안정리 후 합의	
<p><합 의></p> <p>제1조 ⑫ 남과 북은 경제교류와 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분쟁조정절차 등에 대해서는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p>	

○ 제1조 ⑬항(경제교류·협력 당사자의 편의보장)

우 리 측	북 측
○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서 경제교류와 협력에 종사하는 상대측 인원에 대하여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의 자유와 편의를 보장한다.	○ 북과 남은 경제협력과 교류에 참가하는 인원들의 경제활동상 편의를 보장한다.
일부 표현을 수정하여 합의	
<p><합 의></p> <p>제1조 ⑬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서 경제교류와 협력에 참가하는 상대측 인원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편의를 보장한다.</p>	

○ 제2조 본문

우 리 측	북 측
○ 남과 북은 과학·기술, 환경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 북과 남은 과학, 기술, 환경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실시한다.
<p><합 의></p> <p>제2조 남과 북은 과학·기술, 환경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p>	

○ 제2조 ①항(과학·기술, 환경분야에서의 정보자료 교환 등)

우 리 측	북 측
○ 남과 북은 정보자료의 교환, 대학·연구기관·개인간 공동연구 및 조사, 산업부문의 기술협력, 전문가의 상호 교류를 실시하고 환경보전 대책을 공동으로 강구한다.	<p>○ 북과 남은 과학, 기술, 환경분야에서 정보자료의 교환, 기관과 단체, 인원들 사이의 연계와 협력, 교류를 실현하며 환경보존대책을 공동으로 세운다.</p> <p>○ 「정보자료의 교환, 과학연구기관과 단체, 인원들 사이의 공동연구 및 조사, 산업부문의 기술협력, 기술자, 전문가들의 교류를 실현하며…」로 수정안 제시</p>
<p>북측 수정안을 우리측에서 수용, 일부 표현을 조정하여 합의</p>	

우 리 측	북 측
<p><합 의></p> <p>제2조 ① 남과 북은 과학·기술, 환경분야에서 정보자료의 교환, 해당기관과 단체, 인원들 사이의 공동연구 및 조사, 산업부문의 기술협력과 기술자, 전문가들의 교류를 실현하며 환경보호 대책을 공동으로 세운다.</p>	

○ 제2조 ②항(산업재산권 보호)

우 리 측	북 측
<p>○ 남과 북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 바에 따라 특허권, 상표권 등 상대측의 과학·기술상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p>	<p>○ 북과 남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데에 따라 특허권, 상표권 등 과학, 기술상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p>
<p>일부 표현을 조정하여 합의</p>	
<p><합 의></p> <p>제2조 ② 남과 북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데 따라 특허권, 상표권 등 상대측 과학·기술상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p>	

○ 제3조 본문

우 리 측	북 측
○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육로, 해로, 항로를 개설하고 통과 지점을 지정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정보교환 및 기술협력을 실시한다.	○ 북과 남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와 공로를 개설한다.
정보교환 및 기술협력 문제는 제3조 ④항으로 규정하기로 하고, 북측 안을 수용하되, 공로를 항로로 수정하여 합의	
<p style="text-align: center;"><합 의></p> <p>제3조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 기본합의서 제19조와 일치</p>	

○ 제3조 ①항(해로개설 문제)

우 리 측	북 측
○ 남과 북은 우선 육로의 경우 경의선 철도와 문산-개성간 도로를 연결하고, 인천항과 남포항, 포항항과 원산항 사이의 해로와 서울 김포공항과 평양 순안비행장 사이의 항로를 연결하여 개설한다.	○ 북과 남은 우선 남포항과 인천항, 원산항과 부산항 사이의 해로를 개설하고 교류물자를 직접 수송한다.
○ 「남과 북은 우선 인천항과 남포항, 포항항과 원산항 사이의 해로를 개설한다」로 수정안 제시	

우 리 측	북 측
우리측 수정안에서 인천항과 남포항, 포항항과 원산항을 인천항, 부산항, 포항항과 남포항, 원산항, 청진항으로 수정하여 합의	
<합 의>	
제3조 ① 남과 북은 우선 인천항, 부산항, 포항항과 남포항, 원산항, 청진항 사이의 해로를 개설한다.	

○ 제3조 ②항(교통로 개설의 군사적 대결상태 해소 연계문제)

우 리 측	북 측
	○ 북과 남은 정치군사적 대결상태가 해소되는데 따라 경제협력과 상품교류 및 인사래왕의 규모에 맞게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와 공로를 개설한다.
○ 남북이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을 실시하며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기로 약속한 마당에 도로와 철도의 연결 문제를 「군사적 대결상태 해소」문제와 연관시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	○ 군사적 대결상태가 해소됨이 없이는 방대한 군사력이 집중되어 있는 군사분계선상에 교통로를 개설할 수 없으며 군사적 대결상태가 해소되기 이전에 진행되는 인원래왕과 물자교류는 임시교통로를 개설해서 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
○ 북측의 주장을 고려,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교류·협력이 증대되고 군사적 대결상태가 완화되는데 따라…」로	○ 해로는 군사적 대결상태가 해소되기 전에라도 개설될 수 있지만 육로·공로는 「군사적 대결상태가 해소」 되어야

우 리 측	북 측
할 것을 제시	만 개설될 수 있으며 「해소에 따라」라는 것은 완전한 해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완화」가 되어도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
「군사적 대결상태가 해소되는데 따라」라는 것이 과정을 의미하며, 「완화됨에 따라」와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해소되는데 따라」로 합의	
<합 의>	
제3조 ②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교류·협력규모가 커지고 군사적 대결상태가 해소되는데 따라 해로를 추가로 개설하고, 경의선 철도와 문산-개성 사이의 도로를 비롯한 육로를 연결하며 김포공항과 순안비행장 사이의 항로를 개설한다.	

○ 제3조 ③항(임시교통로)

우 리 측	북 측
○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왕래와 물자교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임시교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 북과 남은 교통로가 개설되기 이전에 진행되는 물자교류와 인원래왕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임시교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우리측에서 북측 안을 수용, 일부 표현을 조정하여 합의	
<합 의>	
제3조 ③ 남과 북은 교통로가 개설되기 이전에 진행되는 인원왕래와 물자교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임시교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 제3조 ④항(교통로 개설·운영관련 정보자료 교환 등)

우 리 측	북 측
○ 남과 북은 육로, 해로, 항로 개설·운영의 원활한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교환 및 기술협력을 실시한다.	○ 북과 남은 육로, 해로, 공로 개설의 원활한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교환 및 기술협력을 실시한다.
일부 표현을 수정하여 합의	
<합 의> 제3조 ④ 남과 북은 육로, 해로, 항로의 개설과 운영의 원활한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교환 및 기술협력을 실시한다.	

○ 제3조 ⑤항(교류물자의 직수송 문제)

우 리 측	북 측
○ 남북사이의 교류물자는 쌍방이 합의하여 개설한 육로, 해로, 항로를 통하여 직접 수송하도록 한다.	○ 북과 남은 우선 남포항과 인천항, 원산항과 부산항 사이의 해로를 개설하고 교류물자를 직접 수송한다.
북측에서 우리측 안을 수용, 일부 표현을 조정하여 합의	
<합 의> 제3조 ⑤ 남북사이의 교류물자는 쌍방이 합의하여 개설한 육로, 해로, 항로를 통하여 직접 수송하도록 한다.	

○ 제3조 ⑥항(긴급구제조치)

우 리 측	북 측
○ 남과 북은 자기측지역에 들어온 상대측 교통수단에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긴급구제조치를 취한다.	
북측에서 우리측 안을 수용하여 합의	
<합 의>	
제3조 ⑥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 들어온 상대측 교통수단에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긴급구제 조치를 취한다.	

○ 제3조 ⑦항(교통로 개설·운영관련 국제협약준중 문제)

우 리 측	북 측
○ 남과 북은 교통로 연결·운영에 관한 국제협약을 존중한다.	
북측에서 우리측 안을 수용, 일부 표현을 수정하여 합의	
<합 의>	
제3조 ⑦ 남과 북은 교통로 개설 및 운영과 관련한 해당 국제협약들을 존중한다.	

○ 제3조 ⑧항(교통로 개설·운영관련 실무문제 협의)

우 리 측	북 측
○ 남과 북사이에 운행되는 교통수단과 그 승무원의 출입절차, 교통수단별 운행방법, 통	○ 북과 남은 통과지점 선정을 비롯하여 교통로 개설과 운영에서 나서는 기타 실무적

우 리 측	북 측
<p>과지점 등 남북사이의 교통로 개설, 운영에 관련된 실무문제 협의·실천은 남북경제 교류·협력공동위원회가 구성하는 남북교통실무협의회에서 한다.</p>	<p>문제들을 공동위원회에서 토의하여 결정한다.</p> <p>○ 「북과 남은 북남사이에 운행되는 교통수단과 승무원들의 출입절차, 교통수단 운행방법, 통과지점 선정 등 교통로 개설과 운영에서 제기되는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공동위원회에서 토의하여 정한다」로 수정안 제시</p>
<p>우리측에서 북측 수정안을 수용, 「공동위원회에서 토의하여 정한다」로 합의</p>	
<p style="text-align: center;"><합 의></p> <p>제3조 ⑧ 남과 북은 남북사이에 운행되는 교통수단과 승무원들의 출입절차, 교통수단 운행방법, 통과지점 선정 등 교통로 개설과 운영에서 제기되는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토의하여 정한다.</p>	

○ 제4조 본문

우 리 측	북 측
<p>○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연결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정보교환 및 기술 협력을 실시한다.</p>	<p>○ 북과 남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연결하며 우편과 전기 통신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p>

우 리 측	북 측
우편과 전기통신 관련 정보교환 및 기술협력은 제4조 ①항으로 규정하기로 하고, 우리측에서 북측 안을 수용하여 합의	
<합 의>	
제4조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연결하며,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	
* 기본합의서 제20조와 일치	

○ 제4조 ①항(우편과 전기통신 교환·연결 등)

우 리 측	북 측
○ 남북사이에 교류되는 우편물과 전기통신은 남북연락사무소에 우편물교환실과 전화교환실을 설치하여 교환·연결한다.	○ 북과 남은 빠른 시일안에 쌍방의 우편물을 판문점을 통하여 교환하도록 하며 우편과 전기통신교류를 실현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 강구한다.
○ 「남과 북은 빠른시일안에 판문점을 통하여 우편과 전기통신을 교환, 연결하도록 하며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정보교환 및 기술협력을 실시한다」로 수정안 제시	
우리측에서 수정안을 제시하고 북측이 수용하여 합의	
<합 의>	
제4조 ① 남과 북은 빠른 시일안에 판문점을 통하여 우편과 전기통신을 교환, 연결하도록 하며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정보교환 및 기술협력을 실시한다.	

○ 제4조 ②항(우편과 전기통신교류의 우선사업 보장문제)

우 리 측	북 측
<p>○ 남과 북은 공적사업과 남북간에 합의된 교류·협력에 필요한 우편과 전기통신교류를 우선적으로 보장하며 점차 그 이용범위를 넓힌다.</p> <p>○ 남과 북은 이산가족들의 서신거래를 판문점에 설치·운영되는 남북연락사무소의 우편물 교환실을 통해 우선적으로 실현하도록 하며 전기통신수단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p>	<p>○ 북과 남은 우편과 통신 보장에서 당면하여 공적사업을 우선 보장하며 점차 그 허용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하도록 한다.</p>
<p>○ 이산가족간의 서신거래만큼 시급한 일이 없으므로 「이산가족간의 서신거래를 포함한 공적사업」으로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p>	<p>○ 「공적사업」을 우선 보장하고 점차 그 이용을 확대하여 이산가족간의 서신거래를 할 수는 있어도 이산가족간의 서신거래가 공적사업과 동등하게 놓일 수 없다고 주장</p> <p>※ 공적사업의 개념에 대해 북측은 ‘당국 대 당국’ 뿐만 아니라 ‘기관 대 기관’, ‘단체 대 단체’를 공적사업으로 보며 오직 개인만을 공적사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석함.</p>

우 리 측	북 측
우리측 안의 인도적 문제 해결 부문의 「이산가족 서신거래」를 포함시켜 「공적사업과 인도적 사업을 우선 보장하며」로 명기하기로 합의	
<합 의>	
제4조 ②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서 공적사업과 인도적 사업을 우선 보장하며, 점차 그 이용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 제4조 ③항(우편과 전기통신교류의 비밀보장 문제)

우 리 측	북 측
○ 남과 북은 남북사이에 교류되는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의 비밀을 보장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군사적 목적에 이용하지 않는다.	○ 북과 남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연결하며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
북측에서 우리측안을 수용, 문안조정 후 합의	
<합 의>	
제4조 ③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의 비밀을 보장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정치·군사적 목적에 이용하지 않는다.	

○ 제4조 ④항(우편, 전기통신 관련 국제협약 존중 문제)

우 리 측	북 측
○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관한 국제협약을 존중한다.	
북측에서 우리측안을 수용, 일부 표현을 수정하여 합의	
<합 의>	
제4조 ④ 남과 북은 우편 및 전기통신교류와 관련한 해당 국제협약들을 존중한다.	

○ 제4조 ⑤항(우편과 전기통신 관련 실무문제 협의·실천 방법)

우 리 측	북 측
○ 남북사이에 교류되는 우편 및 전기통신의 종류와 요금, 우편물의 수집·전달 방법 등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관련되는 실무문제의 협의·실천은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가 구성하는 남북통신 실무협의회에서 한다.	○ 북측에서 우리측 안을 수용, 다음과 같이 조항을 신설함. - 북과 남은 북남사이에 교류되는 우편물과 전기통신에 대한 종류와 요금을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 - 북과 남사이의 우편물과 전기통신교류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우편물 및 전화교환실 설치문제를 비롯한 기타 제반 실무적 문제들을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우 리 측	북 측
북측에서 우리측 안을 수용하되 우편 및 전기통신 관련 실무문제는 경제교류·협력공동위에서 협의하기로 함의	
<합 의>	
제4조 ⑤ 남과 북사이에 교류되는 우편 및 전기통신의 종류와 요금, 우편물의 수집, 전달방법 등 기타 실무적 문제들은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 제5조 본문 및 ①, ②항(경제분야에서의 대외협력)

우 리 측	북 측
○ 남과 북은 경제의 각 분야에서 제3국 공동진출, 국제회의 및 국제기구를 통한 국제협력 등 대외경제협력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대책을 협의·추진한다.	○ 북과 남은 국제경제의 여러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 북과 남은 경제분야의 여러 국제행사와 국제기구들에서 서로 협력한다. - 북과 남은 경제분야에서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 추진한다.
북측안을 우리측에서 수용하여 합의	
<합 의>	
제5조 남과 북은 국제경제의 여러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① 남과 북은 국제경제의 여러 국제행사와 국제기구들에서 서로 협력한다. ② 남과 북은 경제분야에서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추진한다.	

○ 제6조(경제교류·협력의 지원·보장)

우 리 측	북 측
○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물자교류, 자원의 공동개발, 투자등과 과학·기술, 환경분야의 교류·협력 및 교통, 통신의 연결, 운영을 지원·보장한다.	○ 북과 남은 경제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지원, 보장한다.
우리측에서 북측안을 수용하여 합의	
<p style="text-align: center;"><합 의></p> <p>제6조 남과 북은 경제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지원·보장한다.</p>	

○ 제7조(경제사무소 및 경제상담소 설치·운영문제)

우 리 측	북 측
<p>○ 남북사이의 경제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과 평양에 경제사무소를 교환·설치하며, 판문점에 경제상담소를 공동으로 설치·운영한다.</p> <p>○ 「경제사무소」 설치에 북측의 반대를 고려 추후 협의키로 하되, 판문점에 「경제상담소」만이라도 설치·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p>	<p>○ 서울과 평양에 경제사무소를 교환·설치하자고 하는 것은 통일지향적이기보다는 분열지향적인 색채가 강한 것으로 배격을 받은 상주대표부 설치문제와 비슷한 것이라고 하면서 반대함.</p> <p>○ 경제상담문제는 거래당사자들이 남과 북을 왕래하면서 직접 협의·해결해 나갈 수 있으므로 구태여 경제상담소를 둘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다가 경제상담소 문제는 필</p>

우 리 측	북 측
<p>○ 「남과 북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 바에 따라 남북사이의 경제교류와 협력추진에 필요한 기구를 판문점에 설치·운영한다」로 수정안 제시</p>	<p>요하다면 공동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음. ○ 「북과 남은 경제협력과 교류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기구 설치문제와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로 안을 제시</p>
<p>우리측에서 북측 주장을 수용, 기구설치 문제는 경제교류·협력 공동위에서 협의하여 정하기로 합의</p>	
<p style="text-align: center;"><합 의></p> <p>제7조 남과 북은 경제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기구설치문제와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p>	

○ 제8조(경제교류·협력분야 합의사항 이행)

우 리 측	북 측
<p>○ 제1장 <경제>부문의 이행과 이와 관련있는 세부사항의 협의·실천은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한다.</p>	<p>○ 이 합의서의 《제1장 북남경제협력, 교류》의 리행은 북남경제협력, 교류공동위원회에서, 《제2장 북남사회문화협력, 교류》의 리행은 북남사회문화협력, 교류공동위원회에서, 《제3장 인도적 문제 해결》의 리행은 북남적십자단체들에서 맡는다.</p>

우 리 측	북 측
우리측 안을 북측에서 수용, 해당 분야(장)별로 나누어서 명기하기로 합의	
<합 의>	
제8조 이 합의서 「제1장 경제교류·협력」부문의 이행 및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의 협의·실천은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한다.	

(3) 기 타(제4장 : 제19조, 제20조 및 부기사항)

○ 제19조, 제20조(합의서 수정·발효)

우 리 측	북 측
○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 보충할 수 있다.
○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쌍방은 각기 제시한 내용에 대한 자구수정을 거쳐 합의함.	
<합 의>	
제19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20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부기사항(법적·제도적 장치 철폐문제)

우 리 측	북 측
	<p>○ 북과 남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래왕과 접촉에 저촉되는 법적·제도적 장치들을 철폐하며 래왕자의 신변안전과 인권을 보장한다.</p>
<p>○ 상대방 법제도에 대한 일방적인 철폐주장은 상대방 체제 존중과 내부문제 불간섭을 규정한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며, 법적·제도적 장치 철폐문제는 남북화해공동위원회에서 상호주의 원칙아래 협의·해결해야 할 것임.</p>	<p>○ 이 문제는 남한사회의 각 계층속에서 지어는 당국의 일각에서까지 제기된 것으로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래왕과 접촉문제를 협력, 교류분과위가 맡고 있는 이상 법적·제도적 장치 철폐문제도 정치분과위에 넘길 것이 아니라 교류협력분과위 부속합의서에 명기해야 함.</p>
<p>○ 우리측은 법적·제도적 장치 철폐문제는 정치분과위원회의 법률실무협의회 소관사항이므로 부속합의서에서 삭제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으나, 북측은 부속합의서에 명기할 것을 완강히 고집, 쌍방은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교류·협력부속합의서 부기사항으로 처리기로 합의함.</p>	
<p style="text-align: center;"><합 의></p> <p>부 기 ; 쌍방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왕래에 저촉되는 법적·제도적 장치 철폐문제를 남북화해공동위원회 법률실무협의회에서 토의·해결하기로 하였다.</p>	

Ⅲ. 남북간 교류·협력사업 현황

1. 개 황

- 남북물자교역은 「남북간 교역의 문호를 개방하고 남북간 교역을 민족내부교역으로 간주한다」는 「7·7특별선언」에 따라 '88년 10월 7일 정부에서 그 후속조치로 민간상사의 북한 물자교역 및 중계, 북한원산지 표시, 상표부착, 교역물자 관세 비부과, 남북경제인 상호접촉·방문, 북한 국적 상용선박의 입항 등을 일방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이루어졌음.
- 남북한간의 물자교역은 대부분이 간접교역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쌀, 무연탄, 한약재 등 일부품목은 직교역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음.
- 남북한간 물자교역은 반출입 승인 기준으로 볼때 '93년 10월까지 반입은 5억 7천7백만\$이며 반출은 5천만\$에 이르고 있음.
- 반입은 철강·금속, 농수산물, 광산물등 1차산품과 중간원자재가 대부분이며 반출은 섬유류 및 화학제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교역형태는 단순교역이 대부분이지만 '92년부터 간접적인 방식이나마 의류, 가방, 신발 등 일부품목의 임가공제품이 반입되고 있어 교역형태도 점차 다양화 되고 있음.
- 참여 업체도 초창기의 대기업 위주에서 벗어나 중소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남북간의 물자교역이 짧은 기간내에 폭넓게 자리잡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현행 남북간 물자교역은 당국간의 제도적 보장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북한측의 소극적인 자세와 무역관행 미숙, 경제난 등도 남북간의 물자교역을 어렵게 만들고 있음.

- 또한 북한측이 그들의 핵문제와 관련하여 남북고위급회담 및 분야별 공동위원회 회의를 일방적으로 중단시켜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 역시 남북간 물자교역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2. 교역현황

가. 교역규모

- '88년 10월 이후 '93년 10월말까지의 교역규모는 승인 기준으로 총 1,336건 627,409천 \$이며, 이중 반입은 1,201건 557,102천 \$, 반출은 135건 50,307천 \$로 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통관기준('88. 10~'93. 9)으로는 총 1,566건 468,870천 \$ 중 반입은 1,421건 447,945천 \$, 반출은 145건 20,925천 \$로 나타나고 있어 전체적으로는 승인 금액으로 보아 77%정도의 물량이 실제로 통관되고 있으며 반출은 41% 수준에 있음.

연도별 교역규모

[건/천 \$, ()은 승인대비 통관비율]

연 도	반 입		반 출		계	
	승 인	통 관	승 인	통 관	승 인	통 관
'88	4/1,037				4/1,037	
'89	57/ 22,235	66/ 18,655 (83.9)	1/ 69	1/ 69 (100)	58/ 22,304	67/ 18,724 (83.9)
'90	75/ 20,354	78/ 12,278 (60.3)	4/ 4,731	4/ 1,187 (25.1)	79/ 25,085	82/ 13,465 (53.7)

연 도	반 입		반 출		계	
	승 인	통 관	승 인	통 관	승 인	통 관
'91	328/ 165,996	300/ 105,722 (63.7)	40/ 26,176	23/ 5,547 (21.2)	368/ 192,172	323/ 111,269 (57.9)
'92	365/ 200,685	510/ 162,863 (81.1)	42/ 12,818	62/ 10,499 (81.9)	407/ 213,503	572/ 173,362 (81.1)
'93 (1-9)	372/ 166,795	467/ 148,427 (88.9)	48/ 6,513	54/ 3,559 (54.6)	420/ 173,308	521/ 151,986 (87.6)
계	1,201/ 577,102	1,421/ 447,945 (77.6)	135/ 50,307	145/ 20,925 (41.5)	1,336/ 627,409	1,566/ 468,870 (74.7)

나. 교역수지

- 통관기준으로 볼때 교역수지는 계속 적자를 내고 있으며 교역실적이 늘어난 '92년에는 적자규모가 1억 5천만\$를 상회하였음.
- '93년들어 9월까지의 적자는 144,868천\$이며 누적적자규모는 427,020천\$임.

연도별 교역수지

(단위 : 천 \$)

연 도	반입통관액	반출통관액	수 지
'89	18,655	69	△18,586
'90	12,278	1,187	△11,091
'91	105,722	5,547	△100,175
'92	162,863	10,563	△152,300
'93(1-9)	148,427	3,559	△144,868
계	447,945	20,925	△427,020

다. 반입 · 반출 승인기관

- 남북간의 물자교역은 남북한 교역대상물품 및 반출 · 반입승인절차에 관한 고시(통일원고시 제93-2호)에 따라 반출 · 반입 제한승인품목은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반출 · 반입 자동승인품목은 통일원장관이 갑류외국환 은행의 장에게 그 승인권한을 위탁하였음.
- '88년 이후 '93년 10월까지 전체 반입 · 반출 승인실적 중 제한승인품목이 110,383천 \$로 17.5%, 자동승인품목이 517,117천 \$로 82.5%이며, 자동승인 품목의 비율이 '91년 65%, '92년 88%에 이어 '93년에는 95.9%로 더욱 높아져 대부분의 남북교역이 자동승인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연도별 반입·반출 승인 기관별 현황

(단위 : 천 \$)

연 도	통 일 원(제한승인)			갑류외국환은행(자동승인)		
	반 입	반 출	계	반 입	반 출	계
'88	233	0	233	804	0	804
'89	3,235	0	3,235	19,000	69	19,069
'90	7,694	0	7,694	12,660	4,731	17,391
'91	51,348	15,771	67,119	114,648	10,405	125,053
'92	23,398	1,541	24,939	177,287	11,277	188,564
'93 (1-10)	5,545	1,618	7,163	161,341	4,895	166,236
계	91,453	18,930	110,383	485,740	31,377	517,117

라. 교역품목

(1) 승인기준

- 교역규모가 신장됨에 따라 반출입 승인 품목수도 '88년의 4개품목에서 '91년에는 140개로 늘어났으며, '92년에는 127개로 다소 줄었음.
- '93년에는 10월까지 107개 품목이 반출입 승인을 받아 있는 바 '92년 이후부터 감소되어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

반출입 승인품목수

(단위 : 개)

연 도	반 입	반 출	계
'88	4		4
'89	19	1	20
'90	26	4	30
'91	92	48	140
'92	93	34	127
'93(1-10)	74	33	107

- '92년의 반입승인 품목구조를 보면 철강·금속의 비율이 61.5%, 광산물 15.8%, 농산물 12.3%, 수산물 6.8%로 1차 상품 및 중간 원자재가 대부분이었으며, '93년 10월 까지를 살펴보면 철강·금속이 84.0%로 가장 많았고 농·임산물 6.7%, 섬유류 5.2%, 수산물 1.2%를 나타내고 있음.

- '92년의 반출승인 품목구조는 화학제품 74.1%, 철강제품 16.4%로 두 품목군이 90%이상이며 나머지는 섬유류, 농수산물이었으며, '93년 10월까지의 섬유류가 68.0%로 가장 많았고 화학제품이 10.2%, 농수산물이 5.9%, 기계류가 2.8%임.

○ 연도별 주요 반출입 승인 품목의 수량과 금액은 다음과 같음.

연도별 반입승인 품목구조

(단위 : 천 \$, ()안은 총액대비)

연도	농· 임산물	수산물	광산물	철강· 금속	섬유류	화학 제품	기 타	계
'88	—	233 (22.5)	—	660 (63.6)	—	—	144 (13.9)	1,037 (100)
'89	510 (2.3)	357 (1.6)	3,596 (16.2)	15,945 (71.7)	1,479 (6.6)	—	348 (1.6)	22,235 (100)
'90	6,843 (33.6)	2,080 (10.2)	3,257 (16.0)	6,625 (32.5)	249 (1.2)	89 (0.4)	1,211 (5.9)	20,354 (100)
'91	17,505 (10.5)	25,821 (15.6)	23,152 (13.9)	91,720 (55.3)	2,342 (1.4)	3,141 (1.9)	2,315 (1.4)	165,996 (100)
'92	24,637 (12.3)	13,685 (6.8)	31,699 (15.8)	123,395 (61.5)	3,590 (1.8)	1,630 (0.8)	2,049 (1.0)	200,685 (100)
'93 (1-10)	11,139 (6.7)	1,950 (1.2)	1,084 (0.6)	140,167 (84.0)	8,735 (5.2)	617 (0.4)	3,103 (1.9)	166,795 (100)
계	60,634 (10.5)	44,126 (7.6)	62,788 (10.8)	378,512 (65.5)	16,395 (2.8)	5,477 (0.9)	9,170 (1.5)	577,102 (100)

연도별 반출승인 품목구조

(단위 : 천 \$, ()안은 총액대비)

연도	농수 산물	섬유류	전기·전 자제품	기계류	화학 제품	철강류	기타	계
'89	—	69	—	—	—	—	—	69
'90	—	2,450 (51.8)	—	2,188 (46.2)	83 (1.8)	—	10 (0.2)	4,731 (100)
'91	1,750 (6.6)	7,196 (27.5)	1,560 (6.0)	—	13,530 (51.7)	—	2,140 (8.2)	26,176 (100)
'92	410 (3.2)	467 (3.6)	—	23 (0.2)	9,493 (74.1)	2,102 (16.4)	323 (2.5)	12,818 (100)
'93 (1-10)	386 (5.9)	4,432 (68.0)	—	179 (2.8)	662 (10.2)	39 (0.6)	815 (12.5)	6,513 (100)
계	2,546 (5.0)	14,614 (29.0)	1,560 (3.1)	2,390 (4.7)	23,768 (47.2)	2,141 (4.2)	3,288 (6.5)	50,307 (100)

(2) 통관기준

- 반출입 승인품목 수의 증가에 따라 반출입 통관품목 수도 '89년 25개 품목, '90년 24개 품목, '91년 67개 품목, '92년에는 113개 품목으로 늘어났으며 '93년 9월까지는 82개 품목을 나타내고 있음.
- 반입통관된 품목 구조를 살펴보면 철강·금속이 80.8%로 가장 큰 비중을 보였으며 농·임산물 6.2%, 광산물 5.3%, 섬유류 2.8% 순임.

- 한편, 반출통관 품목구조는 화학제품이 59.5%로 가장 많았고 섬유류 13.5%, 철강재 9.5%, 농수산물 7.7%, 기계류 5.3%순으로 나타났음.

반출입 통관품목수

(단위 : 개)

연 도	반 입	반 출	계
'89	24	1	25
'90	21	3	24
'91	49	18	67
'92	89	24	113
'93(1-10)	67	15	82

연도별 반입통관 품목구조

(단위 : 천 \$, ()안은 총액대비)

연도	농· 임산물	수산물	광산물	철강· 금속	섬유류	화학 제품	기 타	계
'89	414 (2.2)	174 (0.9)	1,094 (5.9)	15,073 (80.8)	1,311 (7.0)	-	589 (3.2)	18,655 (100)
'90	4,931 (40.1)	392 (3.2)	1,599 (13.0)	4,529 (36.9)	204 (1.7)	-	623 (5.1)	12,278 (100)
'91	5,054 (4.8)	3,052 (2.9)	6,173 (5.8)	86,044 (81.4)	1,588 (1.5)	1,672 (1.6)	2,139 (2.0)	105,722 (100)
'92	10,390 (6.4)	5,130 (3.1)	14,437 (8.8)	125,418 (77.0)	3,516 (2.2)	1,248 (0.8)	2,724 (1.7)	162,863 (100)
'93 (1-9)	7,373 (5.0)	723 (0.5)	852 (0.6)	131,143 (88.4)	5,939 (4.0)	663 (0.4)	1,734 (1.1)	148,427 (100)
계	28,162 (6.2)	9,471 (2.1)	24,155 (5.3)	362,207 (80.8)	12,558 (2.8)	3,583 (0.7)	7,809 (1.7)	447,945 (100)

연도별 반출통관 품목구조

(단위 : 천 \$, ()안은 총액대비)

연도	농수 산물	섬유류	전기·전 자제품	기계류	화학 제품	철강재	기타	계
'89	-	69	-	-	-	-	-	69
'90	-	-	-	1,094 (92.2)	83 (7.0)	-	10 (0.8)	1,187 (100)
'91	1,607 (29.0)	18 (0.3)	447 (8.1)	-	3,475 (62.6)	-	-	5547 (100)
'92	-	496 (4.7)	-	22 (0.2)	7,932 (75.6)	1,957 (18.6)	92 (0.9)	10,499 (100)
'93 (1-9)	6 (0.2)	2,246 (63.1)	-	-	937 (26.3)	34 (1.0)	336 (9.4)	3,559 (100)
계	1,613 (7.7)	2,829 (13.5)	447 (2.1)	1,116 (5.3)	12,427 (59.5)	1,991 (9.5)	438 (2.0)	20,861 (100)

마. 교역방식 및 교역형태

- 남북간의 교역방식은 해외 중개상을 사이에 둔 순수한 간접교역과 해외 현지법인에서 북한측 상대방과 직접 협의를 하되 계약 및 대금결제는 해외 중개상을 통하는 방식외에 교역당사자가 북한측 상대방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물물교환 또는 제3국은행을 이용하여 대금결제하는 직교역 방식도 추진되고 있음.

<직교역>

- 남북한의 첫번째 직교역은 '91년 7월 우리 쌀을 실은 배가 목포항을 출발하여 그해 8월 나진항에 하역을 완료함으로써 이루어졌음.
- 교역당사자인 남한의 천지무역은 '90년 7월 「사랑의 쌀」 전달과정에서 알게된 북한의 금강산 국제개발회사와 '91년 1월 우리쌀 10만톤과 이에 상응하는 북한 물자를 상호 교환하는 구상무역에 합의하여 1차적으로 우리쌀 5천톤을 반출하고, 북한측에서는 수령 즉시 무연탄 3만톤, 시멘트 1만1천톤을 상환하기로 계약을 체결, 그해 4월 11일 정부의 승인을 얻었음. 이에 따라 천지무역은 쌀 5천톤을 반출하였으나 북한측에서는 아직까지 대응물자와 상환일정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 그 다음의 직교역은 무연탄 수입선의 일부를 북한으로 돌리기로 한 외국무연탄 도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정부가 직교역 추진업체에 우선 순위를 주

기로 하고 직교역을 적극 권장함에 따라 이루어졌음.

- 렉키금성상사는 중국과의 합영회사인 북한의 조선용남화학합영회사와의 북한산 무연탄 10만톤을 반입하고 설탕 5천톤, 텔레비전 5천세트, LDPE 7백톤을 반출하는 구상무역형태의 직교역 추진에 대하여 '91년 11월 정부의 승인을 얻어, '92년 10월 현재 무연탄 41,834톤이 반입되었고 텔레비전 2,100세트, LDPE 500톤이 반출되었음.
- 삼성물산은 북한의 조선신고무역회사로부터 북한산 무연탄 7만톤을 직교역으로 반입하는 것을 '91년 11월 11일 정부로부터 승인을 얻어 '92년 10월말 현재 2만 1천톤이 반입되었음.
- 또한 정부는 직교역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92년에는 농산물 중에서 한약재가 국내생산이 부족하고 북한산 한약재의 성분이 국내산과 비슷하여 상호보완성이 있다고 보고 한약재를 대상으로 직교역을 추진함으로써 한약재의 직교역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음.

<임가공>

- 교역형태도 단순 반출입외에 반출반입이 연계되는 연계교역, 남한의 원자재를 보내 북한에서 가공한 후 그 제품을 다시 반입하는 위탁가공교역 등으로 다양화 되고 있는 추세임.
- 남북간 임가공 교역은 지난 '91년 12월 코오롱상사가 1만3천4백6달러어치의 나일론 원단 등을 북한측에 제공, 4천개의 학생가방(2만2천8백80달러)을 만들어

반입한 것이 처음이었으며, '92년에는 코오롱상사 등 4개기업이 40만7천65달러어치의 원부자재를 반출, 52만8천5백6달러어치의 북한제품을 반입했음.

- '93년도의 주요기업의 임가공 교역 사례를 보면 럭키금성상사가 1월과 5월 두차례에 걸쳐 46만8천달러의 직물 원단 등을 북한에 반출, 4만9천벌의 남자 자켓과 9천8백벌의 여자 자켓, 5만벌의 남자바지(총 61만4천달러)를 들여왔음.
- 삼성물산도 올들어 총 12회에 걸쳐 93만7천달러의 직물원단, 부직포, 골덴 직물류, 양복안감, 모직물 등을 북한에 반출, 스웨터, 바지, 사파리, 셔츠, 잠바, 스커트, 오리털잠바, 양복상의 등 1백 35만달러의 의류 제품을 반입했음.
- 또한 (주)헌트, 한일합섬, 양지실업, 쌍방울, 고합상사, 대우 등도 직물원단, 아크릴사파일편물, 면직물 등 원료를 북한에 제공하고 바지, 봉제완구, 남자내의, 자켓, 사파리 등을 만들어 반입했음.

바. 교역증개지

- 반출입 증개지는 홍콩이 전체 1,260건중 881건을 차지, 69.9%를 기록하였으며, 일본이 207건으로 16.5%, 중국이 73건으로 5.8%, 싱가포르가 41건으로 3.3%를 나타냈음.

연도별 반출입 증개지

(건, ()는 총건수 대비)

연도 증개지	'88	'89	'90	'91	'92	'93 (1-10)	계
홍콩	3 (75)	25 (43.1)	66 (83.5)	252 (68.4)	264 (64.8)	271 (79.2)	881 (69.9)
일본	1 (25)	16 (27.5)	4 (5.0)	65 (17.6)	72 (17.6)	49 (14.3)	207 (16.5)
싱가포르	-	14 (24.1)	7 (8.8)	9 (2.4)	7 (1.7)	4 (1.1)	41 (3.3)
중국	-	-	-	26 (7.0)	34 (8.3)	13 (3.8)	73 (5.8)
호주	-	3 (5.1)	1 (1.2)	-	2 (0.4)	-	6 (0.4)
스위스	-	-	-	2 (0.5)	-	-	2 (0.2)
오스트리아	-	-	-	2 (0.5)	-	-	2 (0.2)
미국	-	-	-	1 (0.2)	4 (0.9)	2 (0.5)	7 (0.5)
북한*	-	-	-	5 (1.3)	13 (3.1)	-	18 (1.4)
기타	-	-	1 (1.2)	6 (1.6)	11 (2.7)	5 (1.4)	23 (1.8)
계	4 (100)	58 (100)	79 (100)	368 (100)	407 (100)	344 (100)	1,260 (100)

*는 직교역

3. 평 가

- 남북한간의 물자교역은 남한의 일방적인 대북교역문호 개방 선언과 조치로 진행되어 왔고 북한측에서는 아직 까지 남북교역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 문제점의 대부분은 현행 남북간의 물자교역이 대부분 제3국의 중개상을 통한 간접교역으로 진행됨에 따라 발생하고 있음.
 - 간접교역에서는 교역당사자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거래나 협상에 임하기 보다는 중개상이 제시하는 제한된 정보와 가격조건을 받아들여야 하므로 교역에 따른 이익이 중개상에게 많이 돌아가게 됨.
 - 아울러 대금결제와 물품의 품질검사도 남측의 교역당사자가 직접 하지 못하고 전적으로 중개상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며, 반입후 품질 불량시에는 이의 구제장치가 없는 실정임.
 - 또한 물품의 운송도 큰 애로사항으로 물량이 많을 때에는 제3국 선박을 용선하여 운반하는데 선박회사들의 북한 취항기피로 선박확보에 어려움이 많으며, 적은 물량일 경우에는 홍콩, 일본, 중국등에서 환적을 하게 되므로 이에 따른 부대비용이 발생하게 됨.
- 한편 '93년 10월까지의 남북교역 승인규모는 173,308천 \$로 '92년 같은 기간의 182,436천 \$에 비해 감소되었으나 반출입 통관실적은 '93년 9월까지 151,986천 \$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26,328천 \$ 보다는 다소 증가되었음.

- 교역내용면에서는 '92년에 한약재 등 남북간 상호보완성이 큰 품목중심으로 직교역(11건)이 성사된 바 있으며, 특히 교역당사자로 민간업체외에 정부투자기관인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참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향후 남북교역의 새로운 가능성을 엿을 수 있었음.
- 교역형태면에서도 단순교역이외에 남북물자가 상호교환되는 연계교역과 임가공교역 등이 성사되는 등 그 형태가 다양화 되고 있음.
- 다만 북한측은 아직도 남북교역을 공식 인정하지 않은 관계로 향후 남북교역의 정상적 발전을 위해서는 직교역 체제로의 전환문제와 함께 청산결제, 원산지 증명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
- 향후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고 남북관계가 진전될 경우, 남북한 교역의 규모는 커질 것이며 또한 남북간 경협도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IV. 북 한 경 제 현 황

1. 경제일반

가. '92년도 경제시책 방향

(1) 기본목표

- 기본과업은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노선을 철저히 관철하고 인민들의 食·衣·住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 것.
- ※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흰 쌀밥에 고기국을 먹으며, 비단옷을 입고 기와집에 살려는 우리인민의 세기적 염원을 실현하는 것이 당면한 주요목표”라고 지적하였음('92년 김일성 신년사).
- 가장 긴급하고 절실한 과업은 전력과 석탄의 증산과 철도 운수를 발전시키는 것임.
-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농업과 경공업 발전에 주력해야 하며 '92년을 「대농의 해」로 정해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증대시킴.
- 「과학기술발전 3개년 계획」수행을 위한 투쟁을 벌여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적극 실현함.

(2) 연도중 경제건설 실태와 평가

- '92년도의 북한경제 건설실적은 완공·조업 건수기준으로 볼 때 전년의 85건보다 10.6% 증가한 94건

정도로 나타났음.

※ 북한은 연도중 100여건의 건설사업을 완공하였다고 발표
(중앙통신 '92. 12. 18)

- 시기별로 보면 2월 및 4월에 완공·조업한 건수가 전체의 53.1%를 차지하고 있어 김부자생일 시기의 실적 집중화현상이 전년도의 38.8%보다도 더욱 두드러진 특징을 보였음.
 - 특히 김정일생일 전후 시기에 완공·조업실적은 전년보다 2.1배 증가한데 비해 김일성생일 전후 시기에는 1.7배 증가하는데 그침으로써 김정일의 정치경제적 입지가 크게 확대되었음을 시사하고 있음.
 - 반면 '92년도 하반기의 완공·조업실적은 전년도보다도 크게 저하된 19건에 불과하였음.
- 규모면에서는 탄광·광산의 갱건설, 기존 공장·기업소의 생산능력 확장공사, 일부 구간의 수송망 확장 등 주로 소규모 산업시설을 보완하는데 그쳤음.
 - 대규모 건설사업으로 남강, 영원, 동평양화력, 12월화력 등 소위 10대 수력 및 화력발전소의 건설과 순천비날론 2단계공사(5만톤→10만톤), 사리원 카리비료공장(51만톤), 김책제철확장공사(240만톤→500만톤 능력확장)등을 계속 추진하였으나
 - 평양-개성간 고속도로(약 160km)가 착공 5년 6개월만에 완공된 것을 제외하고는 뚜렷한 실적을 나타내지 못하였음.

- 산업별로 보면,
 - 탄광·광산·전력 등 이른바 「선행부문」에 대한 건설이 완만한 진척을 보이는 가운데
 - 심각한 「食·衣·住」문제의 해소를 위해 「관개수로」공사, 비료공장·직물공장의 시설능력 확장, 주택건설(총 2만3천세대)등에 주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 구조적인 수송애로 타개를 위해서 함남 함흥-신흥간, 평북 구장-향장간 철도전기화, 평양-개성간의 고속도로 건설, 홍남항 부두 확장 등이 추진·건설되었음.
 - 또한 금속공업부문에서는 「727호제련소 경질합금 직장」, 「전천 전기식 착암기직장」신설 등 기존 공장의 생산공정 현대화 및 소규모적인 설비능력 확장이 이루어졌고
 - 이 밖에 화학·경공업부문에서는 평양염화비닐신발공장, 홍남타올공장 등을 비롯 약 40개의 지방 산업공장이 신설 또는 능력확장되었으며, 평양 애국국수집, 광복백화점의 음악기계상점 및 지하식당 개설 등 상업유통부문에 대한 실적도 나타내고 있어 북한의 대외개방과 관련하여 주목이 되고 있음.
- 한편 합영 및 UNDP지원사업실적은 '91년과 같은 총 7건으로 파악되었으며, 특히 합영사업은 대부분 제일 조총련계 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경공업 부문의 소액출자사업인 것으로 나타났음.
 - 대부분이 벗짚을 이용한 돛자리, 수예 및 공예품

생산공장이거나 관광·서비스부문임.

- 북한의 '92년도 경제건설실적은 대내외 자본조달의 한계, 기술부족, 원자재공급 애로 등으로 인해 주요 대규모 건설사업은 공기가 지연되는 등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한 가운데 기존공장·기업소의 생산공정 및 일부 수송망의 보완, 지방산업공장의 조업 등 소규모의 산업시설 확장에 그쳤음.
- 연도중 실적을 당초의 경제정책방향과 비교해 보면
- 「食·衣·住」문제와 관련하여 농업기반 조성, 주택 건설 등이 예년보다는 비교적 활발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최우선적 정책목표로 설정한 에너지난 해소 및 수송애로 타개를 위한 건설실적은 매우 부진하였던 것으로 나타났음.
- 연도중 북한의 완공·조업실적은 외형적인 건수면에서는 전년도보다 증가하였으나 실질적인 내용면에서는 건설여건 악화에 따른 계획추진의 차질로 전년도의 부진상(전년도 건설부문 성장률: -3.4%)을 탈피하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평가됨.
- 따라서 '93년도에도 성장기반 취약(구조적인 에너지 부족 및 원자재공급 애로)→생산력 저하→저성장의 악순환이 되풀이될 것으로 전망됨.

나. 경제총량 규모와 성장추이

(1) 면적 및 인구

- 북한지역의 면적은 122,762km²로서 남·북한 전 국토면적의 약 55%를 차지하고 있음.
- '92년 현재 북한의 총 인구수는 남한인구의 약 절반 수준인 2,233.6만명으로 추정되었으며, 인구 증가율은 1.40%로서 남한의 0.91%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 북한의 '80년대 연평균 인구증가율 : 1.82%
- 인구밀도는 1km²당 181.9명으로 남한의 439.8명보다 월등히 낮고 경제활동 참가율은 남한의 60.6%보다 높은 67.8%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북한의 경제구조가 노동의존적이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는데 원인이 있음.

(2) GNP 및 경제성장

- 북한은 지금까지 구체적이고 체계화된 공식 경제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있으며, 간헐적으로 발표하는 국민소득에 관한 통계도 그 개념이 서방의 GNP와는 상이하므로 북한의 국민소득 수준을 평가하는데 가장 큰 애로요인이 되어 왔음.
- 북한의 국민소득 개념을 서방의 GNP개념으로 추정하는데는 여러가지 접근방법이 있으나, 정부는 '90

년부터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북한 GNP를 UN의 국민계정체계(SNA)에 의한 생산접근방식으로 추계함으로써 북한경제력을 평가하고 있음.

- '70년대 중반 이후 침체를 보이기 시작한 북한경제는 구조적 원인에 따른 침체에 더하여 구 소련을 중심으로 한 대외교역체계가 붕괴됨에 따라 '90년부터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90년 -3.7%, '91년 -5.2%, '92년 -7.6%)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북한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구 분	'90	'91	'92
경제성장률	-3.7	-5.2	-7.6
국민총생산(경상 억달러)	231	229	211
1인당 GNP(달러)	1,064	1,038	943
대외교역(억달러)	46.4	27.2	26.6
수 출(")	20.2	10.1	10.2
수 입(")	26.2	17.1	16.4

자료 : 한국은행

- '92년도 북한의 경상 GNP 규모는 총 211억달러, 1인당 GNP는 943달러로 추정되어 전체 경제규모는 한국의 약 1/14, 1인당 GNP는 1/7수준으로 평가되었음.

※ '92년 한국의 GNP는 2,945억달러, 1인당 GNP는 6,749달러

- 대외교역 감소에 따른 에너지·원자재 공급부족으로 인해 산업가동률이 크게 저하되었으며, 특히 제조업 생산은 '91년 13.4%, '92년 17.8%나 감소하였고 광업

생산도 하락('90년 -8.5%, '91년 -6.8%, '92년 -6.1%)하였음.

- 북한의 GNP대비 무역의존도는 낮은 수준이나 에너지·중공업·수송 등 경제 중핵부문의 수입의존도는 타 부문에 비해 높은 편임.

북한의 산업별 성장률

(단위 : %)

부 문 별	'90	'91	'92
농 립 어 업	-10.2	2.8	-2.7
광 공 업	-3.9	-11.9	-15.0
광 업	-8.9	-6.8	-6.1
제 조 업	-1.5	-13.4	-17.8
(경 공 업)	(-6.2)	(-4.4)	(-7.3)
(중 공 업)	(-0.4)	(-15.8)	(-21.0)
전 기 · 가 스 · 수 도	-2.2	-4.5	-5.7
건 설	5.9	-3.4	-2.1
서 비 스	0.3	-2.5	0.8
(정 부)	(1.2)	(4.4)	(2.4)
(기 타)	(-1.0)	(-0.3)	(-1.7)

자료 : 한국은행

- 에너지공급의 70%와 20%를 차지하는 석탄생산 및 발전량이 '90년 대비 각각 17%, 16% 감소한 데다가 수입이 크게 줄어들어 원유 및 원자재공급 부족이 심화됨으로써 중화학공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음.

에너지공급 추이

구 분	단 위	'90	'91	'92	'90년비 증가율(%)
석 탄	만톤	3,510	3,100	2,920	-17
원 유 도 입 량	만톤	252	189	152	-40
발 전 량	억Kwh	294	263	252	-16

자료 : 통일원

(3) 재정규모

- 북한의 국가예산은 중앙예산과 지방예산으로 구분되며, 통상 매년 4월에 개최되는 최고인민회의는 정무원 재정부장이 보고하는 전년도 결산과 당해년도 예산을 심의·확정함.
-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회의('93. 4)에서 발표한 '92년도 결산보고자료에 의하면, '92년도 총 예산규모는 세입과 세출이 같은 185억 4,503만달러(395억 92만 북한원)이었음.
- 북한의 재정규모는 남한의 43%(세출기준)에 불과하나 재정부담률(예산/GNP)은 87% 수준으로 한국(15%수준)보다 현저하게 높은 것이 특징임.
- 북한이 발표한 예산상의 군사비는 세출예산의 11.6%에 해당하고, 전년비 2.6% 증가에 그친 21억 5,122만 달러(45억 8,211만 북한원)로 편성되어 있으나, 현재의 군사력(병력·장비 등)규모를 기준으로 한 북한의 실질군사비 지출규모는 명목상 군사비를 월등히 상회할 것으로 평가되었음. 특히 과도한 군사비 지출은

고질적인 재정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93년도 북한의 예산규모는 전년비 2.3%(세출기준)증가된 186억 4천만 달러(404억 4,985만 북한원)로 편성되었음.

- 종합적으로 볼 때 '92년도의 북한 예산은 전년비 7% (세출기준)증가된 185억 4,503만달러(395억92만 북한원)로 편성되어, '80년부터 '92년까지의 전년비 예산 증가율 연평균 6.25%를 상회하는 것으로 다소 팽창 예산으로 편성한 것이 특징으로서, '92년도 결산은 세출총액이 184.5억달러(세입총액이 185.6억달러)로 1.1억달러(2억 3,700만 북한원)의 흑자로 보고되었음.

'92년 예산현황

구 분	단위	'90	'91	'92
예산총액(세출)	억불	166	171.7	184.5
예산증가율(세입기준)	%	6.2	4.2	7
예산 / GNP	%	71.9	75.0	87.4
군사비(실질)	억불	49.6	55.6	55.6
군사비 / GNP	%	21.5	24.3	26.3

다. 주요 산업별 동향

(1) 농림·수산업

- 농림·수산업은 유류난 극복대책의 일환으로 役畜使役을 장려함에 따라 소를 중심으로 가축의 사육두수가 늘어난 축산업은 11.0% 증가하였으나, 농

업에서 비중이 큰 미곡이 경지의 황폐화와 병충해의 영향으로 6.7% 감소되고 어업생산도 연료부족과 선박 노후화 등의 영향으로 8.4% 줄어 전체적으로 2.7% 감소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식량난을 가중시킨 것으로 분석되었음.

- '92년도 식량작물 생산량은 총 426.8만톤(정곡기준, 그중 쌀 생산량은 153.1만톤)으로 전년도에 비해 무려 103.9만톤이나 감소된 것으로 추정되었음.
- '92년도 식량수급 실태는 연간 총 수요량이 650만톤 정도인데 비해 '91년도 생산량은 530.7만톤으로 '92 양곡회계연도중 식량부족량은 총 119.3만톤으로 추정되었음.
- 북한은 연간 식량 총 부족분 119.3만톤(약 1.1억 달러 상당)을 외국에서 도입하여 충당한 것으로 보임.

농수산물 생산량

구 분	단위	'90	'91	'92
식 럡 작 물 총 생 산	만톤	481.2	530.7	426.8
(쌀)	〃	(193.2)	(217.6)	(153.1)
(옥수수, 기타)	〃	(288.0)	(313.1)	(273.7)
수 산 물 총 생 산	〃	145.5	120.0	114.0

- 수산업 부문은 출어용 유류부족, 선박 및 어로 장비의 노후화 등으로 출어일수가 줄어들었으며, 연근해 어족자원 고갈 등의 영향으로 '92년도 수산물 생산량은 전년비 0.5% 줄어든 114만톤으로 추정되

있음.

- ※ 북한은 외화획득을 위해 생산된 대부분의 수산물을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수산물 소비수준은 극히 낮은 실정임.

(2) 광공업

<광업>

- 광업은 북한 에너지원의 대종을 이루는 석탄생산이 탄층 심화 등 채굴여건의 악화로 5.8% 감소된데다 철 등 금속광물 생산도 줄어 전체적으로는 6.1% 감소함으로써 에너지난과 외화부족을 심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 광업부문은 탄광, 전력 등 에너지공업 부문과 함께 이른바 경제건설의 「선행부문」으로서 동부문에 대한 건설은 완만한 진척을 보였다.
- 연도중 광물생산 실적의 부진은 전년도와 같이 금속공업 생산부진의 주요한 요인이 되었음.
 - '92년도 철광석의 경우 생산량은 전년도의 70.3% 수준인 574.6만톤에 불과하였음.

<에너지산업>

- 북한의 에너지공급구조는 主炭從油로 석탄 70%, 수력 16%, 유류 10%, 기타 4%로 기초에너지 중 석탄의존율이 매우 높은 편이고, 석유의 비중이 10%에 불과하기 때문에 에너지난의 과급효과는 남한에 비해 적은 편임.

- 새로운 탄광개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석탄생산량은 '91년보다 오히려 5.8% 감소된 2,920만톤으로 평가되었음.
- 북한의 정유공장은 승리화학공장(함북)과 봉화화학공장(평북)등 2개가 있으며, 연간 총 정유능력은 350만톤 수준임.
- '92년도 원유도입량은 총 152만톤으로 '91년도 도입 실적 189만톤보다 19.6%감소되었으며, 그 결과 정유공장의 연간 가동률은 43.4%에 불과하였음.
- 북한은 고질적인 에너지난 해소를 위해 제3차 7개년계획의 역점사업으로 남강, 영원, 동평양화력, 12월화력 등 이른바 10대 수력 및 화력발전소 건설을 계속 추진하고 있음.
- '92년도 전력생산은 석탄생산 감소의 영향으로 화력발전이 6.7% 감소한데다 수력발전도 용수부족의 심화로 5.6% 줄어 전체로는 전년대비 6.1% 감소된 247억 Kwh인 것으로 평가됨. 이 같은 전력생산 감소는 북한의 전력공급난을 가중시켜 산업의 생산활동을 위축시킨 한편, TV방영시간의 단축, “한 집 한 등 켜기”운동의 전개 등 북한주민의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음

에너지생산 및 원유도입량

구 분	단위	'90	'91	'92
석 탄 생 산 량	만톤	3,315	3,100	2,920
원 유 도 입 량	"	252	189	152
발 전 량	억Kwh	277	263	247
발 전 시 설 총 량	만Kw	714	714	714
(수 력)	"	(429)	(429)	(429)
(화 력)	"	(285)	(285)	(285)

<금속공업>

- 금속공업부문에서는 「727호 제련소 경질합금직장」, 「전천 전기식 착암기직장」신설 등 기존 공장의 생산 공정 현대화 및 소규모적인 설비능력 확장과 김책제철확장공사(240만톤→500만톤 능력확장) 등을 추진해 왔으나 '92년도 철강생산량은 철광석 생산량의 감소와 코크스부족 등으로 '91년도보다 43.4%나 감소된 179.3만톤으로 평가되었음.
- 북한지역에는 금, 동, 연, 아연 등 비철금속(유색금속) 광물의 매장량이 비교적 풍부하며 이들 광물은 북한의 주요 외화소득원이 되고 있음.
 - '92년도 비철금속의 총 생산량은 17.8만톤으로 전년도 생산량(22.7만톤)보다 무려 22%나 감소된 것으로 평가되었음.

<기계공업>

- 북한의 기계공업은 군수산업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으

며 최근에는 발전 및 화학설비의 자체생산에 주력하고 있으나 일부 무기생산 부문을 제외하면 기술수준이 낙후되어 국제경쟁력을 상실하고 있으며, 소련 붕괴 이후 주요 부품 공급부족에 따라 대부분의 공장가동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통신, 전자, 자동차 관련 산업의 낙후가 기계공업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 그러나 제3차 7개년 계획('87~'93)착수 이후 북한은 기술혁명을 강조하고 두차례에 걸친「과학기술발전 3개년 계획」(1차 : '88~'90, 2차 : '91. 7~'94. 7)을 추진, 생산공정의 기계화·자동화·로봇화와 집적회로 등 첨단기술 산업개발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92년도 주요 기계제품 생산실적은 공작기계 15만대, 자동차 1.04만대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나 조선실적은 전년도 대비 31% 증가된 총 5.5만톤이 건조되었음.

<화학 및 건재공업>

- 북한은 주민들의 「食·衣·住」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제 3차 7개년계획 기본과업의 하나로 설정하고 화학섬유, 화학비료, 시멘트 등 화학 및 건재공업 생산시설의 확장에 역점을 두고 있음.
- ※ 제3차 7개년계획 기간중 화학섬유 225만톤, 비료 720만톤을 생산목표로 설정
- '92년도중 화학·건재부문 동향을 종합해 보면 순천비 날론 2단계 공사(5만톤→10만톤), 사리원 카리비료공

장(51만톤)등의 건설·확장공사 추진에도 불구하고 '92년도 생산실적은 화학비료가 138.5만톤으로 전년도 보다 3.5%감소되었으며, 시멘트도 전년비 8.2%나 감소된 474.7만톤에 불과하였음.

<경공업>

- 북한은 합영법 발표와 때를 같이하여 '84년 이후 이른바 「8·3 인민소비품 생산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으며 「경공업혁명」, 「인민봉사혁명」등의 구호아래 경공업제품의 증산을 도모하고 있으나 경공업부문에 대한 투자부족 및 원자재 공급부족으로 주민소비재 부족이 날로 심화되고 있음.
- '92년도중 경공업부문 건설동향을 보면 평양염화비닐 신발공장, 흥남타올 공장 등을 비롯, 약 40개의 지방 산업공장이 신설 또는 능력확장이 되었으나 직물 생산량이 전년도 대비 19% 감소된 1.7억m에 불과하였으며, 섬유는 22%나 감소된 4.2만톤을 생산하였음.

라. 대외경제 동향

<무역>

- '92년 2월에는 정무원 결정을 통해 「수출품의 품종과 물량 확대」, 「수출 시장의 개척」, 「가공무역의 강화」, 「수출물품의 품질제고」, 「무역관련 기관 및 종사자들의 역할 강화」 등의 구체적 수출증대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앞서 「당중앙위」에서는 대외무역사업을 「혁명적으로 전환」시키는 문제에 대한 정책방향이 결

정되었음.

- '90~'92년 기간중 북한의 무역은 매년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바, 감소의 직접적인 요인은 동구제국 및 러시아의 사회주의체제 붕괴에 따른 기존 시장의 와해와 거래조건의 악화에서 찾을 수 있으며, 구조적인 면에서는 무역수지 적자의 지속 및 국내생산 부진으로 인한 수출상품 부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음.
- 시장구조면에서 볼 때 북한은 무역총액('92년도)의 55%가 중국, 일본 및 러시아 3개국에 편중되는 등 시장구조상의 취약점을 안고 있으며, 산업생산력의 한계, 수출산업 취약, 전반적인 기술낙후로 수출상품 공급량이 부족할 뿐 아니라 국제적인 기술 경쟁력이 극도로 취약함.
- 북한의 3대 교역국은 러시아, 중국, 일본으로 '92년말 기준 이들 3개국과의 교역규모는 북한 총교역 규모의 55.6%를 점유하고 있음.
 - 러시아 : '90년도까지 북한 총교역 규모의 1/2이상을 차지하는 북한 최대의 교역상대국이었으나 '91년 양국 정부간 청산결제 거래방식이 중단되면서 교역규모가 급격히 감소('90년 교역규모 : 25.7억달러, '92년 교역규모 : 2.9억달러)
 - 중 국 : '91년이래 북한 최대 교역상대국으로 부상, 러시아를 대신하여 북한의 원유, 식량 등의 수입의존도가 점차 커지고 있음.

- 일 본 : 북한의 최대수출 대상국으로서 섬유제품의 임가공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경화부족, 경쟁력 있는 상품의 부족 및 악화되고 있는 교역조건 등 불리한 무역 여건속에서 북한은 이러한 난관을 타개하기 위하여 노동력 수출, 중개무역, 임가공 수출을 강화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음.

최근 북한의 무역추이

단위 : 억불, ()내 %

연도 국별	'90			'91			'92		
	총액	수입	수출	총액	수입	수출	총액	수입	수출
총 액	47.7 (100)	28.1	19.6	27.2 (100)	17.1	10.1	26.6 (100)	16.4	10.2
중 국	4.8 (10.1)	3.6	1.2	6.2 (22.8)	5.3	0.9	7.0 (26.3)	5.4	1.6
일 본	4.8 (10.1)	1.8	3.0	5.0 (18.4)	2.2	2.8	4.8 (18.0)	2.2	2.6
러 시 아	25.7 (53.8)	15.2	10.5	4.7 (17.3)	2.8	1.9	3.0 (11.3)	2.3	0.7
기타국가	12.4 (26.0)	7.5	4.9	11.3 (41.5)	6.8	4.5	11.8 (44.4)	6.5	5.3

자료 : 북한개요(통일원, 1992) 및 '92년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KOTRA 1993. 6)

<대외경제협력>

- '89년이후 동구제국 및 소련의 사회주의체제 붕괴로 대외경제협력 여건이 극도로 악화됨으로써 북한은 최근

미·일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당면한 경제위기 탈피에 필요한 식량·에너지 등의 확보를 위한 중동 및 아시아 자원보유국에 대한 외교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음.

- 또한 대내적으로는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의 설치, 외자유치와 관련된 각종 법률의 정비 등 서방자본과 기술유치를 위한 경제개방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으며, UNDP·UNIDO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최근 북한은 대외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기존 외채의 상환불이행, 핵무기개발 추진과 같은 정치·군사적 모험주의,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부족 등은 북한의 대외경제협력을 가로막는 가장 중요한 장애요인들이 되고 있음.
- '92년 현재 북한 외채총액은 약 97억불로 추정되고 있으며, 그 중 37%에 해당하는 36억불이 서방국가에 대한 채무이며, 구 사회주의권 국가들에 대한 채무는 63%인 61억불에 이르고 있음.
- '92년 북한 총외채의 대 GNP 비율은 46.0%로 위험수위를 넘어선 단계이며 그 결과 대외신용도는 세계 119개국 중 117위로 기록되고 있음.
- '84년 합영법 발표이후 설립된 북한의 합영 및 합작기업 수는 100여개(김달현이 언급)이며, 대부분이 조총련 상공인들에 의해 투자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일본대장성 발표에 의하면 '92년 6월까지 계약누계건수는 110건, 조업중인 것은 60건임.

외 채 현 황

구 분	단위	'90	'91	'92
외 채 총 액	억불	78.6	92.8	97
외 채 / GNP	%	34.0	40.5	46.0
구 사 회 주 의 권	억불	43.7	58.2	61
서 방 권	"	34.9	34.6	36

마. 평 가

- '90~'92년 기간중 북한경제의 두드러진 특징은 무역 규모의 대폭 감소와 지속적인 무역역조에 따른 외화 부족 등으로 에너지 부문의 공급부족과 원자재난이 가중돼 산업활동이 현저하게 위축된 것임.
- 이와 같은 현상은 대외적으로는 그동안 긴밀한 경제 협력체제를 유지해 왔던 소·동구등의 사회주의체제 붕괴로 인한 협력기반 상실과 대내적으로는 국제시장의 제약과 자본·기술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노선」을 무리하게 추구한데 기인한 결과임.
- 이에 따라 북한경제는 중앙재정의 고갈과 외채의 과중한 압력으로 신규투자의 제약을 받는 등 경제침체 상태에 빠져들게 되었으며, 그 결과 '90년 이래 3년연속 마이너스 성장('90~'92년 기간중 평균성장률 -5.5%)을 기록하게 되었으며 제3차 7개년계획도 실패로 끝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음.
- '90~'92년 기간중 성장률은 제3차 7개년계획의 연

평균 성장률 목표인 7.9%에 훨씬 밑도는 저조한 실적임.

- 폐쇄경제체제의 한계 속에서 경제적 위기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북한은 당면한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대외경제개방정책의 확대와 적극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경제체제의 개혁과 함께 투자 여건조성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참고>

1992년 남북한의 주요 경제지표 비교

	단 위	북한(A)	한국(B)	배율(B/A)
1. 인 구	천명	22,336	43,663	2.0
2. 경 상 GNP	억\$	221 (229)	2,945 (2,817)	14.0 (12.3)
3. 1 인 당 GNP	\$	943 (1,038)	6,749 (6,518)	7.2 (6.3)
4. 경 제 성 장 륜	%	△7.6 (△5.2)	4.7 (8.4)	-
5. 대 외 경 제 무 역 총 액	억\$	26.6	1,584.1	59.6
(수 출)	"	10.2	766.3	75.1
(수 입)	"	16.4	817.8	49.9
(무역총액/경상GNP)	%	12.6	53.8	-
대 미 환 율	원/\$	2.13	780.84	-
외 채	억\$	97.2	428.2	4.4
(외채/경상GNP)	%	46.0	14.5	-
6. 예 산 규 모	억\$	184.5*	429.0**	2.3
군 사 비	억\$	55.4*	111.9	2.0
7. 에 너 지 산 업				
석 탄	만ton	2,920	1,197	0.4
발 전 용 량	만Kw	714	2,412	3.4
발 전 량	억Kwh	247.0	1,310	5.3
원 유 도 입 량	만ton	152	6,930	45.6

	단 위	북한(A)	한국(B)	배율(B/A)
8. 농수산물생산량				
곡 물	만ton	426.8	620.6	1.5
쌀	"	153.1	533.1	3.5
수 산 물	"	114	329	2.9
9. 광 산 물 생 산 량				
철 광 석	만ton	574.6	22.2	0.04
비 철 금 속	"	17.8	64.1	3.6
10. 중화학공업생산량				
자 동 차	만대	1.04	172.5	165.9
조 선	만G/T	5.5	456.7	83.0
강 철	만ton	179.3	2,805	15.6
시 멘 트	"	474.7	4,265	9.0
비 료	"	138.5	399.0	2.9
11. 경 공 업 생 산 량				
직 물	억m	1.7	73	42.9
섬 유	만ton	4.2	158	37.6
12. 사 회 간 접 자 본				
철 도 총 연 장	km	5,096	6,496	1.3
도 로 총 연 장	km	23,219	58,905	2.5
항 만 능 력	만ton	3,501	25,766	7.4
선 박 보 유	만ton	85	691	8.1

주 : () 내는 '91년 계수임

* 북한 원화로 발표된 예산금액을 북한당국이 정한 상업환율(2.13/\$)로 환산한 것임.

** 한국의 예산 규모는 중앙정부 일반회계 기준임.

2. 교 통

가. 철 도

- 북한은 일제시대에 건설된 철도망을 기초로 수송체계를 철도위주로 개발·유지하여 왔음(수송분담률:약 86%).
- 주요 철도노선망으로는 서해안지대를 잇는 경의선(개성-사리원-평양-신의주), 동해안을 따라 부설된 원라선(원산-홍남-청진-나진), 동서를 횡단하는 평원선(평양-원산)이 있음.
- 국제 철도노선으로는 6개의 대중국 노선과 1개의 대러시아 노선이 연결되어 있으나, 현재 신의주-단동(중국), 남양-도문(중국), 두만강-하산(러시아)의 3개 노선만 운행하고 있음.
- 북한의 교통체계는 교통수단이 다양화되지 못하고 철도에만 극도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철도고유의 특성인 장거리화, 대량화, 중량화 등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가 없는 상태임.

나. 도 로

- 북한의 도로는 철도의 보조교통수단으로 활용되며 수송분담률이 약 12% 정도에 머물러 있는 실정임.
- 북한의 주요 간선도로망은 크게 개성-평양-신의주

간의 서부간선도로와 고성-원산-청진-나진간의 동부해안 간선도로, 평양-원산간의 동서횡단도로, 신의주-무산간의 북부동서횡단 도로로 나눌 수 있음.

- 개성-평양-신의주간의 도로는 약 400km에 달하며 북한의 서부중심지역을 잇는 도로로서 중국과 연결되어 국경도로 역할도 수행하고 있음.
- 개성-평양간은 '91년말 기존도로를 확장하여 고속도로를 완공하였음.
- 고성-원산-청진-나진간의 약 900km에 달하는 동부해안 간선도로는 러시아의 연해주와 중국의 길림성과 연결되는 경제·군사적 특성이 강한 도로로서 이 가운데 고성-원산구간은 금강산 관광개발의 목적으로 '89년 고속도로가 완공되었음.
- 신의주-무산구간은 북부국경선을 따라 북부산악지역을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함.
- 남포-평양-원산간은 동서간을 횡단하는 북한의 가장 중심적인 도로교통축 역할을 담당하고 전 구간이 고속도로화되었음.

다. 해 운

- 북한은 3,000km에 달하는 해안선이 휴전선에 의하여 동서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 동서해안간의 연안해운에 의한 유기적인 수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극적인 해운정책을 유지해 왔음.
- 또한 북한 경제의 대외 해상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극히 낮기 때문에 해운의 수송분담률이 약 2%에 지나

지 않을 정도로 해운부문의 역할이 다른 수송수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임(주요 무역상대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육로수송이 가능).

- 북한의 항만시설은 동해안에 청진항을 포함하여 무역항 5개, 일반항 1개, 어항이 10개 있으며, 서해안에는 주요항만인 남포항을 포함하여 무역항 3개, 어항이 4개로 총 23개의 항만이 있음.
 - 청진항은 북한 최대의 항구로서 서항과 동항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철도와 도로에 의하여 중국과 러시아에 연결되어 있음(주로 대중국 중계무역 화물을 수송).
 - 나진항은 정유전문항인 선봉항과 함께 두만강지역 개발사업의 중심 항만으로 개발될 전망이며 배후도로, 철도 수송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개선할 계획하에 있음(주로 러시아의 중계무역 화물을 수송).
 - 남포항은 배후수송시설이 아주 양호한 북한 최대공업지구인 평양공업지구의 해상관문으로 평양과 고속도로에 의하여 연결되며, 특히 '86년 서해갑문 시설을 완공하여 높은 간만의 차를 극복하고 5만톤급 선박의 입출항이 가능함.
 - 해주항은 휴전선에 가까이 위치하고 있어 군항으로 운영되다가 '73년 이후 연간 100만톤의 시멘트 무역 전용항으로 개항하여 남포항의 물동량을 분담하고 있음.

라. 항 공

- 북한은 폐쇄적인 경제체제와 일반인의 국내외 여행통제로 항공수요가 낮기 때문에 항공교통의 개발이 극히 빈약한 실정임.
- 국내 항공노선으로는 평양-함흥-청진, 평양-원산, 평양-혜산-삼지연, 평양-신의주 등이 있으나 평양-함흥-청진간을 1일 1회 왕복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노선들은 부정기적으로 운항하고 있음.
- 북한은 '80년대까지 총 41개국과 국제항공협정을 조인하였으나 현재 정기 노선으로는 4개국 5개 도시에 취항하고 있으며 그외의 국가와는 부정기적인 소수의 노선이 있음.
- 대표적인 공항으로는 평양의 순안국제공항을 비롯하여 함흥의 선덕, 청진, 신의주, 원산, 삼지연 등이 있음.

3. 우편과 전기통신

가. 우 편

- 북한의 국내우편은 평양의 경우 체신부 산하의 평양 중앙우체국에서 우편물 수발업무에 대한 계획, 송금, 예금업무, 각종 출판물의 지방배포 등에 관해 집행감독을 하고 있고 각 도에는 체신부 산하의 우체국, 군에는 체신소가 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 도급 이상에서는 우편업무, 전신·전화업무 및 방송업무를 분야별로 각 기관에서 담당하고, 군단위 이하에서는 우편업무와 전신·전화업무 및 방송사업을 체신소에서 함께 담당하고 있음.
- 수송수단의 낙후로 인한 우정사업의 구조적 취약점과 각 시도의 정치보위부 문서검열과에 의한 모든 우편에 대한 검열로 인해 배달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림.
- 북한의 우표발행 현황은 '46년 '붉은 무궁화'로부터 시작하여 최근의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기념우표'에 이르기까지 3,000여종의 우표가 발행되었음.
- 북한의 국제우편현황은
 - － '74년에 만국우편연합(UPU)에 가입하여 세계각국과 우편물을 교환할 수 있게 되었으나 실제로 취급 우편물은 해외공관들의 업무연락 이외에는 이용이 거의 없는 실정이며,
 - － 북한과 체신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은 공산권 13개국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이라크, 말리,

알제리아, 기니 등 7개국을 포함 총 20개국임.

나. 전기통신

- 북한의 전기통신시설현황은 '88년말 현재 시내전화의 경우 약 74만7천회선, 시외전화는 약 2,020회선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
 - 전기통신은 주로 행정목적을 위하여 공용전화의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일반주민에 대한 전화보급은 매우 미미한 실정임.
 - 전화망의 자동화율은 아직도 매우 낮은 것으로 추정되나, 무선통신분야의 경우 '70년대 초반부터 계속 마이크로웨이브 통신망의 확대에 주력을 기울인 것을 보면 이 분야는 어느 정도의 기술적 성과를 거두고 있을 것으로 추측됨.
- 국제전화는 중국, 소련, 일본 등을 통해 연결되는데 '84년에 약 33회선 정도에 이르고 있었으며 '84년부터 위성통신도 이용되고 있어 현재 약 50회선이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공산권지역과의 통신은 평양-북경, 평양-모스크바를 연결하는 유선망과 신의주-북경, 청진-블라디보스톡을 연결하는 유선망을 이용하여 왔으며,
 - 서방권과는 평양-싱가폴, 평양-홍콩, 평양-일본 사이의 무선망을 이용하고 있음.
- 위성통신과 관련해서는 '84년 인터스푸트니크(공산권 통신위성기구)에 가입하였으며 '86년 프랑스의 기술을 도입하여 인도양의 인텔세트에 대한 위성통신지구

국을 평양에 건설함으로써 서방 여러나라와의 위성통신도 가능하게 되었음.

- '90년 11월에는 일본의 국제전신전화(KDD)와 북한 사이에 직통위성회선 및 국제전용회선 서비스의 개시에 합의하여 전화 3회선, 텔렉스 10회선, 전보 1회선 등의 직통회선을 설정하고 국제 TV전송서비스, 국제음성방송 등을 제공하기 시작하였음.

4. 관 광

가. 관광자원

- 개발잠재력이 높은 산악경승지, 해안경승지, 온천 등이 많음.
- 북한의 관광관련 위락시설은 소규모로 일부지역에 국한적으로 개발되어 있으며, 이용대상도 외국인을 중심으로 극히 제한되어 있음.
- 외국여행자가 투숙할 수 있는 숙박시설의 규모는 현재 건설중인 유경호텔 (3,000실)을 제외하면 4,900실 정도임.
- 북한은 지형적 특성과 지역단위 생산체제 및 지역간 왕래나 여행의 제한으로 전국적인 교통망이나 운송수단이 미비한 실정임.

나. 관광개발계획 및 개발실태

- 북한의 관광개발은 주로 자연자원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주요명소와 대도시를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음.
- 외국인의 방문이 빈번한 도시는 낙후성 은폐 및 대외 선전 목적으로 환경 정비에 중점을 두고 있음.
- '70년대 초부터 관광자원 개발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백두산지역은 온천치료와 스키관광, 금

강산 및 묘향산지역은 등산관광, 남포 및 원산은 낚시 관광을 개발하는 등 근래 각 지역의 특성(입지조건)에 맞는 관광개발에 노력하고 있음.

- 제3차 7개년 계획기간중('87-'93년)의 국가 주요사업 계획 목표에 고속도로 건설, 근로자 문화휴식장 건설 등과 함께 백두산, 묘향산, 명사십리 해수욕장, 몽금포 해수욕장, 금강산 종합개발 등의 관광지개발계획을 포함시키고 있음.
- '87년 7월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해 대외개방 9개 관광지역(백두산, 금강산, 묘향산, 청진, 남포, 원산, 함흥, 개성, 판문점)을 선포하였음.

다. 내외국인의 관광현황

- 북한은 국제사회와 격리되어 있고, 사회 모든 분야에서 간섭과 통제를 하고 있어 내외국인의 관광에 상당한 제약이 따름.
- 북한 주민의 여행은 거주지 시·군내에서는 자유로운 편이나 거주지 시·군의 경계를 벗어날 경우에는 사전에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북한의 관광코스는 김일성의 생가인 만경대로부터 시작하여 주체사상탑 등 정치선전물 답사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음.
- 관광활동은 지정관광지, 지정관광코스, 지정시간에만 가능하며 안내원의 통제에 따라야 함.

- 북한은 '80년대 이후 외화벌이 사업으로서 외래관광객 유치에 위해 노력하였는 바, '88년 기준 외래관광객수는 연 10만명으로 추정됨(관광객 : 3만명, 친지방문 및 성묘객 : 7만명)
- 일본은 북한최대 관광시장으로서 조총련계 교포를 포함하여 연간 11,000명의 관광객을 송출하고 있음.

라. 관광관련 대외합작현황

- 합영법('84년) 제정 이후 최근('91년 6월)까지 관광관련 외국인 투자실적은 총 17건으로 대부분 일본 조총련을 통한 중소규모 투자에 그치고 있음.
- 프랑스와의 양각도호텔 건설을 제외하면 당초 기대하였던 서방선진국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으며, 공산국가나 비동맹국과의 합작이 대부분임.
- 관광부문의 대외협력이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제도적 장치의 미흡과 북한 관광 상품의 시장성 및 수익성의 결여 등 투자매력이 적기 때문임.

마. 관광관련 기구 및 조직

- 합영법 제정 후 관광분야에 대한 문호를 개방하면서 '86. 5월 정무원 산하 국제여행국을 국가관광지도총국으로 확대 개편하고 '87년 9월에 국제관광기구(WTO)에 가입하는 등 기구와 조직정비에 노력하고 있음.

- 관광총국은 정부차원의 관광지도기관으로서 관광정책 수립 및 집행, 조직, 지도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5. 과학기술

가. 과학기술정책

- '60년대 이후 과학기술 분야의 정책기조인 「자력갱생의 원칙」, 「대중의 원칙」, 「사회주의 경쟁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중공업 우선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며, 자체의 자원과 기술 및 인력범위내에서 공업을 발전시킨다는 소위 “주체과학”을 고수하여 왔음.
- 그러나 현대 과학기술의 국제화 시대에 직면하면서, 과학기술의 낙후성을 인식하고 '75년부터 과학기술의 대외도입을 시도하였으며, 사회주의 공업화의 실현을 위해 3대 기술혁명, 즉 「중노동과 경노동의 격차 해소」, 「공업노동과 농업노동의 격차해소」, 「여성의 힘든 가정노동으로부터 해방」을 통한 기술혁신 운동을 전개하여 왔음.
- 특히 3차 7개년 계획기간('87~'93)에는 국민소득의 3~4%를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투자하여 경공업분야의 새로운 기술개발과 첨단과학연구개발에 주력하고 있음.
- '88년 3월 당중앙위 제6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단기간에 과학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시킨다는 목표하에 「과학기술개발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반도체, 광섬유통신 등의 전자공학과 유전공학, 생물학 그리고 태양열, 풍력 등의 대체 에너지 개발 및 열공업 분야를 중점연구·개발코자 하고 있음.

-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장기적 안목에서 2000년까지 과학기술을 선진국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아래 1단계('87-'93)와 2단계('94-2000)로 구분하여 정무원 각부·위원회별로 「2000년까지의 과학기술개발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음.

나. 과학기술교육

- 북한의 과학기술교육은 산업에서 제기되는 기술적 문제를 자체해결하는 능력의 배양에 목표를 두고 진행하여 왔으며, 교육체제는 강력한 산·학협력체제를 이루며, 이론적인 것보다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현장의 문제 해결에 기본적인 중점을 두어 왔음.
- 이러한 북한의 과학기술교육은 기초이론의 부족에서 오는 연구의 한계성과 많은 교육기관의 수에 비해 시설의 빈약 및 교육수준의 저조, 유능한 과학기술자의 부족 등으로 인해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다. 과학기술연구

- 북한의 과학기술연구는 생산공정의 개선과 기초·응용 과학과 첨단과학분야의 육성에 그 목표를 두고 연구와 생산이 직결되어 있으며, 연구기관은 당의 주요기관으로서 과학자의 전공이나 관심과는 무관하게 당과 정부의 통제하에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 이러한 과학기술연구의 특징은
 - 소련 및 동구의 영향으로 남한에서 취급하지 않는 분야를 다수 연구하고 있고,
 - 응용 및 개발 연구를 장려하고 있는 정책과는 달리 실제로는 기초이론 연구에 치중하고 있어 과학기술부분의 투자비가 미흡함을 시사하고 있으며,
 - 부존자원을 이용하는 자체기술 개발에 치중하는 경향을 띠고 있음.
- 따라서 북한의 과학기술연구는 연구정책이나 여건 및 투자, 과학기술 정보 교류면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으므로, 과감한 투자와 활발한 기술정보 교류가 없는 한 낙후된 수준의 탈피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라. 과학기술수준

- 북한의 과학기술 수준은 남한에 비해 10년정도 뒤져 있으며, 세계 선진국의 수준에 비해서는 상당히 낙후된 것으로 평가되는데 그 원인으로서는 과학기술연구 투자의 부족, 과학자·기술자들의 연구의욕 상실, 과학기술자의 장기간 생산현장 파견과 국가에서 연구과제를 부여함에 따른 자유로운 연구분위기의 저해, 주체 과학 고수에 의한 선진과학기술 정보 및 자료의 부족, 현장문제와 결부된 연구개발에 따른 기초이론 연구기반의 취약 등을 들 수 있음.
- 북한은 과학기술 수준과 능력면에서
 - 각종 산업기계 및 공작기계 제조분야는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 화학공업 및 경공업의 경시로 동 분야 제품의 품질 수준은 아주 낮은 실정으로 노동집약적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그러나 「국방에서의 자위」라는 김일성의 주체사상에 입각, 재래식 군비에 있어서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군사대국으로 구식 저급무기로부터 고성능 정밀 무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무기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마. 과학기술 대외협력

- 북한의 과학기술 교류정책은 '49년 소련과 체결한 쌍방간의 10개년 경제 문화협정을 계기로 과학기술자 파견과 경제교류 등을 확대하여 왔으며, 6·25이후는 중국과 동구공산제국으로 기술교류의 범위를 넓히는 한편 '70년대부터 대서방 교류를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자력갱생의 한계점을 돌파하기 위해 서방제국으로부터 새로운 과학기술의 도입과 모방에 안간힘을 쓰고 있음.
- 과학기술교류 원칙으로 첫째, 제3국 보유자원에 대한 국제개발, 둘째, 상호경험 및 기술교류, 셋째, 석유자원의 유리한 이용, 넷째, 국제혁명역량 강화와 연대성 강화의 확대 등을 내세우고 있음.

6. 환 경

가. 환경정책

- 북한은 그동안 공산정권 체제의 유지와 경제발전에 총력을 기울이느라고 환경문제에 거의 관심을 갖지 못했음.
- 그러나 제2차 7개년 계획이 수립되면서 경제규모가 커지고 그로 인한 산업공해가 심각해지자 '86년 4월7일 최고인민회의 제7기 제5차회의에서 환경보호법이 비로소 채택되었음.
 - － 북한의 환경보호법은 기본법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우리나라의 환경정책기본법과 같은 맥락임.
- 남북간의 환경관리제도 중 가장 큰 차이점은 남한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사전예방적 또는 환경관리적 사항이 많으며,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국토관리라는 차원인데 반해 북한의 경우는 자연환경보전 부분에 일부 사전적 조치를 취할 뿐 그 이외에는 별다른 사전예방적 제도나 대책이 시행되지 않고 있음.
- 산업활동에 따른 규제정책은 남북한 공히 배출기준을 설정하여 놓고 이를 직접 통제하는 직접규제방식(Direct Control System)을 채택하고 있으며 환경보호법에서 배출기준 및 소음·진동 규제기준 등을 설정토록 하고 있고 공장의 가스·먼지제거 장치 및 공기여과 장치의 구비 및 물오염 방지를 위한 침전지나 정화시

설을 구비토록 하고 있으며 농약 살포 등에 관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음.

나. 환경오염 실태

(1) 산업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

- 에너지 및 화학공업 원료를 자급자족하고 가능한 한 외화벌이의 수단으로서 지하자원 개발을 비롯하여 석탄공업, 임업, 어업 등에 총력을 기울여 온 결과 수백개의 광산과 탄광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양이 대단함.
- 동·서해안에 위치한 제철·제련·제강 기지의 설비와 기술장비가 대부분 '60년대의 설비들로서 재래식이거나 낙후된 기술 공정에 따라 가동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유해물질들이 거의 정화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처리된 채로 배출되고 있음.
 - 함흥·청진·김책·문천·정주·남포·해주지구 등이 대표적 오염지역이며 청진과 함흥일대는 맑은 날의 낮에도 1km앞을 제대로 볼 수 없을 정도임.

(2) 자연훼손

- 전쟁재발에 대비, 땅굴 등의 군사시설물, 국방공업(군수산업)의 갱도화, 주요기관의 대피호 건설 등으로 자연 훼손이 심대하며, 김일성 부자의 우상숭배용 선전물 제작으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음.

- 난방용 목재의 공급, 다락발 건설과 같은 개간사업으로 인해 삼림이 황폐화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산사태와 토양의 유실 및 산성화, 하천의 범람을 가져오고 있음.

(3) 수질오염

- 생활하수와 산업폐수 등이 정화되지 않고 배출되어 오염의 정도가 심각하며 최근에는 식수까지 정제하여 사용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음.
 - 평양 등 대도시에는 정화시설이 있으나 처리능력이 절대 부족한 실정임.

(4) 기타의 환경문제

- 농촌의 폐비닐 방치문제, 산업지역에서의 소음과 진동문제도 제기되고 있으나 자동차는 북한전역에 약 50만대 정도가 있어서 이로 인한 환경문제는 적은 편임.

V. 두만강지역 개발계획을 통한 남북경제협력

1. 두만강지역 개발계획(TRADP)의 추진경과 및 현황

가. 추진 배경

- '90년 7월 중국 장춘에서 개최된 「동북아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이라는 주제하의 국제학술 세미나에서 중국측에 의해 TRADP 문제가 처음으로 제기됨.
 - * 중국측은 동북 3성의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동해로의 출해권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를 위해 북한, 소련과 개별적인 협상을 벌였으나 협상이 여의치 못하자 쌍무적 협상과는 별개로 TRADP문제를 국제여론화하고 국제기구의 지원을 받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사업”으로 추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
- '91년 7월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UNDP의 「동북아 소지역 계획회의」에서 이 지역의 UNDP회원국인 남북한, 중국, 몽골 등 4개국은 UNDP가 TRADP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할 것을 UNDP측에 요청, UNDP는 TRADP를 동북아 지역 경제개발의 최우선 사업으로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TRADP개발을 전제로 한 개발타당성 조사를 UNDP 책임하에 추진할 것을 결정함.
 - * 이 회의에서 북한이 TRADP와 관련한 자체입장(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개발 계획)을 처음으로 발표하였음.

나. 목표와 추진현황

(1) 목표

- TRADP의 장기적 목표는
 - 북한, 중국, 러시아가 접하고 있는 이 지역을 세계적인 수준의 교통중심지로 발전시키는 것과,
 - 이 지역을 자원가공 및 제조업의 중심지로 개발하는 것임.
- TRADP의 단기목표는 관련국간의 교역 및 투자 증진을 위한 협력기회를 창출하는 것임.

(2) 추진현황

- 현재 TRADP에 관한 국제적 협의는
 - 제1차 장춘회의('90. 7)이후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학술 세미나 형식의 협의방식과,
 - 울란바토르 회의('91. 7)에서 구체화된 대로 UNDP를 매개로 하는 정부차원의 협의방식의 두개 채널로 이루어지고 있음.
- '90년 7월 장춘회의에서부터 지금까지의 TRADP 추진경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TRADP 추진일정

일 자	회의명칭	개최장소	주요 결정사항 및 계획
'90. 7	*제1차 동북아 경제협력 세미나	중국 장춘	중국, 두만강지역개발 구상 최 초 발표
'91. 3	UNDP	UNDP 본부	동북아사업 추진 제안 : 두만강 지역개발, 온대지역 식량증산, 에너지개발, 대기오염 대책
'91. 7	UNDP회의	몽골 울란바토르	두만강 유역개발 최우선 과제로 추진 결정, 현지 탐사를 통한 타당성 조사 결정
'91. 8	*제2차 동북아 경제협력 세미나	중국 장춘	각국 별도 계획안 제시, UNDP 조사단 두만강 유역 현지조사
'91.10	UNDP 동북아 조정관 회의	북한 평양	두만강지역 개발위원회(PMC) 구성 결정
'92. 2	제1차 PMC 회의	한국 서울	「재원문제협의반」 발족 결정, 각국의 PMC 지원반 구성 결정
'92. 3~7	PMC지원반		개발대상지역, 재원조달방식, 개 발방식 등 검토
'92. 4	UNDP 실무작업 반 회의	중국 북경	북한 등 참가국의 명확한 입장 제시 요구
'92. 4~5	*동북아 경제 포럼	북한 평양	북한의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 지대개발에 관한 구체적 내용 제시, 동 지역시찰
'92. 8	UNDP 주최 국별 전문가 워크샵	러시아 블라 디보스톡	국별 전문가들 범제도반·무역반 ·하부구조반에 참가, 의견교환
'92. 8	*동북아 경제 포럼	러시아 블라 디보스톡	개발대안 논의

일 자	회의명칭	개최장소	주요 결정사항 및 계획
'92.10	제2차 PMC 회의	중국 북경	개발관련 4개원칙 및 기구구성 이원화에 합의, 향후 6개월간 분야별 전문가 회의개최 합의
'93. 1	통신 전문가 회의	한국 서울	UNDP의 마스터플랜에 대한 각국의 입장제시
'93. 2	법률·제도 전문가 회의	미국 뉴욕	
'93. 3	산업·자원·환경 전문가 회의	핀란드 헬싱키	TRADP 개발관련 22개의 환경 기본원칙 합의
'93. 4	인프라 전문가 회의	중국 북경	
'93. 5	제3차 PMC 회의	북한 평양	TRADP를 위한 정부간 조정기구의 기능, 두만강지역 개발회사(TRAD CO.)설립, 접경국 토지의 임차 등 법·제도분야토의
'93. 9	통신전문가 회의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기술분야 마스터플랜 및 단기시행계획 검토
'93. 9	법률·제도 전문가 회의	중국 북경	국제협정문 및 두만강지역 개발회사 정관초안 검토
'93.11	산업·자원 전문가 회의	한국 서울	TRADP 대상지역내의 산업발전계획, 교통·전력·통신 등 인프라 실태 및 개발계획 검토
'93. 말 예정	각국 정부의 고위급(차관급) 회의	러시아	실무작업반 최종보고서 검토 및 사업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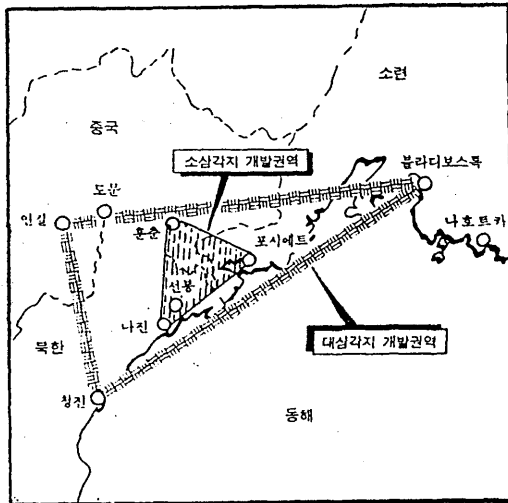
* : 민간차원의 국제학술회의

다. 지리적 위치 및 개발범위

(1) TRADP의 지리적 위치

- 두만강지역은 북한, 중국, 러시아 3국의 변경지대에 있는 오지로서 오랜 기간 외부세계에 대해 폐쇄적인 낙후지역으로 알려져 왔으나 '80년대 중반 이후 동북아지역의 국제질서와 환경이 개선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음.

두만강 지역 위치도



※ 대·소삼각의 정점을 어디로 할 것인가는 전문가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바, 대삼각의 경우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 대신 나호트카를 포함시키거나 소삼각의 경우 중국의 훈춘 대신 경신 또는 방천을, 북한의 나진 대신 선봉을 포함시키기도 함.

(2) TRADP의 개발범위

- TRADP의 개발범위와 관련하여 '92년 2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1차 PMC 회의에서 3개의 대안이 제시되었음.
 - (가) 두만강 경제구역(Tumen River Economic Zone : TREZ)
중국의 훈춘, 북한의 나진, 러시아의 포시에트를 3개 정점으로 연결하는 약 800km의 지역으로서, 「소삼각」이라고 불리고 있음.
 - (나) 두만강 경제개발구역(Tumen Economic Development Area : TEDA)
중국의 연길, 북한의 청진,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을 3개 정점으로 연결하는 약 1만km의 지역으로서, 「대삼각」이라고 불리고 있음.
 - (다) 동북아시아 개발지구(North East Asian Regional Development Area : NEARDA)
두만강지역의 개발에 따라 천연자원의 공급, 산업의 유치, 하부구조의 개선 등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동북아 내륙지역 전역을 말함.

라. 개발대안 및 관련국 입장

(1) 개발대안

- (가) UNDP 조사단의 3개 대안
 - UNDP 조사단 보고서는 3개의 TRADP 개발 대안을 제시하고 있음.

(대안 1)

두만강 인접 3국이 독자적으로 경제특구를 개발하되 정책과 행정의 조정을 추진하는 방식

* 대안 1은 각국이 경제특구를 자체 개발한 이후에 이를 상호 연결하는 방식으로 TEDA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음.

(대안 2)

두만강 인접 3국이 경제특구를 상호 인접지역에 개발하고 각국이 행정적으로 협조하는 방식

* 대안 2는 접경 3국이 상호 두만강에 인접한 지역, 즉 TREZ에 경제특구를 개발하고 행정적으로 협조하는 방법임.

(대안 3)

두만강 인접 3국이 공동으로 특정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개발하고 공동 운영기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식

* 대안 3은 두만강 지역의 효과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3국이 개발, 관리 및 운영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방안임.

(나) 니메츠의 제안 : 개발대안의 구체화

- UNDP의 법률자문관인 니메츠는 UNDP조사단의 3개 개발대안을 구체화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 하였음.

(대안 A)

조약에 의하여 「두만강지역 협력·개발위원회」(Tumen River Area Commission for Cooperation and Development)를 설립하는 방식임.

- * 「두만강지역 협력·개발위원회」의 목적은 당사국간 우호 관계의 증진, TEDA의 지속적 개발촉진 및 이를 위한 국가간 협력, TEDA내에서의 무역, 통상, 통신 및 수송에 대한 장애물제거, TEDA내 모든 주민들의 복지증진, TEDA의 환경개선을 위한 자문 및 협력 등임.

(대안 B)

대안 A에서 제안하고 있는 「두만강지역 협력·개발위원회」의 설치와 함께 TEDA내의 일정한 시설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3개 접경국들에 의하여 공유되는 관리회사, 즉 경영수탁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써 UNDP는 이 관리회사의 명칭을 「두만강지역 관리회사」(Tumen River Area Management Company : TRAMCO)로 제안하고 있음.

- * TRAMCO의 목적은 TREZ에 중점을 두면서 TEDA내의 일정한 시설을 발전시키고 관리하는 데 있음.

(2) 관련국 입장

(가) 중국

- 두만강을 이용한 동해로의 진출과 이에 따른 동북3성의 경제활성화를 기대하면서 TRADP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접경지역의 한 부분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선호하면서 TREZ와 TEDA를 모두 상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TREZ를 우선 개발하는데 보다 적극적임.
- 개발대안 중에서 대안 3을 지지하여 왔으며, 개발관련 기구의 구성문제에 관해서는 대안 B를 선호하고 있음.

(나) 북한

- 나진·선봉지역에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설치하겠다는 구상을 '91년 12월 정무원 결정 제74호로 발표하는 등 TRADP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이는 반드시 UNDP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TRADP에 적극 찬성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UNDP에 의한 TRADP사업의 추진이 어렵게 될 경우 독자적으로라도 나진·선봉지역을 개발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됨.
- TRADP 대상지역과 관련하여 본래 청진까지 포함하는 TEDA를 선호하여 대안 1을 지지하였으나, 현실적으로 TREZ를 중심으로 개발에 착수할 수 밖에 없음을 인식하고 대안 2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 개발기구의 구성과 관련하여서는 대안 A를 선호하고 있고, '92년 7월 UNDP 자문단의 평양 방문시 대안 A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음.

(다) 러시아

- 중국의 두만강 개발안과 북한의 독자개발구상에 대해서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두만강지역 개발의 대안으로서 블라디보스톡 및 나호트카의 자유무역지대화를 제시하고 있음.
- 개발대상지역과 관련하여 대삼각지역인 TEDA의 개발을 선호하며, TRADP가 논의되기 시작한 초기에는 대안 1을 암묵적으로 지지했다고 볼 수 있음.
 - TEDA의 개발이 여의치 않을 경우 블라디보스톡지역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자유무역지대를 독자적으로 집중 개발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음.

(라) 몽골

- 위치상 NEARDA에 속해 있기 때문에 두만강지역개발과 배후지와의 연계를 감안하여 대삼각지역의 배후지까지를 포함하는 TRADP의 광역지대화를 희망하고 있음.
- 효과적인 개발을 위해 대안 B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나, 북한이 반대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대안 A도 실시가능할 것이라는 의사를 표시하여 개발대안에 대해 중립적 입장을 보이고 있음.

(마) 일본

- 두만강지역 개발문제를 자국의 비교적 저개발지역인 니가타지역 개발과 연관시키는 한편, 거시적으로는 유럽공동체(EC),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등 세계적인 지역경제 통합추세에 대응하여 「동북아경제권」 또는 「환일본해경제권」 창설구상과 연계시킨다는 기본입장을 가지고 있음.
- 그러나 일본은 TRADP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일본과 러시아간 북방영토문제, 일·북한수교 및 남북한 관계개선 등이 먼저 해결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으며, 두만강지역개발을 단기적 문제가 아닌 장기적 안목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음.

마. TRADP 실현을 위한 과제

(1) 자본조달문제

- 재원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TRADP가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자본조달문제는 TRADP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의 하나임.
- 이와 관련하여 한국과 중국 등은 제2차 장춘회의에서 관련국들이 공동출자하여 「동북아개발은행(가칭)」을 설립하자는 견해를 제시한 바 있으나, 북한, 중국 및 러시아의 경제현실을 고려할 때 현단계에서 새로운 은행의 설치는 어려울 것임.

- 현재로서 TRADP는 접경 당사국이 개발대상지역에 대해 가용한 내·외자를 최대한 동원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려운 프로젝트이므로 관련국들이 비경제적 요인을 최대한 배제하면서 이 프로젝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자금조달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함.

(2) 법적·제도적 실천과제

(가) 국제협정 체결문제

- TRADP가 현실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두만강 접경지역을 개발하는 기구의 구성문제가 해결되어야 함.
- 대안 A가 채택될 경우 국제협정에서는 정부간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되, 접경 3국간에만 제기될 수 있는 사안 및 이해의 조정을 위한 조정위원회와 TRADP관련국이 모두 참여하는 전체회의로 이원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대안 B에 따라 개발기구를 구성할 경우 접경 3국간에 TRAMCO 라는 「국제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정체결이 필요함.

(나) 당사국간 정책조정 및 국내입법지원 문제

- TRADP 관련국들은 공동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협의하고 입장을 조정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입법의 통일을 위해 각국의 정책을 조정·협

의하는 것이 필요함.

- TRADP 관련국들은 필요한 경우 국내입법을 제정하여 두만강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TRAMCO」와 항상 유기적인 관계를 맺도록 해야할 것임.

(3) 예상 문제점

(가) 접경 3국 주민의 통치권 제한문제

- 현재 UNDP에서 논의되고 있는 안들은 북한의 주권수호에 대한 완강한 입장을 고려하여 토지이용권의 허용 수준을 크게 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 TRADP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TREZ가 국제도시로 발전할 경우 접경지역 주민들의 통치권 귀속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음.

(나) TRADP 당사국간 결제통화 선정문제

- TRADP 사업지역내에서 사용할 결제통화 선정문제에 대해서는 ① 각국 통화를 사용하는 방안, ② 외국통화를 사용하는 방안, ③ 유럽통화단위 (European Currency Unit : ECU)와 같이 특별통화 단위를 창출하는 방안을 상정할 수 있음.
- ①안의 경우 북한 및 러시아화폐의 국제적 공신력, 태환가능성, TRADP 당사국간 환율차이 등의 문제가 있음.

- ②안의 경우 두만강 접경 3국을 포함한 TRADP 당사국간에 제3국의 통화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필요함.
- ③안을 채택할 경우 화폐발행 주체와 통화관리 문제가 제기될 것임.

(다) 두만강의 국제하천화 문제

- 대안 1과 대안 2는 접경국들이 독자적으로 경제특구나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설치하는 방안으로 각국이 거의 전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두만강의 국제하천화 문제가 쟁점으로 제기되지 않을 것임.
- 그러나 대안 3이 채택될 경우 필연적으로 상품수출, 원료수입, 해외인력 수입, 하부구조시설 정비 및 확충을 위한 장비도입 과정에서 접경 3국 및 외국선박의 자유통항과 관련하여 두만강의 국제하천화 문제가 제기될 것임.

2.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실태와 전망

가. 개 황

(1) 추진과정

- 북한은 '91년 12월 28일, 정무원 결정 제74호를 채택하여 나진시와 선봉군의 일부지역 621km²를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지정함과 아울러 동 지역내의 나진항, 선봉항 및 인접한 청진항을 자유무역항으로 지정하였음.
- 이러한 북한의 결정은 유엔개발계획(UNDP)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북한, 중국, 러시아의 3국 국경지대에 위치한 두만강 개발계획의 일환으로서 동 지역내의 다자간 국제협력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동북부지역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취해진 것임.

북한 정무원결정 제74호(요지)

- 나진시의 14개 동, 리와 선봉군의 10개리를 포함하는 621km²의 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한다.
-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는 합영, 합작, 외국인 단독기업을 허용한다.
- 투자하는 나라에 대한 제한이 없다.
- 국가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투자한 자본과 재산, 기업운영을 통하여 얻은 소득과 기타 소득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 개발지대안의 나진항, 선봉항과 함께 인접지역에 있는 청진항을 자유무역항으로 한다.
- 기업소득세의 감면을 비롯한 여러가지 특혜조치들을 취한다.

- 북한은 나진-선봉개발계획을 통해서 동북부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제교류와 무역확대의 주요 거점으로 하고 동북아경제권 형성에 대해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동 개발계획 실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및 청진자유무역항 지정 후, 정무원 대외경제위원회 산하에 나진-선봉지역개발 추진창구로서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설립되었음.

나진-선봉 개발계획 추진일정

일 자	행 사 명	개최장소	주 요 내 용
'91. 7. 6	UNDP 제1차 동북아 조정관회의	몽골 울란바토르	북한대표 「선봉경제무역지대 개발」 구상을 발표
7.22	니이가타市, 바다 기념 심포지움	니이가타市	김종관 해운부 항만국장 -선봉, 나진, 청진의 3항 개발 계획을 설명
10.18	UNDP 제2차 조정관 회의	평양	북한,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 조사보고서 제출, 선봉지역 개발안의 우선검토
11.1	오오사카 경제법과 대학주최 심포지움	오오사카	이행호(사회과학원 세계경제 남남협력연구소 실장) -선봉지역 개발계획 설명
11.1	환일본해경제권 연구회 대표단 방북		나진, 선봉지역시찰
12.14	북한 북부항만 시찰단(단장 : 일중동북 개발협회 부회장)		나진, 선봉지역시찰

일 자	행 사 명	개최장소	주 요 내 용
12. 18	나진, 선봉을 자유 경제무역지대로 지정(정무원 결정 제74호)		
'92. 4. 28	두만강 개발관련 「평양국제회의」	평양	참가대표단(일본, 미국, 중국, 러 시아, 남한, 몽골, 프랑스, 독일, 헝 가리) 나진·선봉지역시찰
10. 3	미국 아시아협회 대 표단(단장 : 스칼라 피노 미 캘리포니아 大교수)북한방문		나진·선봉방문
'93. 1. 31	자유경제무역지대 법 제정		외국의 자본과 기술유치를 목 적으로 제정된 자유경제무역 지대 관련 기본규정
11. 8 ~10	두만강지역 개발계 획 제2차 산업·자 원분야 워크숍	서울	나진-선봉지구 장·단기개발 계획 발표 및 투자유치 홍보

- 북한은 이 지역에 외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
환경정비의 일환으로 일련의 대외경제 관계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애 주력하고 있는데 '92년 4월에는
사회주의 헌법이 개정되어 외국기업과의 합영, 합
작사업을 장려하는 조항(제37조)이 새롭게 신설되
었음.
- '92년 10월 5일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에
의해 외국인투자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 등을 제

정하였고, 동년 10월 16일에는 정무원결정 제148호에 의해 합병법 시행세칙이 개정되었음.

- '93년 1월에는 외화관리법, 세금법 및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이 제정되었음.
- 또한 북한은 UNDP 및 외국전문가와 의견교환, 조정, 현지시찰 등을 적극 이행하면서 계획조정과 최종개발계획안을 마련중에 있으며 인프라 정비를 중심으로 하는 일부 초기계획은 착수단계에 와 있음.

(2) 북한의 나진-선봉지대 개발전략

(가) 기본목표

- 나진-선봉지대의 자연지리적 특성과 동북아 및 세계경제발전의 추세에 맞게 종합적으로 발전된 자유경제무역지대 창설

(나)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기능

- 국제화물중계기지로 개발
 - 비행장, 항만, 철도, 도로 등 교통망을 정비확장하고 각 교통수단간의 연대수송체계를 확립
 -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다른 국가들과 합리적인 국제교통망을 형성하여 국제화물을 적시에 안전하게 중계
 - 자유무역항의 기능을 높이고 이 지대를 통과하는 화물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 화물중계수송에 있어 편의를 최대한으로 보장

- 가공수출을 위주로 하는 제조업지대로 개발
 - 경공업을 위주로 하면서 중공업을 배합하는 방향에서 산업을 전개
 - 원자재, 부품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수출하는 가공수출 산업기지 구축
 - 첨단기술산업을 비롯하여 국제시장에서 수요가 높고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지대로 개발
- 국제적인 관광기지로 개발
 - 「나진·선봉」지대의 매력적인 관광자원과 인접해 있는 백두산, 칠보산 지역의 관광자원들을 적극 개발하여 현대적이며 문화적인 관광기지로 개발

나진-선봉지역의 자연 지리적 조건

구 분	내 용
위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동북부 두만강하류의 서쪽연안 북위 42도 5분 ~43도, 동경 130도 7분~130도 45분 - 조산만의 동북단인 우악으로부터 156km의 해안선을 따라 북한 동해와 연결 - 백두산을 시작으로 516km의 길이를 가진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 러시아와 접경
면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면적 : 621km², 현재 주민거주면적 2%(13km²), 산업토지면적 3%(19km²), 나머지 대부분은 농림·수면토지면적 - 이중 20도미만의 경사도를 가진 개발구역면적은 약 200km²

구 분	내 용
기상, 기후	- 연평균기온 +6.3°C, 가장 추운 1월 연평균 -8.8°C, 가장 더운 8월 평균기온 +20.9°C - 연강수량 770mm, 일조율 53%, 평균습도 70%
지진 및 토양	- 약 1,400년전에 지진발생기록, 현재는 없음. - 토양은 대부분 사토질 퇴적토양
주 민	- 지대안의 인구는 약 13만명, 대부분이 도시주민(10만 4천명), 농촌인구는 2만6천여명, 노동가능인구는 약 7만6천여명(우선적으로 나진시 인구를 30만명으로 늘리면서 향후 개발지대의 총인구를 100만명으로 만들 계획)

(다) 개발단계

북한은 이 지역개발을 동북아의 경제발전 전망과 투자능력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제1단계(1993~1995년) : 이미 건설되어 있는 철도, 도로, 항만 등 하부구조망을 확장·현대화하여 국제 화물중계 수송기지로서의 역할을 높이면서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단계

- 주변나라들과 도로, 철도의 기본 간선들을 연결하여 하나의 체계적인 중계수송망 형성
- 현존의 도로, 철도, 항만들을 확장하며 자유무역항인 나진항, 선봉항, 청진항의 화물처리능력을 연 2천만톤이상으로 확대
- 나진지구를 집중적으로 투자개발하여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거점으로 개발

- 제2단계(1996~2000년) : 자유경제무역지대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동북아시아의 교류거점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는 단계
 - 1단계 개발과정에서 마련된 하부구조망에 의거하여 국제중계 물동량을 대량적으로 취급
 - 항만들의 능력을 높여 2000년까지 연 5천만톤의 화물처리능력을 조성
 - 1단계에 마련된 하부구조망을 이용하여 가공수출산업기지로의 건설을 대대적으로 진행
 - 산업기지들을 지구별로 전문화하고 대규모의 투자를 받아들여 수출을 위주로 하는 경제지구를 형성
 - 국제적인 관광기지로 개발
- 제3단계(2001~2010년) : 21세기에 상응한 종합적이고도 현대적인 국제교류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하도록 신설·완비하는 단계
 - 항만들의 능력을 계속 높여 연 1억톤이상의 국제화물을 중계
 - 중계무역, 수출가공, 제조업, 금융, 관광 등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
 - 시설, 산업구조, 서비스 등을 고도로 현대화, 기능화하는 방향으로 발전

(3) 나진-선봉일대의 산업현황

나진-선봉과 그 인접지역은 광산자원의 매장이 비교적 풍부하고 나진-선봉 및 청진지역은 북한의 기간산업들이 배치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함흥, 원산지역과 함

계 가장 중요한 공업지대이나 경공업부문은 발달되지 못한 곳으로 알려져 있음.

(가) 지하자원

- 주변 무산군에는 북한의 3대 철광산 중의 하나인 무산광산을 비롯하여 아오지 탄광, 은성 등 광산 등이 있으며 그외 은, 니켈, 망간, 석회석, 점토, 고령토 등이 채굴되고 있음.

(나) 전력공급 및 용수

- 선봉에는 20만kw 능력을 갖고 있는 원유화력 발전소, 청진에는 15만kw 능력의 화력발전소, 또한 청진의 서두수발전소를 비롯하여 구소련의 지원하에 건설된 선봉 및 청진의 열병합발전소가 있으며 이들 전체 시설 용량은 약 70만 kw정도임.
- 향후 이 지역의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우선 선봉군의 화력 발전소 능력을 40만kw로 늘리며, 나진시 주변에 30만kw 능력의 열공급 및 지역난방 병용 화력발전소를 새로 건설할 계획임.
- 특히 수자원의 경우 두만강하류지역에 위치해 있고, 15km내외의 하천 10개와 여러개의 자연호수를 가지고 있어 용수는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수자원량을 보면 두만강 수자원 42억 m^3 , 중소하천 2억 m^3 로서 합계 44억 m^3 로 추산되고 있음.

(다) 중·화학공업

- 이 일대에는 정유 및 석유화학, 제철, 제강 및 기계공업 등 중화학공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승리화학 연합기업소, 선봉정유공장, 김책연합제철소 등은 각각 이 분야에서 북한의 최대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소들임. 이들 기업소들에서 생산되는 기초자재를 가공하는 제조업체가 다수 산재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들로서 1~2만톤급까지 선박 수리가 가능한 나진의 선박수리공장, 청진종합기계공장, 청진철도공장 및 나남기계공장 등이 있음.
- 그러나 이들 기업소들은 대부분 시설의 노후화와 기술수준의 낙후정도가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원유부족으로 석유 정제 및 석유화학 관련 기업의 조업률이 매우 저조하고 중공업부문도 에너지 부족으로 가동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라) 경공업

- 이 지역의 경공업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청진지역에 주로 위치하며 지역내 주민들에게 공급되는 의복이나 생필품을 생산하는 정도임.
- 북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으로는 청진화학섬유공장 및 수산물 가공공장 정도임.

나진·선봉·청진 일원의 기업소 현황

기업소명	소재지	설비규모(연간생산능력) 및 생산제품
< 지하 자원 >		
부해광산	나진시	니켈
낙산광산	나진시	은
무산광산	무산군	철광석 정광 650만톤
연천광산	청진시	망간
청진광산	청진시	망간
부윤광산	청진시	니켈 5만톤, 동
나남광산	청진시	유연탄
고무산광산	청진시	석회석
아오지탄광	은덕군	유연탄 200만톤
온성동광산*	온성군	동광 600만톤**
생기령점토공장*	경성군	점토 5만톤**
온성고령토공장*	온성군	고령토 5만톤**
< 발전 시설 >		
선봉원유화력발전소	선봉군	200,000kw/h (→400,000kw/h)
부령발전소	청진시	36,000kw/h
서두수수력발전소	청진시	420,000kw/h
청진열병합발전소	청진시	150,000kw/h
어랑천발전소	어랑군	300,000kw/h (건설중)
< 중화학공업 >		
승리화학연합기업소	나진시	석유정제능력 200만톤(→350만톤)
스타렌공장*		6천톤**
나진조선소*	나진시	2만 배수톤급 60척 수리**
응기탄산소다공장	선봉군	
선봉정유공장*	선봉군	200만톤**

기업소명	소재지	설비규모(연간생산능력) 및 생산제품
김책제철연합기업소	청진시	철강 240만톤, 압연능력 10만톤
청진제강소	청진시	입철 39만톤, 강재, 규사
청진철도공장	청진시	각종화차 연 8천량
청진조선소	청진시	화물선최대2만톤급, 함정3천톤급건조
나남기계공장	청진시	권양기, 콘베이어, 제초기
청진종합기계공장	청진시	탈곡기, 양수펌프
나남탄광기계공장	청진시	채탄기, 견인차, 권양기, 콘베이어
나남제약공장	청진시	군용약품 50여종
청진화학공장	청진시	카바이트
부령크롬강공장*	부령군	크롬강 2만5천톤**
부령금속공장*	부령군	페로티타늄 1천5백톤**
아오지암모니아공장	은덕군	암모니아 5만톤
< 경 공 업 >		
나진직물공장	나진시	작업모
웅기합판공장*	선봉군	합판 50만m ³ , 목재 7천m ³ **
청진화학섬유공장	청진시	인견사 5천톤, 스프 2만5천톤, 비스코스 1.8억m
청진피복공장	청진시	학생복, 아동복
나남피복공장	청진시	성인복
청진식료품공장	청진시	콩기름, 간장, 된장
청진수산물가공공장	청진시	수산물, 통조림

(자료출처 : 통일원, 「북한의 산업지리」, 1989. 11.)

*는 북한이 외국인의 자본유치를 희망하는 기업임.

**는 북한이 외자를 유치하여 확장을 계획하고 있는 시설규모를 나타냄.

나. 개발계획

(1) 향후 산업배치 및 도시정비계획

- 두만강유역 공동프로젝트의 추진상황과 현재의 사회기반, 자연환경을 감안하면서 최대의 투자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공업, 석유화학, 전자공업 등 수출가공 및 기술집약산업의 집약적 배치·정비에 주안점을 두고 산업배치와 도시정비사업을 합리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가) 공업배치

투자장려 공업대상

- 첨단기술을 비롯한 현대적 과학기술에 기초한 생산부문
- 국제시장에서 수요와 경쟁력이 높은 제품의 생산부문
- 현존 하부구조의 재건, 현대화 및 신설부문
- 자원개발과 관련된 부문
- 현존공장, 기업소들의 설비와 기술을 재건하는 대상
- 생산과 사회에 기여되는 제3산업 관련부문 등

- 그리고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는 다음과 같이 6개지역에 공업지구를 형성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공업을 배치할 계획임.

지역별 공업배치계획

구 분	면 적	배 치 내 용
신흥공업지구 (나진시 신흥동)	200정보	먼저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며 업종과 관계없이 투자가 희망하는 공업배치
후창공업지구 (나진시 후창리)	200정보	기계공업단지 조성
백학공업단지 (선봉군 백학리)	200정보	전자자동화공업부문을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이지역을 종합적인 전자자동화 공업지구로 개발
관곡공업지구 (나진시 관곡동)	550정보	원유가공공업, 석유화학공업
홍의공업지구(선봉군 홍의노동자구)	180정보	자동차조립 및 부속품 생산, 경공업
웅상 및 두만강지구 (선봉군 웅상노동자 구, 두만강노동자구)	284정보	목재가공공업, 경공업

※ 두만강지역개발계획 제2차 산업·자원분야 워크숍('93. 11. 8-10)에 참가한 북측 수석대표가 발표한 산업발전계획에 의하면 종래에 공표했던 이상의 「6개 공업지구」개발 전략을 발전시켜 「9개 공업기지」(추가로 동명, 창평, 청계 포함) 개념으로 세분화하였으며, '95년까지는 신흥, 동명, 창평, 청계, 백학 등 5개공단을 건설할 계획임을 밝혔음.

(나) 도시정비계획

- 나진항이 위치하고 있는 나진시 안주동지구부터 개발에 착수하고 점차적으로 나진시의 나머지 지역과 선봉군 백학리쪽으로 확장시킬 계획임.
- 장기적으로 나진시 후창리, 신해동지구와 선봉군노동자구 및 두만강노동자구, 홍의노동자구 일대에 신도시를 건설하여 주민수를 1단계에서 30만명, 3단계까지 100만명으로 증가시킬 계획임.
- 나진-선봉개발촉진센터를 건설하여 외국투자가들과 국제기구, 두만강 개발관련 실무그룹의 활동기지로서 통신, 무역, 정보, 금융 등 종합서비스기지로 활용할 예정임.

(2) 사회간접시설 현황 및 개발계획

(가) 항만

① 나진항

<현황>

- 총길이 2,515m인 10개의 안벽과 640m의 호안으로 구성
- 총부지면적 38만㎡, 보관면적 20만3천㎡이며 그중 창고면적은 2만6천㎡, 야적장면적은 17만7천㎡
- 항만기증기를 비롯한 하역설비와 운반설비구비

- 부대시설로서 2만톤급 선박건조 및 수리기지, 해난구조대, 선원편의 시설이 있음.
- 석탄, 파철, 원목 등의 화물취급

<확장계획>

- 1단계 (1993~1995년)
 - 목표 : 연1,000만톤 이상의 화물처리능력 확보
 - 기존설비 및 보관시설 개보수
 - 1,000m 규모의 신부두, 32,300㎡의 창고 건설
- 2단계 (1996~2000년)
 - 목표 : 연 2,000만톤 이상의 화물처리능력 확보
 - 약 3,500m의 안벽공사(2~20만톤 선박 진입가능)
 - 50만㎡의 창고(보세창고 포함)건설
 - 석탄전용출하부두화(20만톤급 초대형 선박 취급)
- 3단계 (2001~2010년)
 - 목표 : 연4,000만톤 이상의 화물처리능력 확보
 - 2만~20만톤급 선박 36척을 동시에 진입시킬 수 있는 부두건설

② 청진항

<현 황>

- 동항과 서항으로 구성
- 총 길이 2,138m로서 7개의 부두로 구성되어

있으며 5천~1만톤급 선박접안 가능

- 연간 화물처리능력은 총 800만톤으로서 동항 87만톤, 서항 713만톤임.
- 철도와 도로는 북부지구 순환선을 통하여 중국, 러시아와 연결

<확장계획>

중계화물 수송량에 대처하기 위한 사업을 두단계로 나누어 1단계와 3단계에서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음.

- 1단계 (1993~1995년)
 - 서항의 3호부두와 4호부두를 연결하는 480m의 안벽을 새로 건설하여 연 100만톤 능력의 화물전용부두를 건설하여 동항과 서항에서 1,000만톤의 화물을 통과시킬 계획
 - 이를 위하여 480m의 안벽공사, 약 30만 m^3 의 준설공사, 6만 m^2 의 야적장포장공사, 1,000m의 철로공사 계획중
- 3단계 (2001~2010년)
 - 청진 동항에 약 1,600m의 새로운 부두를 건설하고 설비와 시설들을 개보수하여 연 1,000만톤의 화물취급능력으로 늘릴 계획
 - 이를 위하여 약 1,600m의 부두와 1,200m의 방파제 건설, 50만 m^2 의 야적장 포장, 40만 m^3 의 준설공사 등을 계획중

③ 선봉항

<현황>

- 총부지면적은 20만 m^2 이며 기름을 전문으로 취

급하는 원유입하 부두와 원유제품 출하 부두로 구성

- 원유입하 부두는 3,236m의 해저 송유관을 늘리고 해상에 계류부표를 설치하여 25만톤급까지의 유조선을 대고 원유가공공장까지 원유를 압송할 수 있게 건설
- 화물취급 능력은 연간 200~300만톤이고 원유제품 출하부두는 455m의 안벽에 5천톤급 유조선 2척을 동시에 진입시키고 가공된 유류를 공장에서 유조선까지 송유관을 통하여 직접 운송할 수 있게 건설되어 있음.

<확장계획>

- 현재 진행중인 해저 송유관(500m)의 추가건설과 2만톤급 출하부두 확장공사가 완공되면 해저 송유관에 의한 연간 1,000만톤의 원유를 처리

(나)북부지구 순환철도망

<현 황>

- 북한의 북부지구 철도는 중국, 러시아와 국경을 이루고 있는 두만강과 해안선을 따라 총연장 405km의 순환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전기화된 구간은 237km(58.5%), 복선구간은 34km(8.4%)임.
- 러시아와 유럽방향의 화물수송에 편리하게 두만강역에서부터 나진항과 청진지구 남강덕역까지 134km 구간이 혼합선(표준궤 1,435mm, 광궤 1,524mm)으로 구성되어 있어 러

시아로부터 화물열차가 직접 나진항과 청진 지구까지 진입할 수 있음.

- 중국 방향의 화물수송에 편리하게 북한의 남양역과 도문역사이에는 복선철도로 연결되어 있으며 삼봉역과 개산둔사이, 훈융역과 중국의 훈춘사이에는 쉽게 철로를 연결할 수 있게 되어있음.

<확장계획>

구 분	내 용
1단계 (1993~1995) 중계 무역 화물 운송을 위한 기반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령-학송구간(168km)전철화 ○ 두만강역 자동화, 현대화 ○ 삼봉-개산둔(중국)간 철로연결 ○ 나진-구룡평간 역구내선 확장 ○ 두만강역-햇산(러시아)간 복선철교 건설 ○ 조산리역 건설(두만강역 인접) ○ 조산리역-구룡평역간(13.4km) 광궤철도 건설 ○ 강덕역(청진)-청진서항간 표준궤와 광궤 혼합 건설 : 러시아 화물열차 진입가능 ○ 청진-두만강역 구간의 열차지휘통신 현대화
2단계 (1996~2000) 중국·러시아 와의 중계 화물 수송본격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진-구룡평간(33km)광궤철로 건설 : 중국, 러시아로부터의 중계 화물 처리 ○ 회령-학송간 중량레일교체, 직선화 : 열차 운행속도 증대 ○ 기관차 수리, 화물차 수리시설 신설확장
3단계 (2001~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진-훈융간 복선철로건설 ○ 훈융-훈춘(중국)간 철교 복구, 연결 ○ 북부지구 철도 순환선 전체를 중량화, 자동화, 부분 복선화

(다) 북부지구 도로망

<현 황>

- 자유경제무역지대 주변의 도로는 청진-무산, 청진-회령, 청진-나진, 무산-나진 구간의 도로들에 의하여 청진-회령-온성-새별-선봉-나진-청진을 연결하는 순환망이 형성되어 있으며 길이는 385km임.
- 순환도로는 청진-남양구간(182km)에서 회령, 삼봉, 남양에 있는 국경다리를 통과하여 중국의 삼합, 개산둔, 도문과 각각 연결되어 있으며 나진에서 선봉을 거쳐 두만강을 연결하는 43km의 도로는 두만강 하구에 있는 「친선교」로 핫산(러시아)과 연결되어 있음.

<확장계획>

- 나진-새별(훈춘)간 고속도로 건설
 - 건설연장 : 73km
 - 도로너비 : 19~24m
 - 화물통과능력 : 1,200~1,500만톤/년
- 청진-회령(삼합)간 고속도로 신설
 - 건설길이 : 82km
 - 도로너비 : 19m
 - 화물통과능력 : 1,200~1,300만톤/년
- 나진-두만강 고속도로 건설
 - 총연장 : 45km
 - ※ 그중 중첩길이 27km, 건설길이 18km

- 도로너비 : 중첩구간 24m, 건설구간 19m
- 화물통과능력 : 1,200~1,500만톤/년
- 청진-나진 고속도로 건설
 - 건설연장 : 67km
 - 도로너비 : 19m
 - 통과능력 : 1,200~1,300만톤/년
- 새별-남양(도문)고속도로 신설
 - 노선연장 : 43km
 - 도로의 너비 : 19m
 - 화물통과능력 : 1,200~1,300만톤/년
- 하여평-원정(경신)간 고속도로 신설
 - 노선연장 : 7km
 - 도로너비 : 19m
 - 화물통과능력 : 1,200~1,300만톤/년
 - ※ 현재 은덕군 하여평리에서 원정리(국경다리)까지 11km의 일반도로(폭5~6m)가 건설되어 있으나 이용하지 않고 있음.

(라) 통신망

<현 황>

- 동 지대의 국제통신은 평양에 있는 위성통신 지구국을 통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러시아 방향으로는 마이크로파 통신으로 지역간 통신을 하고 있으나 미비한 점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확장계획>

- 북한은 이 지역의 통신을 첨단 컴퓨터를 사용하는 중앙교환국과 사무자동화 통신시설들로 구성하고 모든 통신은 통신위성 및 광섬유케이블, 마이크로파로 연결시킬 계획임.
- － 우선 나진시 중심에 나진-선봉개발촉진센터를 건설하여 평양위성지구국을 통한 국제통신과 중국, 러시아를 연결하는 지역간 통신망을 구축하여 외국투자기업들이 요구하는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구 분	내 용
1단계 (1993~1995) 중계무역화물운송을 위한 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만㎡ 규모의 통신센터건설(나진시 안주동) - 3만회선 능력의 숫자식(DGT) 자동전화교환설비 및 자료통신교환(DDX)설비 설치 - 나진·훈춘(중국)간 숫자식(DGT)마이크로파 통신개설 및 나진·블라디보스톡(러시아)간 기존의 마이크로파 통신로 확장 - 독자적인 국제통신위성지구국 건설(나진지구)
2단계 (1996~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가하는 주민 및 산업시설에 부응하여 3개의 통신분국을 지역별로 건설 - 7만회선(2만회선 2대, 3만회선 1대)능력의 숫자식(DGT)자동전화교환기와 자료통신교환설비들을 확장하여 종합 숫자식통신망(ISDN)체계 확립 - 국제통신위성지구국 운영 본격화 - 이동통신체계 구축 및 위성 안테나에 의한 TV수신(CATV)실시
3단계 (2001~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진·훈춘·포시에트사이에 광섬유케이블 건설 - 통신회선능력과 영상통로 및 자료전송통로들을 구성하여 양질의 통신서비스 실시

(마) 공 항

- 북한은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개발계획과 입지 조건, 러시아, 중국과의 연계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선봉군 부포리에 공항을 세울 계획임.
- － 관광을 비롯한 각종 수송수요에 대비하여 평양, 청진, 백두산 등 국내 여러지역과 항로를 연결하고 향후 두만강(부포리)－니이가타(일본), 두만강－블라디보스톡－하바로프스크, 두만강－훈춘－연길－심양 등을 연결하는 국제항로도 개설할 계획임.

(바) 관광자원개발 및 서비스 부문

<관광자원 개발>

- 안주(대초도)－신해(피파도) 관광지 개발
- 우암－굴포 관광지 개발
 - － 이 지대의 수많은 자연호수와 바다관광 자원 뿐 아니라 두만강 연안국들의 인접자원도 연결시켜 종합적으로 개발·이용하는 국제관광기지로 개발할 계획임.

<서비스 부문>

- 나진－선봉 개발촉진센터
 - － 행정관리, 통신, 무역, 은행, 상업, 회의 등 업무활동 보장 및 생활봉사의 종합센터
- 나진호텔
 - － 100실 규모의 호텔(연건축면적 9,710㎡)로

서 이미 착공하여 건물공사는 완공되었으며 내부
마감공사와 호텔에 필요한 시설은 합작투자할 계
획임.

다. 평가 및 전망

- 북한의 자유경제무역지대 구상은 제3차 7개년계
획('87~'93)의 일환으로 수립된 것이 아니고
UNDP의 두만강지역개발계획의 중국측 훈춘, 방
천개발계획에 대응하기 위해 갑작스럽게 발표되
었음.
- 국제환경변화로 말미암아 경제적 고립이 심화되
어 대외개방을 통한 새로운 협력선을 찾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음. 따라서 북한은 상징적인 대외개방
의 표시로서 출발한 개발계획을 실질적인 외자
유치 수단으로 전환하게 된 것임.
- 북한의 나진-선봉개발 구상에 대한 종합평가 및
전망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북한은 동 지대를 개발하여 외자유치를
통한 경제건설을 하겠다는 의지가 그 어느때보
다 강하므로 나진-선봉개발을 통한 대외개방
을 촉진시켜 나갈 것으로 전망됨.
 - 둘째, 북한의 동 지역개발 목표중의 하나는 항
만개발을 통한 중국 및 러시아 화물의 중계수
송로의 역할인데 이는 북한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며 관련 국가들과의 협조관계나 두
만강지역 개발방식에 크게 좌우되는 사항임.

- 셋째, 동 지대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간접 시설 확충계획 등을 검토해보면 그 실현 가능성이 의심이 되나 이전의 투자유치 노력과 비교해 볼 때 구체성을 띠고 있어 제도상, 계획상의 미비한 점들은 점진적인 진출과정에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넷째, 북한의 핵문제 해결시에는 대북경제협력 차원에서 나진-선봉개발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투자타당성 조사와 함께 참여계획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임.
- 결론적으로 나진-선봉지역개발문제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경제적 이해득실과 타당성의 좁은 차원에서만 다루어질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포괄적으로 고려함으로써 남북한 간 경제협력의 기회를 통일을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추구되어야 할 것임.

부 록

I. 남북간 교류·협력분야 주요 합의서

1.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1992년 2월 19일 발효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장 남 북 화 해

- 제 1 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 제 2 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 제 3 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아니한다.
- 제 4 조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제 5 조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

제 6 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대결과 경쟁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하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제 7 조 남과 북은 서로의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판문점에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운영한다.

제 8 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태두리 안에서 남북정치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화해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 2 장 남 북 불 가 침

제 9 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제 10 조 남과 북은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제 11 조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제 12 조 남과 북은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는 대규모 부대

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문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문제, 군인사교류 및 정보교환 문제,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실현문제, 검증문제 등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추진한다.

제 13 조 남과 북은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당국자 사이에 직통전화를 설치·운영한다.

제 14 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군사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 3 장 남 북 교 류 · 협 력

제 15 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 16 조 남과 북은 과학·기술,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 17 조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

제 18 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제 19 조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

제 20 조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연결하며, 우편·전기통신 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

제 21 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경제와 문화 등 여러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제 22 조 남과 북은 경제와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비롯한 부문별 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제 23 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태두리 안에서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 4 장 수 정 및 발 효

제 24 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 보충할 수 있다.

제 25 조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서로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1년 12월 13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북측대표단 단장

대 한 민 국
국 무 총 리 정 원 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 연형묵

2.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 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1992년 9월 17일 발효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데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장 경 제 교 류 · 협 력

제 1 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 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현한다.

- ① 남과 북은 물자교류와 석탄, 광물, 수산자원 등 자원의 공동개발과 공업, 농업, 건설, 금융, 관광 등 각 분야에서의 경제협력사업을 실시한다.
- ② 남과 북은 자원의 공동개발, 합영·합작투자 등 경제협력사업의 대상과 형식, 물자교류의 품목과 규모를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 ③ 남과 북은 자원의 공동개발, 합영·합작투자 등 경제협력사업의 규모, 물자교류의 품목별 수량과 거래조건을 비롯한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쌍방 교류·협력 당사자들 사이에 토의하여 정한다.
- ④ 남과 북사이의 경제협력과 물자교류의 당사자는 법

인으로 등록된 상사, 회사, 기업체 및 경제기관이 되며 경우에 따라 개인도 될 수 있다.

- ⑤ 남과 북은 교류·협력 당사자간에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 경제협력사업과 물자교류를 실시하도록 한다.
- ⑥ 교류물자의 가격은 국제시장가격을 고려하여 물자교류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정한다.
- ⑦ 남과 북사이의 물자교류는 상호성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실현한다.
- ⑧ 남과 북사이의 물자교류에 대한 대금결제는 청산결제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의 합의에 따라 다른 결제방식으로 할 수 있다.
- ⑨ 남과 북은 청산결제은행 지정, 결제통화 선정 등 대금결제와 자본의 이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
- ⑩ 남과 북은 물자교류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남북사이의 경제관계를 민족내부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협의·추진한다.
- ⑪ 남과 북은 경제교류와 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공업규격을 비롯한 각종 자료를 서로 교환하며 교류·협력 당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자기측의 해당 법규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 ⑫ 남과 북은 경제교류와 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분쟁조정절차 등에 대해서는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
- ⑬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서 경제교류와 협력에 참가하는 상대측 인원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편의를 보장한다.

제 2 조 남과 북은 과학·기술, 환경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현한다.

- ① 남과 북은 과학·기술, 환경분야에서 정보자료의 교환, 해당 기관과 단체, 인원들 사이의 공동연구 및 조사, 산업부문의 기술협력과 기술자, 전문가들의 교류를 실현하며 환경보호대책을 공동으로 세운다.
- ② 남과 북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데 따라 특허권, 상표권 등 상대측 과학·기술상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 3 조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

- ① 남과 북은 우선 인천항, 부산항, 포항항과 남포항, 원산항, 청진항 사이의 해로를 개설한다.
- ②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교류·협력 규모가 커지고 군사적 대결상태가 해소되는데 따라 해로를 추가로 개설하고, 경의선 철도와 문산-개성 사이의 도로를 비롯한 육로를 연결하며 김포공항과 순안비행장 사이의 항로를 개설한다.
- ③ 남과 북은 교통로가 개설되기 이전에 진행되는 인원왕래와 물자교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임시교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 ④ 남과 북은 육로, 해로, 항로의 개설과 운영의 원활한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교환 및 기술협력을 실시한다.
- ⑤ 남북사이의 교류물자는 쌍방이 합의하여 개설한 육로, 해로, 항로를 통하여 직접 수송하도록 한다.
- ⑥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 들어온 상대측 교통수단

에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긴급구제조치를 취한다.

- ⑦ 남과 북은 교통로 개설 및 운영과 관련한 해당 국제협약들을 존중한다.
- ⑧ 남과 북은 남북사이에 운행되는 교통수단과 승무원들의 출입절차, 교통수단 운행방법, 통과지점 선정 등 교통로 개설과 운영에서 제기되는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토의하여 정한다.

제 4 조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연결하며, 우편과 전기통신 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

- ① 남과 북은 빠른 시일안에 판문점을 통하여 우편과 전기통신을 교환, 연결하도록 하며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정보교환 및 기술협력을 실시한다.
- ②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서 공적 사업과 인도적 사업을 우선 보장하며, 점차 그 이용 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 ③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의 비밀을 보장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정치·군사적 목적에 이용하지 않는다.
- ④ 남과 북은 우편 및 전기통신교류와 관련한 해당 국제협약들을 존중한다.
- ⑤ 남과 북사이에 교류되는 우편 및 전기통신의 종류와 요금, 우편물의 수집, 전달방법 등 기타 실무적 문제들은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 5 조 남과 북은 국제경제의 여러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 ① 남과 북은 경제분야의 여러 국제행사와 국제기구들에서 서로 협력한다.
- ② 남과 북은 경제분야에서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추진한다.

제 6 조 남과 북은 경제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지원·보장한다.

제 7 조 남과 북은 경제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기구설치문제와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 8 조 이 합의서 『제1장 경제교류·협력』부문의 이행 및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의 협의·실천은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한다.

제 2 장 사 회 문 화 교 류 · 협 력

제 9 조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 ①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 및 연구·출판·보도자료와 목록 등 정보자료를 상호 교환한다.
- ②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기술협력을 비롯한 다각적인 협

력을 실시한다.

- ③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국토종단행진, 대표단 파견, 초청·참관 등 기관과 단체, 인원들사이의 접촉과 교류를 실시한다.
- ④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연구, 조사, 편찬사업, 행사를 공동으로 실시하며 예술작품, 문화유물, 도서출판물의 교환전시회를 진행한다.
- ⑤ 남과 북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데 따라 상대측의 각종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 10 조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

- ① 남과 북은 모든 민족구성원들이 자기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공동으로 취한다.
- ② 민족구성원들의 왕래는 남북사이에 개설된 육로, 해로, 항로를 편리한 대로 이용하여 하도록 하며, 경우에 따라 국제항로도 이용할 수 있다.
- ③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이 방문지역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하도록 하며, 신변안전 및 무사귀환을 보장한다.
- ④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이 상대측의 법과 질서를 위반함이 없이 왕래하고 접촉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 ⑤ 남과 북을 왕래하는 인원들은 필요한 증명서를 소

지하여야 하며, 쌍방이 합의한 범위내에서 물품을 휴대할 수 있다.

- ⑥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 들어온 상대측 인원에 대하여 왕래와 방문목적 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 ⑦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 들어온 상대측 왕래자에게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긴급구제조치를 취한다.
- ⑧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실무적 문제들을 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 11 조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의 국제무대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 ①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의 여러 국제행사와 국제기구들에서 서로 협력한다.
- ②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에서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추진한다.

제 12 조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지원·보장한다.

제 13 조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기구설치문제와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 14 조 이 합의서 『제2장 사회문화교류·협력』부문의 이행 및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의 협의·실천은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한다.

제 3 장 인 도 적 문 제 의 해 결

제 15 조 남과 북은 흠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 ① 흠어진 가족·친척들의 범위는 쌍방 적십자단체들 사이에 토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 ② 남과 북은 흠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왕래와 방문을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 왕래절차에 따라 실현한다.
- ③ 남과 북은 흠어진 가족·친척들의 상봉 면회소 설치 문제를 쌍방 적십자단체들이 협의·해결하도록 한다.
- ④ 남과 북은 흠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추진한다.
- ⑤ 남과 북은 인도주의 정신과 동포애에 입각하여 상대방 지역에 자연재해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서로 도우며, 흠어진 가족·친척들 가운데 사망자의 유품 처리, 유골이전 등을 위한 편의를 제공한다.

제 16 조 남과 북은 이미 진행하여 오던 쌍방 적십자단체들의 회담을 빠른 시일안에 다시 열도록 적극 협력한다.

제 17 조 남과 북은 흠어진 가족·친척들의 불행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적십자단체들의 합의를 존중하며 그것이 순조롭게 실현되도록 지원·보장한다.

제 18 조 이 합의서 『제3장 인도적 문제의 해결』부문의 이행 및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의 협의·실천은 쌍방 적십자단체들이 한다.

제 4 장 수 정 · 발 효

제 19 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 20 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기; 쌍방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왕래에 저촉되는 법적, 제도적 장치철폐문제를 남북화해공동위원회 법률실무협의회에서 토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1992년 9월 17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북측 대표단 단장

대 한 민 국
국 무 총 리 정 원 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 연형묵

3.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1992년 5월 7일 발효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 22조에 따라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 1 조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① 남과 북은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하여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와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쌍방에서 각각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7명으로 구성한다.
- ③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위원장은 쌍방이 합의하여 장관(부장) 또는 차관(부부장)급으로 하며, 부위원장과 위원들의 급은 각기 편리한 대로 한다.
- ④ 쌍방은 공동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교체할 경우 사전에 상대측에 이를 통보한다.
- ⑤ 수행원은 각기 15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⑥ 쌍방은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실무협의회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 2 조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

행한다.

- ①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부속합의서를 이행한다.
- ②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부속합의서의 실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 ③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부속합의서의 이행과 관련이 있는 기타 세부 사항을 협의·실천한다.
- ④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실무협의체들의 활동을 종합·조정한다.

제 3 조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①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②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는 판문점, 서울, 평양, 그리고 쌍방이 합의하는 다른 장소에서 할 수 있다.
- ③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는 쌍방 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 ④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공개로 할 수도 있다.
- ⑤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에는 쌍방이 합의하여 교류·협력 당사자, 해당 전문가들을 참가시킬 수 있다.
- ⑥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보장, 편의

제공과 회의기록 등 실무절차는 관례대로 한다.

- ⑦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당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 4 조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의 합의사항은 공동위원회 회의에서 쌍방 공동위원장이 합의문건에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경우에 따라 중요한 문건은 쌍방이 협의하여 총리가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실무협의회들의 회의 합의사항을 쌍방 공동위원장이 서명·교환하는 방식으로 발효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당 공동위원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5 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 6 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5월 7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북측대표단 단장

대 한 민 국
국 무 총 리 정 원 식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정 무 원 총 리 연 형 목

II.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령

1. 南北交流協力에관한法律

制定 1990. 8. 1 法律 第4239號

改正 1990.12.27 法律 第4268號(政府組織法中改正法律)

第1條(目的) 이 法은 軍事分界線 以南地域(이하 “南韓”이라 한다)과 그 以北地域(이하 “北韓”이라 한다)間의 相互交流와 協力을 촉진하기 爲하여 필요한 사항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出入場所”라 함은 北韓으로 가거나 北韓으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南韓의 港口·飛行場 기타 場所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곳을 말한다.
2. “交易”이라 함은 南韓과 北韓間의 物品의 搬出·搬入을 말한다.
3. “搬出·搬入”이라 함은 賣買·交換·賃貸借·使用貸借·贈與 등을 原因으로 하는 南韓과 北韓間의 物品의 移動(단순히 第3國을 경유하는 物品의 移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4. “協力事業”이라 함은 南韓과 北韓의 住民(法人·團體를 포함한다)이 共同으로 행하는 文化·體育·學術·經濟 등에 관한 諸般活動을 말한다.

第3條(다른法律과의 관계) 南韓과 北韓과의 往來·交易·協力事業 및 通信役務의 제공 등 南北交流와 協力을 目的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다른 法律에 우선하여 이 法을 適用한다.

第4條(南北交流協力推進協議會의 設置) 南韓과 北韓間的 相互交流 및 協力(이하 “南北交流·協力”이라 한다)에 관한 政策을 協議·調整하고, 南北交流·協력에 관한 重要사항을 審議·議決하기 위하여 統一院에 南北交流協力推進協議會(이하 “協議會”라 한다)를 둔다.

第5條(協議會의 구성) ①協議會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한 15人 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②委員長은 統一院長官이 되며, 協議會의 業務를 統轄한다.

③委員은 次官 및 次官級 公務員중에서 國務總理가 指名하는 者가 된다.

④委員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委員長이 미리 指定한 委員이 委員長의 職務를 代行한다.

⑤協議會에 幹事 1人을 두되, 幹事는 統一院 所屬 公務員중에서 委員長이 指名하는 者가 된다.

第6條(協議會의 機能) 協議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議決한다.

1. 南北交流·協력에 관한 政策의 協議·調整 및 基本原則의 수립

2. 南北交流·協력에 관한 각종 許可·승인등에 관한 重要사항의 協議·調整

3. 交易對象品目の 범위 決定

4. 協力事業에 대한 總括·調整

5. 南北交流·協力の 촉진을 위한 지원

6. 南北交流·協력과 관련된 重要사항에 대한 關係部處間的 協調推進

7. 기타 委員長이 附議하는 사항

第7條(協議會의 議事) ①協議會의 會議은 委員長이 召集한다.

②協議會의 會議은 在籍委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委員 過

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③協議會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8條(實務委員會) ①協議會에 上程할 議案을 준비하고, 協議會의 委任을 받은 事務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協議會에 實務委員會를 둘 수 있다.

②實務委員會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9條(南·北韓 往來) ①南韓과 北韓의 住民이 南韓과 北韓을 往來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統一院長官이 發給한 證明書を 소지하여야 한다.

②在外國民이 外國에서 北韓을 往來하는 때에는 在外公館의 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③南韓의 住民이 北韓의 住民등과 會合·通信 기타의 방법으로 接觸하고자 할 때에는 統一院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證明書の 發給節次,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在外國民의 범위와 申告節次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承認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0條(海外同胞 등의 出入保障) 外國國籍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大韓民國의 旅券을 소지하지 아니한 海外居住同胞가 南韓에 往來하고자 할 때에는 旅券法에 의한 旅行證明書を 소지하여야 한다.

第11條(南·北韓 往來에 대한 審査) 出入場所에서 南韓과 北韓을 直接 往來하는 南韓과 北韓의 住民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審査를 받아야 한다.

第12條(交易當事者) 交易(北韓과 第3國間에 物品의 中繼貿易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할 수 있는 者는

國家機關·地方自治團體·政府投資機關 또는 對外貿易法에 의하여 貿易業의 許可를 받은 者(이하 “交易當事者”라 한다)로 하되, 統一院長官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協議會의 議決을 거쳐 交易當事者중 특정한 者를 지정하여 交易을 하게 할 수 있다.

第13條(搬出·搬入의 승인) 交易當事者가 物品을 搬出·搬入을 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物品 또는 去來形態·代金決濟方法에 관하여 統一院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主要內容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第14條(交易對象物品의 公告) 統一院長官은 物品의 搬出·搬入에 관하여 協議會의 議決을 거쳐 다음 各號의 사항을 미리 公告하여야 한다. 公告한 사항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物品의 搬出·搬入에 관한 自動承認品目·制限承認品目 또는 禁止品目の 구분
2. 制限承認品目에 관한 제한내용 및 承認節次

第15條(交易에 관한 調整命令등) ①統一院長官은 交易에 관한 協定の 준수나 物品의 搬出·搬入의 秩序維持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交易當事者에게 搬出·搬入하는 物品의 價格·數量·品質 기타 去來條件등에 관하여 필요한 調整을 命할 수 있다.

②統一院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交易當事者에게 交易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第16條(協力事業者) ①協力事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統一院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의 요건과 承認取消事由 및 그

節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7條(協力事業의 승인) ①第16條 規定에 의하여 協力事業의 승인을 얻은 者(이하 “協力事業者”라 한다)가 協力事業을 施行하고자 할 때에는 每 事業마다 統一院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事業의 내용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協力事業의 승인요건과 그 節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8條(協力事業에 관한 調整命令등) ①統一院長官은 協力事業이 南北交流·協力の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協力事業者에게 그가 施行하는 協力事業에 대하여 필요한 調整을 명할 수 있다.

②統一院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協力事業者에게 協力事業의 施行內容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第19條(決濟業務의 取扱機關) ①統一院長官은 南北交流·協력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財務部長官과 協議하여 決濟業務를 취급할 機關을 지정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決濟業務取扱機關이 행하는 決濟의 범위·방법 및 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0條(輸送裝備의 運行) ①南韓과 北韓間에 船舶·航空機·鐵道車輛 또는 自動車등을 運行하고자 하는 者는 統一院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의 基準 및 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1條(輸送裝備등의 出入管理) 船舶·航空機·鐵道車輛 또는 自動車등과 그 乘務員이 出入場所에 出入하는 때에는 出入國管理法 第65條 내지 第72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22條(通信役務의 제공) ①南北交流·協力の 촉진을 위하여 郵便役務 및 電氣通信役務를 제공할 수 있다.

②南韓과 北韓간에 제공되는 郵便役務 및 電氣通信役務의 提供者·종류·料金·取扱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3條(檢疫등) ①北韓으로부터 來港하는 船舶·航空機·荷物은 檢疫調査를 받아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疫調査에는 檢疫法第6條 내지 第28條 및 第33條 내지 第35條의 2의 規定을 準用한다. 다만, 檢疫法第19條 및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檢疫證 또는 假檢疫證의 교부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北韓으로부터 南韓으로 오는 者중 傳染病에 感染되었거나 感染이 疑心되는 者와 傳染病菌의 病原體에 汚染되었거나 汚染이 의심되는 물건을 소지한 者는 國立檢疫所長 또는 保健所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第24條(南北交流·協力の 지원) 政府는 南北交流·協力を 增進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法에 따라 행하는 南北交流·協力を 위한 事業을 施行하는 者에게 補助金을 支給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第25條(協調要請) 統一院長官은 南北交流·協力を 增進시키고 관련 政策樹立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關係專門家 및 南北交流·協力の 經驗이 있는 자에게 의견의 陳述등 필요한 協調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協調를 요청받은 자는 正當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第26條(다른 法律의 準用) ①交易에 관하여 이 法에 특별히 規定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對外貿易法 등 貿易에 관한 法律을 準用한다.

②物品의 搬出·搬入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租稅의 賦課·徵收·減免 및 還給등에 관한 法律을 準用한다. 다만, 物品의 搬入에 있어서는 關稅法에 의한 課稅規定, 防衛稅法第4條第1號의 規定 및 다른 法律에 의한 輸入賦課金에 관한 規定은 이를 準用하지 아니한다.

③南韓과 北韓間的 投資, 物品의 搬出·搬入 기타 經濟에 관한 協力事業 및 이에 隨伴되는 去來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法律을 準用한다.

1. 外國換管理法
2. 外資導入法
3. 韓國輸出入銀行法
4. 輸出保險法
5. 對外經濟協力基金法
6. 法人稅法
7. 所得稅法
8. 租稅減免規制法
9. 輸出用原材料에 대한 關稅 등 還給에 관한 特例法
10.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法律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다른 法律을 準用함에 있어서는 大統領令으로 그에 대한 特例를 정할 수 있다.

第27條(罰則)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1,0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證明書を 發給받지 아니하고 南韓과 北韓을 往來하거나 同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會晤·通信 기타의 방법으로 北韓의 住民과 接觸한 者
2.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物品을 搬出 또는 搬入한 者

3.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協力事業을 施行한 者
4.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證明書를 發給받거나 第9條第3項, 第13條 또는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은 者
5.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南韓과 北韓間에 船舶·航空機·鐵道車輛 또는 自動車등을 運行한 者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北韓을 往來한 在外國民
2.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整命令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第1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者
3.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整命令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第1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者

③第1項第1號 내지 第3號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第28條(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 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27條의 規定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同條의 規定에 의한 罰金刑을 科한다.

第29條(刑의 減輕) 第27條第1項 및 第2項 第1號의 罪를 범한 者가 自首한 때에는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할 수 있다.

第30條(北韓住民擬制) 이 法(第9條第1項 및 第11條를 제외한다)의 適用에 있어서 北韓의 路線에 따라 활동하는 國外團體의 構成員은 이를 北韓의 住民으로 본다.

附 則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다른 法律의 改正) 租稅減免規制法 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에 第24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24. 南北交流協力에 관한 法律

附 則<90. 12. 27>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但書省略>

第2條 내지 第10條 省略

2.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 1990. 8. 9 대통령령 제13071호

개정 1991. 2. 1 대통령령 제13269호(통일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입장소) ①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곳”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장소를 말한다.

1. 판문점
 2. 출입국항지정의건 제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공항
 3. 개항질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개항으로서 통일원장관이 지정하는 개항
 4. 기타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일원장관이 지정하는 곳
- ②통일원장관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재무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 및 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장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제3조(협의회의 회의) 위원장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상정할 의안을 정하여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 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 5 조(수당등)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자가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6 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통일원차관이 되며,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실무위원회의 위원은 협의회의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행정기관의 장 및 협의회 위원장이 상정할 의안과 관련있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1급 내지 3급 국가공무원(1급 내지 3급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된다.

제 7 조(실무위원회의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의회 위원장이 지시한 협의회 의안의 사전 검토·조정
2. 협의회의 위임을 받은 사무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관계부처간의 실무협조사항
4. 기타 협의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8 조(준용규정등) ①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은 실무위원

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남북한 왕래등

제9조(증명서의 규격 및 기재사항)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이하 “방문증명서”라 한다)는 북한방문 증명서와 남한방문증명서로 나눈다.

②방문증명서의 규격은 가로 8.7센티미터·세로12.5센티미터로 하고, 표지의 상단에 “방문증명서”를, 하단에 “통일원”을 표기한다.

③방문증명서 표지의 색상과 면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북한방문증명서 : 갈 색·8면
2. 남한방문증명서 : 청남색·8면

④방문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증명서번호
2. 성 명
3. 성 별
4. 생년월일
5. 방문목적
6. 방문기간
7. 신 장
8. 기타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0조(증명서의 발급신청)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남한주민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
2. 신원진술서
3. 방문증명서용 사진(발급신청일전 3개월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탈모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세로4.5센티미터의 것을 말한다)4매
4. 병역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또는 허가서. 다만, 해당자에 한한다.
5. 북한을 방문하는 동안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
6. 기타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②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한방문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북한주민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
 2. 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사진·서류 또는 자료
- ③통일원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제4호·제6호 및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또는 자료를 방문증명서를 교부하는 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④외국에 나가있는 남한주민 또는 북한주민이 방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없이 신청서류를 통일원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대리신청) ①대리인이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방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리인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1. 본인의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 사본
 2.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 ②대리인이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한방문증명서

의 발급을 북한주민을 대리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리인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서류

- 가. 본인의 위임장 및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나. 초청장 사본등 초청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제12조(증명서발급의 협의) 통일원장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받은 내용이 중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방문증명서 발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100인 이상의 단체 왕래
- 2. 정치적 목적의 왕래
- 3. 기타 통일원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왕래

제13조(편의제공) 통일원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는 자에게 필요한 안내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증명서의 재발급)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가 발급받은 방문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방문증명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기타 통일원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방문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 1. 재발급 신청서
- 2. 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진 2매
- 3. 기타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서류

제15조(동반자녀의 병기) 방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가 14세미만의 자녀를 동반하고자 할 때에는 그의 방문증

명서에 자녀의 동반을 병기할 수 있다.

제16조(방문기간) ①통일원장관은 방문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서 그 방문목적에 따라 1년 6월이내의 방문기간을 정하여 방문증명서를 발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기간은 당해 방문증명서의 최초의 방문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증명서의 반납등) ①방문증명서를 소지하고 남한 또는 북한을 방문한 자가 귀환할 때에는 출입장소에서 방문증명서를 반납하여야 하며, 제10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북한방문증명서를 교부받은 자가 북한을 방문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없이 방문증명서를 통일원장4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통일원장관은 방문증명서의 발급대상이 된 자가 남북교류·협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발급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재외국민의 북한 왕래신고) ①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의 범위는 외국정부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②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왕래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출발하기 5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북한방문신고서

2. 기타 재외공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③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북한을 왕래한 경우에는 귀환

후 1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한 때에 이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북한방문결과보고서
2. 기타 재외공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9조(접촉승인신청) ①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접촉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원장관이 인정한 왕래의 목적의 범위안에서 당연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접촉을 제외한 회합·통신 기타 방법의 접촉으로 한다.

②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접촉 20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북한주민접촉신청서
2. 신원진술서
3. 기타 통일원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외국에 나가 있는 남한주민이 북한주민과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2항각호의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통일원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사전에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에는 접촉후 7일이내에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일원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한 때에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1. 북한주민의 참가가 예상되는 국제행사의 참가를 정부로부터 승인받고 동 행사에서 또는 동 행사와 관련하여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2. 외국을 여행하는 중에 우발적으로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3. 외국에서 가족(8촌이내의 친·인척 및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를 말한다)인 북한주민과 회합한 자
4. 교역을 목적으로 긴급히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5. 편지의 접수등 사전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제20조(특례조치) 통일원장관은 남한과 북한의 당국간의 합의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가 있는 때 및 협의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제9조 내지 제14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제21조(출입심사공무원)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남·북한 왕래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출입심사공무원”이라 한다)은 통일원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제22조(출입심사) ①법 제11조에서 “심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신원확인
 2. 휴대한 물품등의 검사
 3. 검역
 4. 방문증명서등 필요한 서류의 확인
 5. 기타 통일원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심사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장비등은 통일원장관이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제23조(심사확인) ①출입심사공무원은 제22조의 심사를 받은 자가 소지한 방문증명서에 심사확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②출입심사공무원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자의 왕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남한과 북한의 당국간의 합의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 합의에 의한다.

제24조(휴대금지품의 고시) 통일원장관은 남·북한을 왕래하는 자가 휴대할 수 없는 물품등의 종류·수량 및 휴대할 수 없는 물품의 처리방법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 4 장 교 역

제25조(교역당사자의 지정) 통일원장관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역당사자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전에 미리 상공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6조(반출·반입의 승인신청)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반출·반입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일원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방법을 미리 정할 수 있다.

③통일원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서 개별적 승인에 갈음하여 물품 또는 대금결제방법등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포괄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④통일원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반출·반입의 승인 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형태·대금결제방법등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무부장관·상공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칠 수 있다.

제27조(변경 승인사항등) ①법 제1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내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금액의 변경. 다만, 동일한 물품으로서 미화 5천달러 상당액 미만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금결제방법의 변경

3. 반출·반입 유효기간의 연장

4. 반출·반입 승인조건의 변경

②통일원장관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통일원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반출·반입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상공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교역대상 물품의 공고) 통일원장관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고자 하는 교역대상물품에 관하여 협의회의 의결에 앞서 미리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9조(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①통일원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역당사자에게 조정을 명할 때에는 미리 상공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상공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교역당사자에게 교역에 관하여 조정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일원장관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③통일원장관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역에 관한 조정을 명하거나 교역에 관한 보고를 받을 때에는 그 내용을 상공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협력사업

제30조(협력사업자 승인의 요건)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협력사업자의 승인을 얻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남북교류·협력의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2. 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국내 또는 국외에서 최근 3년이내에 사업실적이 있을 것. 다만, 한국은행·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 협의회가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의결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기타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제31조(협력사업자 승인의 절차)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자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통일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자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협력사업자의 승인을 한다.

③통일원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자의 승인을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협력사업자승인증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협력사업자 승인의 취소) 통일원장관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협력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협력사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
2. 제30조의 정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승인을 얻은 사업외의 사업을 북한주민과 공동으로 행한 경우
4. 법 제27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5. 최근 3년간 계속하여 협력사업의 실적이 없는 경우
6. 협력사업의 시행중 남북교류·협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7. 국가안전보장·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33조(취소절차) ①통일원장관은 협력사업자 승인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전에 취소의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 이를 해당 협력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협력사업자는 승인의 취소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4조(협력사업의 승인신청) ①협력사업자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협력사업 상대자에 대한 소개서
3. 협력사업 상대자와의 협의서
4. 북한 당국의 확인서
5. 기타 통일원장관이 협력사업 승인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②제1항 각호의 기재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
원장관이 정한다.

제35조(협력사업의 승인요건)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한 협력사업승인의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협력사업의 내용이 실현 가능할 것.
2. 협력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남·북한간에 분쟁을 일으
킬 상당한 사유가 없을 것.
3. 이미 시행되고 있는 협력사업과 심각한 경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없을 것.
4. 협력사업자의 능력과 협력사업의 내용 및 규모가 부합
될 것.
5. 국가안전보장·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제36조(협력사업의 승인) ①통일원장관은 제34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의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30일이
내에 협의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하
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거치
지 아니하고 승인할 수 있다.

②통일원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
을 승인을 한 때에는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③통일원장관은 협력사업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남북교류·
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
며, 당해 사업승인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37조(협력사업에 대한 조정명령) ①통일원장관은 법 제18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자에게 조정을 명할 때
에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야 한다.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협력사업자에게 협력사업에 대한 조정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일원장관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제38조(협력사업에 관한 보고) ①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북한측 상대자와의 사업의 약정 또는 계약의 체결
2. 사업의 착수
3. 사업진행상황
4. 사업의 만료 또는 제1호의 약정 또는 계약의 해지·해제
5. 사업의 진행중 분쟁 또는 사고의 발생
6. 기타 통일원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제3호의 사업진행상황은 분기별로 매분기 종료후 20일이내에, 기타의 사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일원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통일원장관이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외국환 거래가 수반되는 교류 및 협력) 법 및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남한과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외국환의 거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관리법 또는 외자도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장 보 칙

제40조(결제업무 취급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제업무 취급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한국은행
2. 한국수출입은행
3. 외국환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
4. 외국환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전상 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

제41조(결제업무의 범위·방법 및 절차)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제업무 취급기관이 행하는 결제업무의 범위·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통일원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미리 재무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제업무의 범위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제42조(수송장비운행의 승인신청)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의 운행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운행의 승인기준) 남한과 북한간의 선박등을 운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운행목적에 부합하는 선박등을 소지할 것.
2. 소지하고 있는 선박등의 조작 또는 운행능력이 있을 것.
3. 선박등을 운행하고자 하는 노선에 운행이 가능할 것.
4. 영리를 목적으로 선박등을 운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해당 운송사업의 면허·등록을 받을 것.
5. 운행의 안전을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소정의 교육을 받을 것.
6. 기타 남북교류·협력의 발전과 운행의 안전을 위하여 협

의회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것.

제44조(협의등) ①통일원장관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 등의 운행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하기 전에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자가용 승용차의 운행의 승인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②통일원장관은 선박등의 정기운행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운행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협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운행승인서의 발급) 통일원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등의 운행을 승인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운행승인서를 교부한다.

제46조(통신역무의 제공) 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한과 북한간의 우편역무 또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할 수 있는 자는 우편법과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하여 우편사업 또는 공중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로 한다.

②남한과 북한간에 제공할 수 있는 우편역무 및 전기통신역무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통상우편물
2. 소포우편물
3. 유선전기통신

제47조(통신역무의 요금)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한과 북한간에 제공되는 우편역무에 대한 요금은 국내우편요금, 전기통신역무에 대한 요금은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에 의한다.

제48조(통신역무의 취급절차) 남한과 북한간에 제공되는 우편역무 및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법과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편법·우편물운송법·임시

우편단속법·전기통신기본법 및 공중전기통신사업법의 관계 규정을 적용한다.

제49조(수당등)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 의견의 진술, 자료의 제공등을 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수당 또는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0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법 제2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외무역법등 관계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고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당해 법률을 준용한다.

②법 제26조제2항단서의 규정은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에 한하여 준용하되, 원산지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원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법 제26조제3항제10호의 규정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관세법. 다만, 물품의 반입·반출에 따른 관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등에 관한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

3. 국세징수법

4. 부가가치세법

5. 특별소비세법

6. 주세법

7. 방위세법. 다만, 방위세법 제4조제1항제2호·제3호의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8. 교육세법

9. 식물방역법

10. 가축전염병예방법

④이 법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반출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수출등”으로 본다.

⑤이 영에 정한 사항외에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다.

제51조(남한과 북한간에 반출·반입되는 물품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과세) ①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 또는 북한으로부터 제공받는 용역은 각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며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이 특별소비세·주세의 과세대상인 경우 출입장소로부터 당해 물품이 반출되는 때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법 또는 주세법을 준용한다.

③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과 북한에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이를 각각 수출품목 또는 국외제공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 및 주세법을 준용한다.

제52조(휴대품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출입장소를 통하여 북한으로부터 남한으로 들어오는 자의 휴대품·별송품으로서 왕래사유·체재기간·직업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50조제2항 및 제5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및 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북한으로부터 남한을 방문하는 자에 대하여는 외국인 관광객에 준하여 부가가치세법 및 특별소비세법의 감면규정을 준용한다.

제53조(남북교류·협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 ①남한과 북한간의 투자, 물품의 반출·반입 기타 경제에 관한 협력사업 및 이에 수반되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 등에 관하여는 법 제26조제3항제6호내지 제8호의 법률을 준용한다. 북한에 물품을 반출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수출 또는 외화획득사업으로 보며, 북한으로부터 물품이 반입되는 것은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을 준용함에 있어서 북한에서 소득이 있는 남한주민의 소득세에 대하여 소득세 부과の特례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남한에서 소득이 있는 북한주민의 소득에 대하여 그와 동등한 특례를 인정할 수 있다.

③남북교류·협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에 대하여 남한과 북한의 당국간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준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법령의 폐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91.2.1>

제 1 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내지 제4조 생략

3. 南北協力基金法

制定 1990. 8. 1 法律 第4240號

改正 1990.12.27 法律 第4268號(政府組織法中改正法律)

第1條(目的) 이 法은 南北交流協力에 관한 法律에 의한 南北間의 相互交流과 協力を 지원하기 위하여 南北協力基金을 設置하고 그 運用·管理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交易” 및 “協力事業”이라 함은 南北交流協力에 관한 法律 第2條第2號 및 第4號에 規定된 交易 및 協力事業을 말한다.
2. “金融機關”이라 함은 銀行法 기타 法律에 의한 銀行인 金融機關을 말한다.

第3條(基金의 設置) 政府는 이 法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필요한 資金을 確保·供給하기 위하여 南北協力基金(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設置한다.

第4條(基金의 財源) 基金은 다음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1. 政府 및 政府외의 者の 出捐金
2. 第5條의 規定에 의한 長期借入金
3. 第6條의 規定에 의한 債券의 발행으로 造成된 資金
4. 基金의 運用收益金
5.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收入金

第5條(長期借入) ①統一院長官은 基金의 財源을 마련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基金의 부담으로 財政投融資特別會計, 다른 基金, 金融機關등으로부터 資金을 長期借入할 수 있다.

②統一院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資金을 借入할 때에는 미리 財務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第6條(債券發行) ①政府는 基金의 財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基金의 부담으로 國內에서 南北協力基金債券(이하 “債券”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第1項의 債券은 統一院長官의 요청에 의하여 財務部長官이 발행한다.

③債券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것외에는 國債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第7條(基金의 運用·管理) ①基金은 統一院長官이 運用·管理한다.

②統一院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基金의 運用·管理에 관한 事務를 金融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③統一院長官이 基金運用計劃을 수립할 때에는 基金運用計劃중 經濟 및 財政·金融政策과 관련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經濟企劃院長官 및 財務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④基金의 運用·管理에 관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는 南北交流協力에 관한法律 第4條의 規定에 의한 南北交流協力推進協議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1. 基金의 運用·管理에 관한 基本政策

2. 基金運用計劃

3. 決算報告事項

4. 기타 統一院長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第8條(基金의 用途) 基金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用途에 사용한다.

1. 南北의 住民의 南北間 往來에 필요한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2. 文化·學術·體育分野 協力事業에 소요되는 資金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3. 交易 및 經濟分野 協力事業을 促進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資金의 南韓住民(法人·團體를 포함한다)에 대한 지원 또는 融資
4. 南北交流·協力を 促進하기 위하여 換錢等 代金決済의 편의를 제공해 주거나 資金을 融資해 주는 金融機關에 대한 資金支援 損失補填과 金融機關으로부터 大統領令이 정하는 非指定通貨의 引受
5. 기타 民族의 信賴와 民族共同體 회복에 이바지하는 南北交流·協력에 필요한 資金의 融資·지원 및 南北交流·協力を 增進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6. 借入金 및 債券의 元利金 償還
7. 基金의 造成·運用 및 管理를 위한 經費의 支出

第9條(基金의 會計機關) ①統一院長官은 基金의 收入과 支出에 관한 事務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所屬 公務員중에서 基金出納命令官과 基金出納公務員을 任命한다.

②第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基金의 運用·管理에 관한 事務를 委託한 경우에는 統一院長官은 委託받은 銀行의 理事중에서 基金出納擔當理事를, 그 職員중에서 基金出納職員을 각각 任命할 수 있다. 이 경우 基金出納擔當理事는 基金出納命令官의 職務를, 基金出納職員은 基金出納公務員의 職務를 각각 수행한다.

③會計關係職員等의 責任에 관한 法律중 歲入徵收官과 財

務官에 관한 規定은 基金出納命令官과 基金出納擔當理事에게, 支出官과 出納公務員에 관한 規定은 基金出納公務員과 基金出納職員에게 각각 이를 準用한다.

第10條(一時借入) ①統一院長官은 基金의 運用上 필요한 때에는 基金의 부담으로 韓國銀行 기타 金融機關으로부터 資金을 一時借入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一時借入金은 당해 會計年度에 償還하여야 한다.

第11條(보고 및 還收) ①統一院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基金을 사용하는 者에게 그 使用計劃 및 使用結果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統一院長官은 基金을 사용하는 者가 당해 基金支出目的외에 사용한 때에는 支出된 基金의 전부를 還收할 수 있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基金의 還收에 대하여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한다.

第12條(餘裕資金의 運用) 統一院長官은 基金에 餘裕資金이 있을 때에는 다음 各號의 방법으로 이를 運用할 수 있다.

1. 國債·公債의 買入
2. 財政投融資特別會計에의 預託
3. 金融機關에의 短期預置
4.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方法

第13條(利益 및 缺損의 처리) ①基金의 決算上 利益金이 생긴 때에는 이를 全額 積立하여야 한다.

②基金의 決算上 損失金이 생긴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積立金으로 補填하고, 그 積立金으로 부족한 때에는 政府가 豫算의 범위안에서 이를 補填할 수 있다.

第14條(監督 및 命令) 統一院長官은 第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基金의 運用·管理에 관한 事務를 委託할 경우에는 그 委託事務를 監督하며, 이에 필요한 命令을 할 수 있다.

附 則

이 法은 公布후 60日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附 則<90. 12. 27>

第 1 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但書省略>

第 2 條 내지 第10條 省略

4.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제정 1990.12.31 대통령령 제13237호

개정 1991. 2. 1 대통령령 제13269호(통일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 1 조(목적) 이 영은 남북협력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기금의 재원) 법 제4조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1.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 과정에서 징수되는 수입금
2. 남북교류·협력사업 시행과정에서 징수되는 수입금

제 3 조(채권의 발행) ①통일원장관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북협력기금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채권의 발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1. 발행의 이유
2. 발행요청액
3. 액면금액의 종류
4. 소화계획
5. 발행조건
6. 기타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

②채권의 이자율은 재무부장관이 발행당시의 국·공채 및 보증사채등의 금리수준을 고려한 시장실세금리를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③채권은 액면금액 또는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제 4 조(채권사무의 취급) 통일원장관은 기금의 효율적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채권의 매출 및 상환등에 관한 사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 5 조(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통일원장관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수출입은행장(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그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다.

②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사무를 행함에 있어서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③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운용·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6 조(기금운용계획) ①통일원장관은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운영계획 총칙
2. 재원별 기금조성계획

3. 자금사용계획
4. 추정대차대조표
5. 추정손익계산서
6.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 7 조(기금의 지원등의 절차)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통일원장관에게 기금의 지원, 용자, 손실보전 또는 비지정통화의 인수(이하 “지원등”이라 한다)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일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지원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기금의 지원등을 결정하되, 총리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인 경우에는 재무부장관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
2. 법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문화부장관·체육청소년부장관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
3. 법 제8조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인 경우에는 경제기획원장관·재무부장관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

③통일원장관은 기금의 지원등을 결정하기 전에 기금수탁관리자로 하여금 기금의 지원등의 타당성·규모 및 조건등을 검토한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통일원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지원등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제 8 조(기금의 지원등의 요건) 기금의 지원등의 요건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으며 기금의 지원등의 요건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리규정(이하 “기금운용관리규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법 제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용자는 협의회의 의결로써 남북교류·협력의 시행시기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한국수출입은행 기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일반적인 조건의 용자로서는 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손실보전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환전업무등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통화의 인수비용, 환거래비용,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 기타 부대경비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따른 대금결제업무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손실의 지원 및 채권의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대한 용자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기타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의 지원·용자와 관련하여 발생한 경비의 지원 또는 손실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법 제8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용자·지원 및

사업의 지원은 남한과 북한의 당국간의 합의 또는 협의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9조(지원의 방법) ①법 제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의 시행을 위한 보증 또는 동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그 손실을 보조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 및 손실보조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사항외에 그 요건·절차·수수료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비지정통화) 법 제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지정통화”라 함은 북한에서 발행되어 유통되는 화폐를 말한다.

제11조(회계기관의 임명통지) 통일원장관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출납명령관(기금출납담당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기금출납공무원(기금출납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임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감사원·재무부장관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기금계정의 설치) 통일원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남북협력기금 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기금은 출연금, 차입금, 채권발행자금, 회수금,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기타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수입으로 한다.

②기금은 지원금, 융자금, 비지정통화의 인수금, 원리금 상환금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그 지

출로 한다.

제15조(결산보고서) ①통일원장관은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16조(기금의 계리) ①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회계를 한국수출입은행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계리는 기업회계원칙에 의한다.

제17조(기금의 사용계획·결과보고) ①기금의 지원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의 지원등을 신청할 때에 기금사용계획서를, 기금의 지원등을 받아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기금사용결과보고서를 각각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사용계획서 및 기금사용결과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기금의 환수)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환수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당해 기금출납명령관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환수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통일원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통일원장관은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환수에 관하여 법과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19조(여유자금의 운용) 법 제12조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유가증권의 매입을 말한다.

제20조(기금운용관리규정) ①통일원장관은 법 및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지원등의 조건·절차·방법·사후관리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통일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관리규정을 정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Ⅲ. 북한의 대외경제 관련 법령

1. 사회주의 헌법*(경제분야)

제2장 경 제

제1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와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한다.

제2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협동단체만이 소유한다.

제21조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중요 공장의 기업소, 항만, 은행, 교통운수와 체신기관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국가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국가소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장성시킨다.

제22조 협동단체소유는 협동경영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이다.

토지, 부림짐승, 농기구, 고기배, 건물 같은 것과 중소공장, 기업소는 협동단체가 소유할 수 있다.

국가는 협동단체 소유를 보호한다.

제23조 국가는 농민들의 사상의식과 기술문화수준을 높이고, 협동적 소유에 대한 전인민적 소유의 지도적 역할을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며, 협동경영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여 사회주의적 협동경영체도를 공고 발전시키며, 협동단체에 들어 있는 전체 성원들

*1972.12.27제정, 1992.4.29개정

의 자원적 의사에 따라 협동단체 소유를 점차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킨다.

제24조 개인소유는 근로자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근로자들의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 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 혜택으로 이루어진다.

협동농장원들의 터발경리를 비롯한 주민의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근로자들의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제2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자기활동의 최고 원칙으로 삼는다.

세금이 없어진 우리나라에서 끊임없이 늘어나는 사회의 물질적 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 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하여 준다.

제2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 민족경제는 인민의 행복한 사회주의 생활과 조국의 자주적 발전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로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인민경제를 고도로 발전된 주체적인 경제로 만들며, 완전한 사회주의 사회에 맞는 물질기술적 토대를 쌓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27조 기술혁명은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고리이다.

국가는 언제나 기술발전 문제를 첫자리에 놓고 모든 경제활동을 진행하며, 과학기술 발전과 인민경제의 기술개조를 다그치고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을 힘있게 벌려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노동에서 해방하며,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차이를 줄여나간다.

제28조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 노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쳐 농업을 공업화하며 균의 역할을 높이고 농촌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한다.

국가는 협동농장의 생산시설과 농촌문화주택을 국가부담으로 건설하여 준다.

제29조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근로대중의 창조적 노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노동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노동이다.

국가는 실업을 모르는 우리 근로자들의 노동이 보다 즐거운 것으로, 사회와 집단과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 열성과 창발성을 내어 일하는 보람찬 것으로 되게 한다.

제30조 근로자들의 하루 노동시간은 8시간이다.

국가는 노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 노동시간을 이보다 짧게 정한다.

국가는 노동조직을 잘하고 노동규률을 강화하여 노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한다.

제3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이 노동하는 나이는 16살부터이다.

국가는 노동하는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노동을 금지한다.

제32조 국가는 사회주의 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정치적 지도와 경제기술적 지도,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매개단위의 창발성, 유일적 지휘와 민주주의, 정치 도덕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을 옹계 결합시키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

제33조 국가는 생산자 대중의 집체적 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사회주의 경제관리 형태인 대안의 사업체계와 농촌경리를 기업적 방법으로 지도하는 농업지도체계에 의하여 경제를 지도 관리한다.

제3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경제는 계획경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 경제발전 법칙에 따라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옹기 잡으며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며 국방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민경제 발전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을 관철하여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보장한다.

제3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경제 발전계획에 따르는 국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국가는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 절약투쟁을 강화하고 재정통제를 엄격히 실시하여 국가축적을 체계적으로 높이며 사회주의적 소유를 확대 발전시킨다.

제3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외무역은 국가가 하거나 국가의 감독 밑에서 한다.

국가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무역을 발전시킨다.

제37조 국가는 우리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 합영과 합작을 장려한다.

제38조 국가는 자립적 민족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정책을 실시한다.

2. 외국인투자법*

제1조 세계 여러나라들과의 경제협조를 확대 발전시키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외국투자자들이 공화국 영역 안에 투자하는 것을 장려한다.

제2조 이 법은 외국투자자들이 외국인투자기업을 창설 운영하는 일반원칙과 질서를 포괄적으로 규제한다.

외국투자자란 공화국 영역 안에 투자하는 다른나라의 법인과 개인을 말한다.

외국투자기업이란 공화국 영역 안에 설립한 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을 말한다.

합작기업이란 우리측 투자자와 외국측 투자자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우리측이 운영하며, 계약조건에 따라 상대측에 투자몹을 상환하거나 리윤을 분배하는 기업을 말한다.

합영기업이란 우리측 투자자와 외국측 투자자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며, 투자몹에 따라 리윤을 분배하는 기업을 말한다.

외국인기업이란 외국투자자가 단독으로 투자하여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외국투자자는 공화국 영역 안에 합작기업, 합영기업을 설립할 수 있으며,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외국인기업을 창설,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국가는 공화국의 법에 따라 외국투자자와 외국인투자기업의 합법적 권리와 리익을 보장한다.

*1992. 10. 5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5조 다른나라의 기관, 회사, 기업체들과 개인 및 기타 경제조직들은 공화국령역 안에 투자할 수 있다.

공화국령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도 이 법에 따라 투자할 수 있다.

제6조 외국투자가는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채신, 과학기술, 관광, 유통, 금융을 비롯한 여러 부문에 투자할 수 있다.

제7조 국가는 첨단기술을 비롯한 현대적 기술과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부문, 자원개발 및 하부구조건설부문,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부문에 대한 투자를 특별히 장려한다.

제8조 장려하는 부문에 투자하여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은 소득세를 비롯한 여러가지 세금의 감면, 유리한 토지사용조건의 보장, 은행대부의 우선적 제공과 같은 우대를 받는다.

제9조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과 같은 특혜적인 경영활동 조건을 보장받는다.

1. 국가가 따로 정한 품목을 내놓고는 수출입물자에 대하여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2. 리윤이 나는 해로부터 3년까지 소득세를 물지 않으며, 그 다음 2년까지 소득세를 50%범위에서 덜어 줄 수 있다. 소득세율은 다른 지역보다 낮추어 결산리윤의 14%로 한다.

제10조 국가는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기업을 창설하거나 그 운영을 위하여 입출국하는 외국투자가들의 수속 절차와 방법을 편리하게 정하도록 한다.

제11조 민족경제 발전과 나라의 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지고 환경보호의 요구에 저촉되는 대상

의 투자는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제12조 외국투자자는 화폐재산, 현물재산, 공업소유권, 기술비결을 비롯한 재산과 재산권으로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하는 재산과 재산권의 가치는 해당 시기의 국제시장 가격에 기초하여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에 따라 평가한다.

제13조 외국인투자기업은 우리나라나 다른나라에 지사, 대표부, 출장소를 내오거나 새끼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또는 다른나라의 회사들과 기업을 연합할 수도 있다.

제14조 공화국령역 안에 설립한 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 기업은 우리나라의 법인으로 된다.

공화국령역 안에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사, 대표부, 출장소는 우리나라의 법인으로 되지 않는다.

제15조 국가는 외국투자자와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에 필요한 토지를 최고 50년까지 임대하여 준다.

임대하여 준 토지는 임대받은 기간 안에 해당 기관의 승인 밑에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

제16조 외국인투자기업은 우리나라 로력을 채용하여야 한다.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관리인원과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은 정무원 대외경제기관과의 합의밑에 다른나라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 로력은 해당 노동기관과 계약을 맺고, 그에 따라 채용하거나 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외국투자자와 외국인투자기업은 공화국의 해당 법에 따라 소득세, 기업운영세, 재산세를 비롯한 세금을 물어야 한다.

제18조 외국투자자는 리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화국령역 안에 재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투자분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소득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제19조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투자가가 투자한 재산은 국유화하거나 국가가 거두어들이지 않는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국유화하거나 거두어들일 경우에는 해당 보상을 한다.

제20조 외국투자가가 기업운영에서 얻은 합법적 리윤과 기타 수입, 기업을 청산하고 남은 자금은 공화국의 외화관리와 관련한 법과 규정에 따라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

제21조 국가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비밀을 법적으로 보장하며 외국투자가와의 합의없이 공개하지 않는다.

제22조 외국인 투자와 관련한 의견 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분쟁사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해당 절차에 따라 심의 해결하며, 합의에 따라 다른나라의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

3. 합 작 법*

제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작법은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나라들 사이의 경제협력과 기술교류를 확대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 2 조 합작기업은 우리측 투자자와 외국측 투자자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우리측이 생산과 경영을 하며, 합작계약 조건에 따라 상대측의 투자몹을 상환하거나 리윤을 분배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 3 조 합작기업은 수출할 수 있는 제품, 선진기술이 도입된 제품을 생산하는 부문에 조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관광, 봉사부문에도 조직할 수 있다.

제 4 조 국가는 외국투자가가 현대적인 설비와 첨단기술을 투자하거나,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부문에 투자하는 것을 장려한다.

제 5 조 공화국령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도 이 법에 따라 합작을 할 수 있다.

제 6 조 합작을 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상급기관과 협의하고 외국투자가와 합작계약을 맺은 다음,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에 합작신청서를 내야한다. 이 때 신청서에는 계약서, 경제기술타산서를 비롯한 해당한 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 7 조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은 합작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0일 안으로 그에 대하여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992. 10. 5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8조 합작기업은 합작이 승인된 후 30일 안에 해당기업 소재지의 도(직할시) 행정경제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날이 합작기업 창설일로 된다.

제9조 합작기업은 승인된 합작 업종을 마음대로 변경시킬 수 없다.

승인된 업종을 변경시키려고 할 경우에는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합작을 하는 일방이 자기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려고 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다음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합작기업은 계약에 따라 외국투자자측의 기술자를 받아 쓰거나, 정무원 대외경제기관과의 합의 밑에 제3국의 기술자를 채용하여 쓸 수 있다.

제12조 합작기업은 국가가 승인한데 따라 생산 및 경영에 쓸 물자를 수입할 수 있으며, 생산한 제품을 수출할 수 있다.

제13조 외국투자자의 투자에 대한 상환과 리윤분배는 합작 제품으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쌍방의 합의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제14조 합작기업에서 생산된 제품과 얻은 수입은 합작계약에 따라 상환 또는 분배의무를 리행하는데 먼저 쓸 수 있다.

제15조 외국투자자가 합작기업에서 얻은 합법적 리윤, 기타 수입은 공화국의 외화관리와 관련한 법과 규정에 따라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

제16조 합작 당사자들은 비상설적인 공동협의 기구를 조직할 수 있다.

공동협의 기구에서는 새 기술 도입과 제품의 질 제고, 재투자를 비롯한 합작경영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들을 협의한다.

제17조 합작기업은 경영활동에 대한 결산을 월별, 분기별, 년별로 한다.

합작기업은 규정에 따라 재정부기결산서를 해당기관에 제출하며 재정은행 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합작기업은 계약에 따라 리운을 분배하는 경우 법이 정한데 따라 세금을 물어야 한다.

제19조 합작 당사자들 가운데서 어느 일방이 합작계약 의무를 리행하지 않아 기업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의 승인 밑에 합작기업을 해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은 계약의무를 리행하지 않은 당사자가 진다.

제20조 합작은 합작기간이 다 되면 끝난다.

합작기업은 합작기간이 끝나거나 기한 전에 해산하는 경우 법이 정한데 따라 채권 채무관계를 청산하며, 등록취소 수속을 하여야 한다.

합작 당사자들이 합작기간이 끝난 후에도 합작을 계속하려고 할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에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 합작과 관련한 의견 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분쟁 사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해당절차에 따라 심의 해결한다.

4. 합 영 법*

제 1 장 합영의 기본

제 1 조 세계의 여러나라들과의 경제기술 교류와 협조를 확대 발전시키는 것은 조선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일관한 대외경제정책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공화국의 영역 안에서 우리나라의 회사, 기업소와 다른나라의 회사, 기업소, 개인 사이에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합영하는 것을 장려한다.

제 2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합영은 공업, 건설, 운수, 과학기술, 관광업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할 수 있다.

제 3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다른나라 합영당사자가 출자한 재산과 기업운영에서 얻은 소득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 4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합영당사자들의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공화국법이 규정한 모든 합법적 권리를 보장한다. 합영회사는 모든 활동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 규범과 규정을 존중하며, 그것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제 5 조 재일조선상공인들을 비롯하여 해외에 거주하는 조선동포들도 이 법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의 회사, 기업소와 합영할 수 있다.

*1984. 9. 8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 2 장 합병회사의 조직

제6조 합병회사는 당사자들이 회사조직에 관한 계약을 맺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기관의 승인을 받은 다음 해당 기관에 등록하였을 때 조직된다.

제7조 합병회사의 출자하는 몫은 합병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정한다. 합병당사자들은 화폐대상, 현물재산과 발명권, 기술문헌 등으로 출자할 수 있다. 현물재산, 발명권, 기술문헌 등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 값을 국제시장 가격에 준하여 합병당사자들이 평가한다.

제8조 합병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회사의 빚에 대하여 합병당사자들은 출자몫 안에서만 책임진다. 합병회사의 한편 당사자가 자기의 출자몫을 제3자에게 넘겨주려고 할 때에는 상대방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9조 합병회사는 등록된 자금을 줄일 수 없다.

제 3 장 리사회와 경영활동

제10조 합병회사는 리사회를 둔다. 리사회는 합병회사의 최고결의기관이다. 합병회사는 규약을 가지며 그에 따라 경영활동을 한다.

제11조 리사회는 합병회사 규약의 채택 및 수정 보충, 합병회사의 발전대책, 경영활동계획, 결산과 분배, 관리성원의 임명 및 해임, 재정검열원의 임명 등 합병회사의 중요한 문제를 토의 결정한다.

제12조 회사 사장은 합병회사 조직에 관한 계약, 합병회사 규약 및 리사회의 결정에 따라 회사의 경영활동을 조직, 진행하며 자기사업에 대하여 리사회 앞에 책임진다.

제13조 합영회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은행에 돈자리를 두며, 합영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다른나라 은행에도 돈자리를 둘 수 있다. 합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은 다른나라 은행에서 대부받을 수 있다.

제14조 합영회사가 생산에 필요한 원료, 자료, 반제품들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안에서 사 쓸때, 그 가격은 국제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합영회사가 대외시장에서 물자를 수입할 때는 관세를 물리지 않는다.

제15조 합영회사는 자기의 생산제품을 대외시장에 수출할 수 있다.

제16조 합영회사가 종업원을 받아들이고 내보내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법과 합영 쌍방의 계약에 따라 로력을 관리하며 리용한다.

제17조 합영회사에서 일하는 다른 나라 사람은 자기가 받은 로임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합영회사에서 일하는 다른 나라 사람은 로임의 일부를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

제 4 장 결산과 배분

제18조 합영회사는 해마다 한번씩 정기적으로 경영활동을 결산하여야 한다. 결산은 총수입에서 원가를 보상하고 소득세를 바친 다음, 예비기금, 생산확대 및 기술발전기금을 비롯한 필요한 자금을 공제한 나머지 기금을 합영 쌍방의 출자몹에 따라 배분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9조 합영회사는 예비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예비기금의 규모와 해마다 조성하는 비율은 따로 정한다. 예비기금

- 은 합병회사에서 결손된 자금을 보충하는데 쓴다.
- 제20조 합병회사의 결산문건은 재정검열원의 검열과 리사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 제21조 합병회사는 결산 기마다 순소득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병회사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합병회사는 생산을 시작한 때로부터 일정한 기간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합병회사는 토지를 사용할 때 토지사용료를 물어야 한다.
- 제22조 다른나라 합병당사자는 분배받은 돈을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

제 5 장 합병회사의 해산과 분쟁해결

- 제23조 합병회사는 계약에 규정된 존속기간이 끝나면 해산된다. 합병회사를 계속 운영하려면 존속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에 해당기관에 제기하여야 한다.
- 제24조 합병회사는 계속하여 결손을 내거나 합병회사의 한편 당사자가 자기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리사회의 결정에 따라 존속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산할 수 있다.
- 제25조 합병회사를 해산할 때에는 현행업무를 결속하고 남은 재산을 출자몫에 따라 합병당사자들 사이에 분배한다.
- 제26조 합병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의견 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분쟁문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심의한다. 쌍방의 합의에 따라 제3국의 중재기관에 분쟁문제의 심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5. 외국인기업법*

제 1 장 외국인기업법의 기본

제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세계 여러나라들과의 경제관계를 확대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른나라의 법인과 개인들이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외국인기업을 창설 운영하는 것을 허용한다.

제 2 조 외국인기업은 외국투자자가 기업 설립에 필요한 자본의 전부를 투자하여 창설하며, 독자적으로 경영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 3 조 외국투자자는 전자공업, 자동화공업, 기계제작공업, 식료가공공업, 피복가공공업, 일용품공업과 운수 및 봉사를 비롯한 여러 부문에서 외국인기업을 창설 운영할 수 있다. 나라의 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기술적으로 뒤떨어진 기업은 창설할 수 없다.

제 4 조 국가는 외국투자자가 투자한 자본과 기업운영에서 얻은 소득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 5 조 외국투자자는 공화국의 법과 규정을 존중하고 철저히 지켜야 하며, 인민경제발전에 저해를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 6 조 공화국 령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도 이 법에 따라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독자적으로 기업을 창설 운영할 수 있다.

*1992. 10. 5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 2 장 외국인기업의 창설

제7조 외국인기업을 창설하려는 외국투자자는 외국인기업 창설신청서를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에 내야 한다.

이 때 신청서에는 기업의 규약, 경제기술타산서, 투자자의 자금신용확인서를 비롯하여 심의 기준에 필요한 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은 외국인기업 창설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80일 안에 관계기관들과의 협의를 거쳐 그 창설을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9조 외국투자자는 기업창설이 승인되면 30일 안에 기업소재지의 도행정경제위원회에 기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기업을 등록한 날이 외국인기업 창설일로 된다.

외국인기업은 기업을 등록한 날부터 20일 안에 기업소재지의 재정기관에 세무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외국인기업은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의 승인 밑에 우리나라 또는 다른나라에 새끼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또는 다른나라의 회사들과 기업을 연합할 수도 있다.

제11조 외국투자자는 외국인기업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건설을 우리나라 해당 건설기관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

제12조 외국투자자는 승인받은 외국인기업 창설신청서에 지적된 기간 안에 투자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한 기간안에 투자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투자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은 외국투자자가 투자기간 안에 정당한 이유없이 투자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미 승인한 외국인기업 창설을 취소할 수 있다.

제 3 장 외국인기업의 경영활동

제14조 외국인기업은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이 승인한 기업의 규약 범위 안에서 경영활동을 진행하여야 한다.

제15조 외국인기업은 기업을 등록한 도행정경제위원회에 생산 및 수출입 계획을 내야 한다.

제16조 외국인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우리나라에서 구입하거나 다른나라에서 들여올 수 있으며, 생산한 제품을 수출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에 팔 수도 있다.

제17조 외국인기업이 우리나라의 원료, 자재, 설비를 사거나 생산한 제품을 우리나라에 파는 것은 공화국의 해당 무역기관을 통하여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제18조 외국인기업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역은행에 돈자리를 두어야 한다.

외국인기업은 외화관리기관과의 합의 밑에 우리나라의 다른은행이나 다른나라 은행에 돈자리를 둘 수도 있다.

제19조 외국인기업은 기업 소재지 안에 부기장부를 두어야 하며, 경영계산을 공화국의 외국인투자기업과 관련한 재정부기계산규범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20조 외국인기업은 기업운영과 관련한 로력을 기업 소재지의 로동기관과 맺은 계약에 따라 우리나라 로력으로 채용하여야 하며, 채용한 로력을 해고할 수 있다.

외국인기업이 다른나라 기술자, 기능공을 채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정무원 대외경제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21조 외국인기업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은 직업동맹조직을 내올 수 있다.

직업동맹조직은 공화국 로동법규에 따라 종업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외국인기업과 로동조건 보장과 관련

한 계약을 맺고 그 리행을 감독한다.

외국인기업은 직업동맹조직의 활동조건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제22조 외국인기업은 기업운영에서 얻은 합법적 리윤을 재 투자할 수 있으며, 공화국의 외화관리와 관련한 법과 규정에 따라 국외로 송금할 수도 있다.

제23조 외국인기업이 보험에 들려고 할 경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험에 들어야 한다.

제24조 외국인기업은 법이 정한데 따라 세금을 물어야 한다.

제25조 외국인기업이 생산과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들여오거나 생산한 제품을 수출할 때에는 그에 대하여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26조 외국인기업은 등록자본을 늘일 수 있다.

외국인기업이 등록자본을 다른사람에게 양도하려고 할 경우에는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외국인기업은 존속기간 안에 등록자본을 줄일 수 없다.

제27조 정무원 대외경제기관과 재정기관은 외국인기업의 투자 및 세무정형을 검열 감독할 수 있다.

제 4 장 외국인기업의 해산과 분쟁해결

제28조 외국인기업은 승인된 존속기간이 끝나면 해산된다.

외국투자가는 존속기간이 끝나기 전에 기업을 해산하려고 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려고 할 경우에는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은 외국투자가와 외국인기업이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 그 정상에 따

라 기업을 중지 또는 해산시키거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제30조 외국투자자는 외국인기업이 해산되거나 파산되는 경우 기업을 등록한 도행정경제위원회에 해산 또는 파산등록을 하여야 한다.

외국인기업의 재산은 청산수속이 끝나기 전에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다.

제31조 외국인 기업과 관련한 의견 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분쟁사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해당 절차에 따라 심의 해결한다.

6.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제 1 장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의 기본

제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은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에게 세금을 공정하게 부과하고 납세자들이 세금을 제때에 정확히 바치도록 하는데 이바지한다.

제 2 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의 세무등록은 소재지나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한다. 기업을 설립하거나 통합, 분리, 해산하는 경우에는 등록한 날부터 20일 안으로 해당 재정기관에 세무등록, 변경, 취소 수속을 한다.

외국투자기업에는 공화국의 법인인 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과 공화국의 법인이 아닌 외국기업이 속한다.

제 3 조 외국투자기업의 재정부기 계산은 외국인투자기업과 관련한 공화국의 재정부기 계산규범에 따라 한다.

재정부기 계산과 관련한 서류는 5년동안 보관한다. 필요에 따라 보관 기간을 늘일 수 있다.

제 4 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이 바치는 세금은 조선 원으로 계산하여 수익인이 직접 납부하거나 수익금을 지불하는 단위가 공제납부한다.

제 5 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의 세금납부 정형에 대한 감독 통제사업은 재정기관이 한다.

제 6 조 이 법은 공화국 영역 안에서 경제거래를 하거나 소득을 얻는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공화국

*1993. 1. 31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령역 안에서 경제거래를 하거나 소득을 얻는 공화국 령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7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자기나라 정부와 조선민주주인민공화국 정부 사이에 체결한 세금과 관련한 협정에서 이 법과 다르게 세금 문제를 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협정에 따라 세금을 바칠 수 있다.

제 2 장 기업소득세

제8조 외국투자기업은 공화국 령역 안에서 기업활동을 하여 얻은 소득과 우리나라 안에서 얻은 리자소득, 배당소득, 고정재산의 임대와 판매소득, 재산양도소득, 공업소유권, 기술비결, 경영과 관련한 봉사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을 비롯한 기타소득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를 바쳐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은 공화국 령역 밖에 지사, 출장소, 새끼회사 같은 것을 설치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서도 기업소득세를 바쳐야 한다.

제9조 기업소득세는 해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총수입에서 원료 및 자재비, 연료 및 동력비, 로력비, 감가상각금, 물자구입경비, 직장 및 회사관리비, 보험료, 판매비 같은 것을 포함한 원가와 기타 지출을 공제한 결산리윤에 정한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10조 외국투자기업은 분기가 끝난 다음 달 15일 안으로 소재지의 재정기관에 분기소득세 예정납부서와 재정부기결산서를 내며, 년도가 끝난후 2개월 안으로 연간 소득세납부서와 재정부기결산서를 내야 한다.

제11조 기업소득세는 분기별로 예정납부하고 연간결산에 의하여 확정납부한다.

예정납부는 분기가 끝난 다음 달 15일 안에 하며, 연간종합계산은 년도가 끝난 다음 3개월 안에 하여 과납액은 반환 받고 미납액은 추가 납부한다. 기업이 해산될 경우에는 해산선포일부터 20일 안으로 소재지의 재정기관에 납세담보를 세우며 청산이 끝난 날부터 15일 안으로 소득세를 납부한다. 기업이 통합되거나 분리될 경우에는 그 시기까지의 기업소득에 대하여 결산하고 통합, 분리 선포일부터 20일 안으로 소재지의 재정기관에 소득세를 납부한다.

제12조 외국투자기업의 소득세율은 결산리윤의 25%로 한다.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설립된 외국투자기업의 소득세율은 결산리윤의 14%로 한다. 국가가 장려하는 첨단기술부문, 자원개발과 하부구조 건설부문,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 부문의 기업소득세율은 10%로 한다.

제13조 외국기업이 공화국 령역 안에서 배당소득, 리자소득, 임대소득, 특허권사용료를 비롯한 기타소득을 얻은 경우, 소득세는 소득액에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는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14조 외국기업의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이 생긴 때로부터 15일 안으로 소재지의 재정기관에 수익인이 신고 납부하거나 수익금을 지불하는 단위가 공제납부한다.

제15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업소득세를 감면한다.

1. 다른나라 정부나 국제금융조직이 공화국정부와 국가은행에 차관을 주었거나 다른나라의 은행이 우리나라의 은행 또는 기업에 유리한 조건으로 대부를 주었을 경우, 그에 대한 리자소득에 대하여서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2. 장려부문과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생산부문 외국투자기업이 10년이상 기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기업소득세를 리윤이 나는 해로부터 3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2년간은 50

% 범위에서 덜어줄 수 있다. 10년 전에 철수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는 이미 감면받았던 소득세액을 바친다.

3. 봉사부문의 외국투자기업이 10년이상 기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기업소득세를 리윤이 나는 해로부터 1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2년간은 50% 범위에서 덜어줄 수 있다.
4.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총투자액이 6천만원 이상되는 철도, 도로, 통신, 비행장, 항만을 비롯한 하부구조 건설부문의 외국투자기업에 대하여서는 기업소득세를 리윤이 나는 해로부터 4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은 50% 범위에서 덜어줄 수 있다.

제16조 외국투자가가 기업에서 얻은 리윤을 공화국령역 안에 재투자하여 기업을 5년 이상 운영할 경우에는 재투자분에 대하여 납부한 소득세액의 50%를 반환받을 수 있으며, 하부구조 건설부문에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재투자분에 대하여 납부한 소득세액의 전부를 반환받을 수 있다. 경영기간이 5년이 되기 전에 재투자한 자본을 철수하는 경우에는 반환받은 소득세액을 바친다.

제 3 장 개인소득세

제17조 공화국령역 안에서 소득을 얻은 외국인은 개인소득세를 바쳐야 한다. 공화국령역 안에 1년이상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외국인은 공화국령역 밖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서도 개인소득세를 바쳐야 한다.

제18조 개인소득세를 바쳐야 할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로동보수에 의한 소득,
2. 배당소득,
3. 공업소유권과 기술비결, 저작권의 제공에 의한 소득,

4. 리자소득,
5. 임대소득,
6. 재산판매소득,
7. 증여소득,
8. 개인기업소득

제19조 개인소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로동보수에 의한 소득세는 월 로동보수액이 2천원 아래 일 경우에는 면제하며, 그 이상일 경우에는 이 법 부록 1에서 정한대로 한다.
2. 배당소득, 공업소유권과 기술비결, 저작권의 제공에 의한 소득, 리자소득, 임대소득에 의한 소득세율은 20%로 한다.
3. 증여소득에 의한 소득세율은 이 법 부록 2에서 정한대로 한다.
4. 재산판매소득, 개인기업소득에 의한 소득세율은 25%로 한다.

제20조 로동보수에 의한 개인소득세는 이 법 부록 1에서 정한 초과루진 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계산한다.

제21조 배당소득, 공업소유권과 기술비결, 저작권을 제공하여 얻은 소득, 증여에 의한 소득, 재산판매소득, 개인기업을 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소득액에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22조 리자소득에 의한 개인소득세는 은행에 예금하고 얻은 소득에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23조 고정재산 임대소득에 의한 개인소득세는 임대료에서 고정재산 처음 값의 20%에 해당하는 감가상각금을 제공한 금액에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24조 개인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납부한다.

1. 로동보수에 의한 소득, 리자소득에 의한 개인소득세는 수익금을 지불하는 단위가 다음 달 15일 안으로 소재지의 재정기관에 공제납부한다.
공화국 은행에 저축성 예금을 한 돈과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있는 비거주자들 사이의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은행에 예금한 돈에 의한 리자는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2. 재산판매소득, 증여소득에 의한 개인소득세는 분기 다음 달 10일 안으로, 개인기업을 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다음 달 15일 안으로 수익인이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신고납부한다.
3. 배당소득, 공업소유권과 기술비결, 저작권을 제공하여 얻은 소득, 임대소득에 의한 개인소득세는 분기가 끝난 다음 달 10일 안으로 수익금을 지불하는 단위가 해당 재정기관에 공제납부하거나 수익인이 신고납부한다.

제 4 장 재산세

제25조 외국인은 공화국 령역 안에 가지고 있는 건물과 선박, 비행기에 대하여 재산세를 바쳐야 한다.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서는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5년간 면제한다.

제26조 외국인은 재산을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다음과 같이 등록하여야 한다.

1. 재산은 공화국 령역 안에서 소유한 때로부터 20일 안에 평가값으로 등록한다.
2. 재산의 소유자와 등록값이 달라졌을 경우에는 20일 안으로 변경등록을 한다.
3. 재산은 해마다 1월 1일 현재로 평가하여 2월 안으로 재

등록을 한다.

4. 재산을 폐기하였을 경우에는 20일 안으로 등록취소 수속을 한다.

제27조 재산세의 과세대상액은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등록된 값으로 한다.

제28조 재산세의 세율은 이 법 부록 3에서 정한대로 한다.

제29조 재산세는 재산을 등록한 다음 달부터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등록된 값에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30조 재산세는 분기가 끝난 다음 달 20일 안으로 재산소유자가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납부한다.

제 5 장 상속세

제31조 공화국 령역 안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는 외국인은 상속세를 바쳐야 한다. 공화국 령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공화국 령역 밖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았을 경우에도 상속세를 바쳐야 한다.

제32조 상속세의 과세대상액은 상속자가 상속받은 재산 가운데서 상속시키는 자의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제33조 상속재산값의 평가는 해당 재산을 상속받을 때의 가격으로 한다.

제34조 상속세의 세율은 이 법 부록 4에서 정한대로 한다.

제35조 상속세는 과세대상액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36조 상속세는 상속자가 상속을 받은 때로부터 3개월 안으로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신고납부한다.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액이 5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거주지

의 재정기관에 신청하여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제 6 장 거래세

제37조 생산물 판매와 봉사를 하는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거래세를 바쳐야 한다.

제38조 거래세의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생산부문에서는 생산물 판매에 의한 수입금
2. 상업부문에서는 상품판매액
3. 교통운수, 금융, 관광을 비롯한 봉사부문에서는 봉사수입금

제39조 거래세의 세율은 이 법 부록 5에서 정한대로 한다.

제40조 거래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생산부문의 거래세는 품종별 생산물 판매액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2. 상업부문의 거래세는 품종별 상품판매액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3. 교통운수, 금융, 관광을 비롯한 봉사부문의 거래세는 봉사수입금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41조 거래세는 다음과 같이 납부한다.

1. 생산부문의 거래세는 달마다 판매자가 다음 달 10일 안으로 소재지의 재정기관에 납부한다.
2. 상업, 교통운수, 금융, 관광을 비롯한 각종 봉사부문의 거래세는 달마다 봉사기관이 다음 달 10일 안으로 소재지의 재정기관에 납부한다.

제42조 다음과 같은 대상에는 거래세를 감면한다.

1. 수출상품에 대하여서는 거래세를 면제한다. 국가가 수출을 제한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데 따라 거래세

를 납부한다.

2.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의 상업, 교통운수, 금융, 관광을 비롯한 봉사부문에 대하여서는 거래세를 50%로 한다.

제 7 장 지방세

제43조 외국투자기업과 거주한 외국인은 지방세를 소재지 또는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바쳐야 한다. 지방세에는 도시경영세, 등록면허세, 자동차 리용세가 속한다.

제44조 외국투자기업과 거주한 외국인은 공원과 도로, 오물처리시설과 같은 공공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도시경영세를 바쳐야 한다.

제45조 도시경영세의 과세대상액은 외국투자기업인 경우에는 기업소 로임총액, 거주한 외국인인 경우에는 월 수입으로 한다.

제46조 도시경영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납부한다.

1. 외국투자기업은 기업소 로임 총액에 1% 세률로 달마다 계산하여 다음 달 10일 안으로 소재지의 재정기관에 납부한다.
2. 거주한 외국인이 바치는 도시경영세는 월 수입에 1%의 세률로 달마다 계산하여 다음 달 10일 안으로 해당 재정기관에 본인이 신고납부하거나 로임을 지불하는 단위가 공제납부한다.

제47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기업이나 광업권, 어업권 같은 것을 등록할 경우와 기술자격면허증 같은 증서를 받을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바쳐야 한다.

제48조 등록면허세는 건당 정해진 세액을 해당 등록단위와 면허증 발급단위가 받아 소재지의 재정기관에 납부한다.

제49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자동차를 리용할 경우에 자동차 리용세를 바쳐야 한다.

제50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자동차를 소유한 때로부터 30일 안으로 소재지 또는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51조 자동차 리용세는 해마다 2월 안으로 자동차 리용자가 소재지 또는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납부한다. 자동차를 리용하지 않는 기간에는 소재지 또는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신고한데 따라 자동차 리용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제52조 등록면허세와 자동차 리용세의 세액은 이 법 부록 6에서 정한대로 한다.

제 8 장 제재 및 신고청원

제53조 재정기관은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이 세금을 정한 기일안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납부기일이 지난 날로부터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하여 매일 0.3%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물린다.

제54조 재정기관은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 공제납부자에게 다음과 같은 경우에 벌금을 물린다.

1. 세무수속을 제때에 하지 않았거나 소득세 납부서, 소득세 공제납부서, 재정부기 결산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2천원까지 물린다.
2. 공제납부자가 세액을 적게 공제하였거나 공제한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2배까지 물린다.
3. 고의적으로 세금을 바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세액의 4배까지 물린다.

제55조 이 법을 어긴 행위가 엄중한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운다.

제56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세금납부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30일 안으로 신소청원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신소청원은 세금을 받은 재정기관의 해당 상급기관에, 소송은 해당 재판소에 제기한다.

제57조 재정기관은 신소청원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으로 신소청원의 내용을 심의처리하여야 한다. 신소청원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처리받은 날부터 10일 안으로 해당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부록1. <로동보수에 의한 소득세율표>

월 로동보수액 2천 1원부터 3천원까지 세를 2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

월 로동보수액 3천 1원부터 4천원까지 세를 40원 더하기 3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월 로동보수액 4천 1원부터 5천원까지 세를 90원 더하기 4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6%,

월 로동보수액 5천 1원부터 6천원까지 세를 150원 더하기 5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7%,

월 로동보수액 6천 1원부터 7천원까지 세를 220원 더하기 6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8%,

월 로동보수액 7천 1원부터 8천원까지 세를 300원 더하기 7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9%,

월 로동보수액 8천 1원부터 9천원까지 세를 390원 더하기 8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

월 로동보수액 9천 1원부터 1만원까지 세를 490원 더하기

9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월 로동보수액 1만 1원 이상은 세를 640원 더하기 1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부록 2. <증여에 의한 소득세률표>

증여소득액 1만 1원부터 2만원까지 세를 5%,
증여소득액 2만 1원부터 4만원까지 세를 10%,
증여소득액 4만 1원부터 8만원까지 세를 15%,
증여소득액 8만 1원부터 20만원까지 세를 20%,
증여소득액 20만 1원부터 40만원까지 세를 25%,
증여소득액 40만 1원부터 80만원까지 세를 30%,
증여소득액 80만 1원 이상은 세를 35%.

부록 3. <재산세의 세률표>

건물의 세률은 등록값의 1%,
선박의 세률은 등록값의 1.4%,
비행기의 세률은 등록값의 1.4%.

부록 4. <상속세의 세률표>

상속액 20만 1원부터 35만원까지 세를 6%,
상속액 35만 1원부터 60만원까지 세를 8%,
상속액 60만 1원부터 80만원까지 세를 10%,
상속액 80만 1원부터 120만원까지 세를 12%,
상속액 120만 1원부터 250만원까지 세를 14%,
상속액 250만 1원부터 400만원까지 세를 16%,
상속액 400만 1원부터 800만원까지 세를 18%,
상속액 800만 1원부터 2천만원까지 세를 20%,
상속액 2천만 1원부터 5천만원까지 세를 25%.

상속액 5천만 1원 이상은 세율 30%.

부록 5. <거래세의 세율표>

생산부문의 세율은 생산물 판매액의 1.5%부터 20%까지,
술, 담배와 같은 제한하는 상품은 21%부터 60%까지,
상업부문의 세율은 상품판매액의 2%,
봉사부문의 세율은 봉사수익금의 2%로부터 4%까지.

부록 6. <지방세액표>

1. 등록면허세

1) 기업등록

설립등록 세액 건당 500원부터 1천원까지,
변경등록 세액 건당 40원,
취소등록 세액 건당 40원.

2) 광업권 등록

처음등록 세액 광구당 1,200원,
변경등록 광구당 10원,
취소등록 광구당 10원.

3) 어업권 등록

처음등록 세액 건당 1천원,
변경등록 건당 10원,
취소등록 건당 10원.

4) 기술자격 면허증 발급

세액 건당 20원부터 1천원까지.

2. 자동차 리용세

승용차 세액 대당 50원, 버스 12석까지 세액 대당 90원, 13
~30석 세액 대당 100원, 31석 이상 세액 대당 120원, 화물
자동차 세액 적재톤당 20원, 특수차 세액 대당 50원, 자동
자전거 세액 대당 20원.

7. 자유경제무역지대법*

제 1 장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의 기본

제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은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창설하고 효과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대외경제협력과 교류를 확대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 2 조 자유경제무역지대는 특혜적인 무역 및 중계수송과 수출가공, 금융, 봉사 지역으로 선포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정한 령역이다.

자유경제무역지대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이 행사된다. 이 지대에서는 국가가 특별히 세운 제도와 질서에 따라 경제 무역활동을 진행한다.

제 3 조 국가는 대외경제위원회와 자유경제무역지대 당국을 통하여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개발과 관리운영 사업을 지도한다.

제 4 조 국가는 투자가가 자유경제무역지대에 투자한 자본과 얻은 소득, 그에게 부여된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 5 조 투자가는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서 기업관리와 경영방법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가진다.

제 6 조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서의 모든 활동은 이 지대에 관련한 공화국의 법과 규정에 따른다. 자유경제무역지대에 관련한 법과 규정에 규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공화국의 해당 법과 규정에 준한다.

제 7 조 공화국 령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도 이

* 1993. 1. 31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법에 따라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서 경제 무역활동을 할 수 있다.

제 2 장 관리기관의 권한과 의무

제 8 조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관리기관에는 대외경제위원회와 지대당국이 속한다. 대외경제위원회는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개발과 경제관리 운영을 위임받은 중앙집행기관이며, 지대당국은 현지 집행기관이다.

제 9 조 대외경제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국가의 정책에 기초하여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개발, 경제관리 운영과 관련한 집행대책을 세운다.
2.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경제관리 운영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 지도한다.
3. 하부구조 건설부문에서 총투자액 2천만원 이상의 대상과 그밖의 부문에서 총투자액 1천만원 이상의 대상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제 10 조 대외경제위원회는 지대당국을 통하여 투자 승인 신청을 받으면, 해당 투자의 대상에 따라 국가계획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재정부, 국가건설위원회를 비롯한 관계기관들과 합의한 다음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대당국에 알려준다.

제 11 조 지대당국은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개발과 경제관리운영사업을 조직 집행한다.

지대당국은 행정경제부서들과 외국투자자와 관련한 사업을 맡아보는 대외경제부서들로 구성된다.

제 12 조 지대당국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주민행정, 도시경영을 비롯한 행정경제사업을 한다.

2. 사회질서를 유지하며 인신과 재산을 보호한다.
3. 지대의 개발계획을 작성, 선전, 집행한다.
4. 모든 투자신청을 접수하며 총투자액이 하부구조 건설부
분에서 2천만원까지의 대상과 그 밖의 부문에서 1천만원
까지의 대상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5. 기업등록, 영업허가를 한다.
6. 투자가의 로력채용을 방조한다.
7. 토지와 건물을 임대 또는 기타 형식으로 양도한다.
8. 건물, 구축물, 작업장의 건설, 개건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봉사를 제공한다.
9. 이 밖에 지대에 대한 투자와 개발을 촉진하고 관리 운영
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한다.

제 13 조 대외경제위원회와 지대당국은 투자 신청문건을 받
은 날부터 합작기업, 합영기업은 50일, 외국인기업은 80일
안에 기업의 창설을 승인 또는 부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
다.

나라의 안전과 주민들의 건강, 동식물의 생장에 해를 줄 수
있는 대상, 국가가 정한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대상, 경제기
술적으로 뒤떨어진 대상, 경제적 효과성이 없는 대상의 투
자는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 14 조 대외경제위원회와 지대당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자기가 승인한 기업의 창설 또는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투자조건을 어겼을 경우
2. 공화국의 법을 엄중히 위반하였을 경우

제 15 조 지대당국은 외국투자기업에서 일할 근로자들의 기
술기능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기술인재 양성기금을 세우고
양성기관을 운영한다.

제 16 조 지대당국은 자문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다.

자문위원회는 지대당국의 대표, 해당기관, 기업소 대표와 외국투자가대표로 구성되며 지대의 개발과 관리운영 사업을 협의 협조한다.

제 3 장 경제활동 조건의 보장

제 17 조 모든 상품은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자유롭게 들여오며, 그것을 저장, 보관, 가공, 조립, 분해, 선별, 포장, 수리하거나 지대 안에서 국외로 내갈 수 있다.

나라의 안전과 사회도덕생활, 주민들의 건강과 동식물의 생장에 해로운 상품은 들여올 수 없다.

제 18 조 외국투자가는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투자하여 기업을 설립 운영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기관, 기업소, 단체도 국가의 승인밑에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단독으로 또는 외국투자가와 합영, 합작의 형식으로 투자할 수 있다.

제 19 조 외국투자기업과 우리나라의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경제무역활동을 위한 지사, 대리점,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 20 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서 필요한 토지를 임차할 수 있으며, 임대기관의 승인 밑에 임차기간을 연기받을 수 있다.

제 21 조 외국투자기업은 지대 로력알선기관과 맺은 계약에 따라 필요한 로력을 채용하거나 해고할 수 있다.

외국투자기업은 자유경제무역지대 밖의 다른 지역에 있는 우리나라의 기술자, 고급 기능공을 지대 로력알선기관에 신청하여 보장받을 수 있으며, 지대당국, 대외경제부서와의

합의밑에 일부 관리인원과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을 다른나라 사람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 22 조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서 상품의 가격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일부 대중필수품의 가격은 국가가 정한다.

제 23 조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있는 무역항에는 무역선과 선원들이 국적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나들 수 있다.

제 24 조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있는 외국투자기업은 원료, 자재와 부분품의 가공을 지대 밖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소에 위탁할 수 있다. 지대 밖에서 수행한 가공액이 기업의 전체 생산액의 40%를 넘지 않는 경우 그 위탁가공은 지대 안에서 수행한 생산활동과 같은 것으로 인정한다.

제 4 장 관 세

제 25 조 국가는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특혜관세제도를 실시한다.

제 26 조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다음과 같은 상품에 대하여서는 관세를 면제한다.

1. 가공수출을 목적으로 지대 안에 들여오는 상품
2. 생산과 경영에 필요한 물자와 생산한 수출상품
3. 투자가에게 필요한 일정한 량의 사무용품과 생활용품
4. 지대건설에 필요한 물자
5. 통과하는 다른나라의 무역화물

제 27 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 법 제26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1. 다른나라로부터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상품을 팔기 위하여 들여오는 경우

2.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서 생산되었거나 수입한 상품을 우리나라의 다른지역에 팔기 위해 내가는 경우

제 28 조 외국투자기업이 지대 안에서 생산한 상품을 수출하지 않고 지대 안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상품생산에 쓰인 수입원료, 자재와 부분품에 대한 관세를 물어야 한다.

제 29 조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의 기업은 세관의 검사문건과 상품의 송장을 비롯한 상품의 반출입과 관련된 문건을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 5 장 통화, 금융

제 30 조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유통화폐는 조선 원으로 하며 모든 거래에 대한 결제는 조선 원 또는 전환성 외화로 할 수 있다.

조선 원에 대한 외화의 환산은 외화관리기관이 발표한 비율에 따라 한다.

제 31 조 외국투자기업은 외화관리기관과의 합의밑에 우리나라와 다른나라의 은행에 돈자리를 둘 수 있다.

제 32 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우리나라와 다른나라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받을 수 있다. 대부받은 조선 원과 외화로 산 조선 원은 우리나라 은행에 예금하고 써야 한다.

제 33 조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있는 은행은 외화관리기관의 승인밑에 비거주자들 사이의 거래를 대상으로 업무를 맡아 할 수 있다.

제 34 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의 정해진 장소에서 외화유가증권을 거래할 수 있다.

제 6 장 담보 및 특혜

제 35 조 외국투자가는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서 기업활동을 하여 얻은 리윤과 리자, 배당금, 임대료, 봉사료, 재산판매 수입금을 비롯한 소득을 국외로 송금할 수 있으며, 국외에서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들여왔던 재산은 경영기간이 끝난 다음 제한없이 국외로 내갈 수 있다.

제 36 조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의 기업소득세율은 결산리윤의 14%로 한다.

제 37 조 경영기간이 10년 이상 되는 생산부문의 외국투자기업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를 리윤이 나기 시작한 해로부터 3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50% 범위에서 덜어줄 수 있다.

총투자액이 6천만원 이상 되는 하부구조 건설부문의 외국투자기업에 대하여서는 기업소득세를 리윤이 나기 시작한 해로부터 4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은 50% 범위에서 덜어줄 수 있다.

제 38 조 장려부문에 투자하는 투자가에게는 립지조건이 유리한 토지를 임대하여 주며, 임대료를 낮추어 줄 수 있다.

제 39 조 장려부문에 투자하는 투자가는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대부받을 수 있다.

제 40 조 외국투자자가 리윤을 재투자하는 경우, 그 경영기간이 5년 이상 될 경우에는 납부한 재투자분에 해당하는 소득세액의 50%를 반환받을 수 있다. 하부구조 건설부문에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재투자분에 해당하는 소득세액의 전부를 반환받을 수 있다.

제 41 조 국가는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직접 들어오는 외국인

에게 무사증제도를 실시한다.

제 7 장 분쟁해결

제 42 조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의견
상이는 당사자들 사이의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제 43 조 외국투자기업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분쟁사건은 조
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해당
절차에 따라 심의해결하며, 제3국의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

8. 외화관리법*

제 1 장 외화관리법의 기본

제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화관리법은 외화수입을 늘이고 외화를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인민경제를 끊임없이 발전시키며 대외경제 관계를 확대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 2 조 이 법은 외화거래, 외화유가증권의 발행과 외화현금, 유가증권 및 귀금속의 반출입과 관련한 원칙과 질서를 규제한다.

제 3 조 외화에는 전환성 있는 외국화폐, 국가채권, 전환가능 회사채권을 비롯한 외화유가증권, 수형, 행표, 양도성 예금 증서를 비롯한 외화 지불수단, 기타 외화자금과 장식품이 아닌 금, 은, 백금과 국제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금화, 은 화같은 귀금속이 속한다.

제 4 조 국가는 외화관리기관을 통하여 공화국 령역 안에서 거래되는 외화를 장악하고 관리한다.

제 5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외국환자 업무를 하는 전문은행은 무역은행이다. 다른 은행도 외화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외국환자 업무를 맡아 할 수 있다.

제 6 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령역 안에서는 외화현금을 류통시킬 수 없다.

외화현금을 쓰려고 할 경우에는 조선 원과 바꾸어야만 쓸 수 있다.

* 1993. 1. 31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외화의 사고 팔기와 저금, 예금, 저당은 외국환자 업무를 맡은 은행을 통하여서만 할 수 있다.

제 7 조 조선 원의 내국환자 시세는 외화관리기관이 정한다.

제 8 조 우리나라와 다른나라 사이에 결제할 수 있는 외화는 외화관리기관이 정한다. 외화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정해진 외화가 아닌 다른 외화로도 결제할 수 있다.

제 9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역 안에서 합법적으로 얻은 외화는 법적으로 보호되며 상속할 수 있다.

제 10 조 이 법은 외화를 리용하는 우리나라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에게 적용한다. 공화국 영역 안에서 외화를 리용하는 외국기관, 외국투자기업, 외국투자가, 외국인과 공화국 영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 2 장 외화의 리용

제 11 조 외화는 다음과 같은 거래에 리용할 수 있다.

1. 무역계약과 지불협정에 따르는 거래
2. 무역 밖의 거래
3. 은행에서 조선 원을 사거나 파는 거래
4. 자본거래

제 12 조 대외경제 거래에 따르는 결제는 송금, 대금청구, 지불위탁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

제 13 조 우리나라의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입되는 외화를 조선 원으로 바꾸어 자기의 돈 자리에 넣어야 한다.

외화는 외화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지표와 항목에만 써야 한다.

제 14 조 외화유가증권을 발행하려는 우리나라의 기관, 기업소는 해당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5 조 공화국 국민은 외화를 국가가 정한 기준 안에서만 보유하며, 그 기준이 넘는 외화는 우리나라의 은행에 팔거나 예금하여야 한다.

제 16 조 외국인은 국외로부터 송금하여 왔거나 합법적으로 얻은 외화를 우리나라의 은행에 예금하거나 팔 수 있다.

제 17 조 은행은 외화예금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며, 해당한 리자를 계산하여 준다.

제 18 조 공화국 령역 안에 상주하는 다른나라의 대사관, 령사관, 무역대표부 같은 외국기관은 무역은행에 돈자리를 두어야 한다.

외국투자기업은 외화관리기관과의 합의밑에 우리나라의 은행에 돈자리를 둘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외화관리기관과의 합의밑에 다른나라 은행에도 돈자리를 둘 수 있다.

제 19 조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있는 은행은 외화관리기관의 승인 밑에 비거주자들 사이의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업무를 맡아 할 수 있다.

제 20 조 외국투자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외화자금을 우리나라의 은행으로부터 대부받을 수 있다.

제 21 조 외화 리용에 대한 감독 통제는 외화관리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외화를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분기, 연간 외화재정상태표를 외화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제 3 장 외화의 반출입

제 22 조 외화현금과 외화유가증권, 귀금속은 제한없이 우리나라에 들여올 수 있다.

제 23 조 외화현금은 은행이 발행한 외화교환 증명문건이나

입국할 때 세관신고서에 밝힌 금액 범위 안에서만 공화국
령역 밖으로 내갈 수 있다.

제24조 외화유가증권은 외화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공화
국 령역 밖으로 내갈 수 있다. 입국할 때 세관에 신고한 외
화유가증권은 승인을 받지 않고도 내갈 수 있다.

제25조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는 외화현금, 외화유가증권을
해당한 물건이나 세관신고서 없이 공화국 령역 밖으로 내
갈 수 있다.

제26조 귀금속은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공화국 령역 밖
으로 내갈 수 있다. 입국할 때 들여왔던 귀금속은 세관에
신고한 범위 안에서만 내갈 수 있다.

제27조 외국투자가는 공화국 령역 밖으로 기업운영에서 얻
은 리윤과 기타소득금을 세금없이 전부 송금하거나 자기
자본을 제한없이 이전할 수 있다.

제28조 외국투자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로임과 기타 합
법적으로 얻은 외화의 60%까지를 공화국 령역 밖으로 송
금하거나 가지고 나갈 수 있다.

제 4 장 제 재

제29조 외화관리 질서를 어긴자에게는 정상에 따라 벌금을
몰리며, 비법적으로 거래한 외화와 물건을 몰수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은행거래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30조 외화관리 질서를 어겨 외화적 손해를 준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외화로 보상시킬 수 있다.

제31조 이 법을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일군과 국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9. 토지임대법*

제 1 장 토지임대법의 기본

제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토지임대법은 외국투자가와 외국투자기업에 필요한 토지를 임대하고 임차한 토지를 리용하는 질서를 세우는데 이바지한다.

제 2 조 다른나라의 법인과 개인은 공화국의 토지를 임대받아 리용할 수 있다. 공화국 령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도 이법에 따라 토지를 임대받아 리용할 수 있다.

제 3 조 토지임차자는 토지리용권을 가진다. 임대한 토지에 있는 천연자원과 매장물은 토지리용권의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제 4 조 토지임대는 국토관리기관이 통일적으로 한다.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토지임대는 지대당국이 한다.

제 5 조 합병, 합작기업에 토지를 출자하려는 우리나라의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토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토지리용권을 가질 수 있다.

제 6 조 토지임대기간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이 정한 50년 안에서 계약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 7 조 임대한 토지의 리용권은 임차자의 재산권으로 된다.

제 2 장 토지의 임대방법

제 8 조 토지임차자는 공화국의 법과 규정, 토지임대차 계약

*1993. 10. 27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에 따라 임차한 토지를 관리 리용한다.

제9조 토지의 임대는 협상의 방법으로 한다. 자유경제무역 지대 안에서는 립찰과 경매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0조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토지임차 희망자에게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공한다.

1. 토지의 위치와 면적, 지형도
2. 토지의 용도
3. 건축면적, 토지개발과 관련한 계획
4. 건설기간, 투자의 최저한계액
5. 환경보호, 위생방역, 소방과 관련한 요구
6. 토지임대기간
7. 토지개발상태

제11조 협상을 통한 토지의 임대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임차희망자는 제공한 토지자료를 연구한 다음 기업창설 승인 또는 거주승인문건 사본을 첨부한 토지리용 신청문건을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에 낸다.
2.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토지리용신청문건을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신청자에게 승인여부를 알려준다.
3.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과 임차희망자는 토지의 면적, 용도, 임대 목적과 기관, 총투자액과 건설기간, 임대료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토지임대차 계약을 맺는다.
4. 토지를 임대한 기관은 토지임대차계약에 따라 토지임대료를 받은 다음 토지리용증을 발급하고 등록한다.

제12조 립찰을 통한 토지의 임대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토지의 자료와 립찰 및 개찰 날짜, 립찰절차를 비롯한 립찰에 필요한 사항을 공시하거나 립찰안내서를 지정한 대상자에게 보낸다.

2.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응찰대상자에게 립찰문건을 판다.
3.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립찰과 관련한 상담을 한다.
4. 립찰자는 정한 립찰보증금을 내고 봉인한 립찰서를 립찰함에 넣는다.
5.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경제, 법률부문을 비롯한 관계부문의 성원을 망라하여 립찰심사위원회를 조직한다.
6. 립찰심사위원회는 립찰서를 심사, 평가하며 토지개발 및 건설과 임대료 조건을 고려하여 락찰자를 결정한다.
7.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립찰심사위원회가 결정한 락찰자에게 락찰통지서를 발급한다.
8. 락찰자는 락찰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안에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과 토지임대차계약을 맺고 해당한 임대료를 지불한 다음 토지리용증을 발급받고 등록한다. 사정에 의해 계약체결을 연기하려고 할 경우에는 정한 기간이 끝나기 10일전에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에 신청하여 30일간 연기받을 수 있다.
9. 락찰되지 못한 응찰자에게는 락찰이 결정된 날부터 5일안에 해당사유를 통지하며 립찰보증금을 돌려준다. 이 경우 립찰보증금에 대한 리자를 지불하지 않는다.
10. 락찰자가 정한 기간에 토지임대차계약을 맺지 않은 경우에는 락찰을 무효로 하며 립찰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제13조 경매를 통한 토지의 임대는 다음과 같다.

1.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토지자료, 토지경매자, 장소, 절차, 토지의 기준값 같은 경매에 필요한 사항을 공시한다.
2.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공시한 토지의 기준값을 기점으로 하며 경매를 붙이고 제일 높은 값을 제기한 임차회

망자를 락찰자로 정한다.

3. 락찰자는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과 토지임대차계약을 맺은 다음 토지리용증을 발급받고 등록한다.

제14조 토지임대차는 토지를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용도에 맞게 리용해야 한다. 토지용도를 변경시키려는 토지임차자는 토지를 임대한 기관과 용도를 변경하는 보충계약을 맺어야 한다.

제3장 토지리용권의 양도와 저당

제15조 토지임차자는 토지를 임대한 기관의 승인을 받아 임차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판매, 재임대, 증여, 상속)하거나 저당할 수 있다. 토지리용권을 양도하거나 저당하는 기간은 토지임대차계약에 정해진 기간 안에서 남은 리용기간을 넘을 수 없다.

제16조 토지임차자는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토지임대료의 전액을 물고 계약에 지적된 투자몫을 투자해야 임차한 토지의 리용권을 판매, 재임대, 증여 또는 저당할 수 있다.

제17조 토지리용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리용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 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기타 부착물도 함께 넘어간다.

제18조 토지리용권의 판매는 다음과 같다.

1. 토지리용권의 판매자와 구매자는 계약을 맺고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는다.
2. 토지리용권의 판매자는 계약서 사본을 첨부한 토지리용권 판매신청문건을 토지를 임대한 기관에 내어 승인을 받는다.
3. 토지리용권의 판매자와 구매자는 해당 국토관리기관에

토지이용권 명의변경 등록을 한다.

제19조 토지임차자가 토지이용권을 판매하는 경우 토지를 임대한 기관은 우선적으로 그것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20조 토지임차자는 임차한 토지를 재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첨부한 재임대 신청서를 토지를 임대한 기관에 내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 토지임차자는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를 받기 위해 토지이용권을 저당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기타 부착물도 함께 저당된다.

제22조 토지이용권을 저당하는 경우 저당하는 자와 저당받는 자는 토지임대차 계약의 내용에 맞게 저당계약을 맺어야 한다. 이 경우 저당받는 자는 저당하는 자에게 토지임대차계약서 또는 양도계약서 사본, 토지이용증 사본, 토지의 실태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 토지이용권을 저당받은 자와 저당한 자는 저당계약을 맺은 날부터 10일 안으로 해당 국토관리기관에 토지이용권 저당등록을 해야 한다.

제24조 토지이용권을 저당받은 자는 저당한 자가 저당기간이 끝난 다음에도 채무를 상환하지 않거나 저당계약기간 안에 기업을 해산, 파산하는 경우 저당계약에 따라 저당받은 토지이용권, 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기타 부착물을 처분할 수 있다.

제25조 토지이용권을 저당받은 자가 처분한 토지이용권, 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기타 부착물을 가진 자는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고 해당 등록기관에 명의변경 등록을 하며 토지임대차 계약에 맞게 토지를 리용해야 한다.

제26조 토지이용권을 저당한 자는 저당계약기간 안에 저당

받은 자의 승인없이 저당한 토지리용권을 다시 저당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27조 채무상환이나 기타 원인으로 토지저당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저당받은 자와 저당한 자는 10일 안으로 토지리용권 저당등록 취소 수속을 해야 한다.

제4장 토지의 임대료와 사용료

제28조 토지임차자는 토지를 임대한 기관에 토지임대료를 물어야 한다. 토지임대료는 토지리용권의 값이다.

제29조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개발한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차자로부터 토지개발비를 토지임대료에 포함시켜 받는다. 토지개발비에는 토지정리와 도로건설 및 상하수도, 전기, 통신, 난방시설 건설에 지출된 비용이 속한다.

제30조 토지임차자는 임대차계약을 맺은 날부터 90일 안에 토지임대료의 전액을 물어야 한다. 장려부문이나 임대료가 많은 토지개발부문은 임차자가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과의 합의밑에 5년 안에 분할해 물 수 있다. 이 경우 미납금에 대해서는 해당한 리자를 물어야 한다.

제31조 협상, 경매를 통해 토지를 임차한 자는 임대차계약을 맺은 날부터 15일 안으로 토지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리행보증금을 내야한다. 리행보증금은 토지임대료에 충당할 수 있다.

제32조 토지임대료를 정한 기간 안에 물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날부터 매일 미납금의 0.1%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물린다. 연체료를 연속 50일간 물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임대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33조 임차한 토지의 리용자는 해마다 국가가 정한 토지사

용료를 물어야 한다. 장려부문과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투자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토지사용료를 10년까지 덜어주거나 면제해 줄 수 있다.

제5장 토지리용권의 반환

제34조 토지리용권은 계약에서 정한 임대기간이 끝나면 토지를 임대한 기관에 자동적으로 반환된다. 이 경우 해당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기타 부착물도 부상으로 반환된다. 토지를 40년이상 임차할 경우 임대기간이 끝나기 10년 안에 준공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해당한 잔존가치를 보상해 줄 수 있다.

제35조 토지임차자는 임대기간이 끝나면 토지리용증을 해당 발급기관에 반환하고 토지리용권 등록취소 수속을 해야 한다.

제36조 토지임대기간을 연장하려는 토지임차자는 그 기간의 6개월 전에 토지를 임대한 기관에 토지리용 연기신청서를 내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토지임대차계약을 다시 맺고 해당한 수속을 하며 토지리용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제37조 토지임차자는 임대기간이 끝난 경우 토지를 임대한 기관의 요구에 따라 건축물과 설비, 부대시설물을 자기비용으로 철거하고 토지를 정리해야 한다.

제38조 임차한 토지의 리용권은 임차기간 안에 취소되지 않는다. 토지를 임대한 기관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임대기간 안에 토지리용권을 취소하려는 경우 6개월 전에 토지임차자와 합의하며 같은 조건의 토지로 교환해 주거나 해당한 보상을 해준다.

제6장 제재 및 분쟁 해결

제39조 토지리용증이 없이 토지를 리용했거나 승인없이 토지의 용도를 변경시켰거나 토지리용권을 양도, 저당한 경우에는 벌금을 물리고 토지에 건설한 시설물을 회수하거나 토지를 원상복구시키며 양도 및 저당계약을 무효로 한다.

제40조 임차자가 토지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기간 안에 총투자액의 50% 이상을 투자하지 않았거나 계약대로 토지를 개발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리용권을 박탈할 수 있다.

제41조 토지임차자가 받은 제재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처벌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제재를 준 기관의 한급 높은 기관에 신소청원하거나 해당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42조 토지를 임대하고 임차한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 저당하는 것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분쟁사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해당절차에 따라 해결하며 제3국의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

10. 외국투자은행법*

제 1 장 외국투자은행법의 기본

제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은행법은 세계 여러 나라들과 금융분야에서의 협조를 확대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 2 조 외국투자가는 공화국 령역 안에 외국투자은행을 설립 운영할 수 있다. 외국투자은행에는 합영은행과 외국은행, 외국은행지점이 속한다. 외국은행과 외국은행지점은 자유경제무역지대에만 설립할 수 있다.

제 3 조 외국투자은행은 은행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며 경영활동에서 독자성을 가진다.

제 4 조 국가는 공화국 령역 안에 설립된 외국투자은행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제 5 조 외국투자은행의 관리운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해당 법과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 6 조 외국투자은행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은행기관과 외화관리기관이 한다.

제 7 조 공화국 령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도 이 법에 따라 공화국 령역 안에 투자하여 은행을 설립 운영할 수 있다.

제2장 외국투자은행의 설립과 해산

*1993. 11. 24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8조 공화국 령역 안에 외국투자은행을 설립하려는 투자는 은행명칭, 책임자의 이름과 락력, 등록자본금, 불입자본금, 운영자금, 출자비율, 업무내용 같은 것을 밝힌 은행설립 신청서를 중앙은행에 내야한다.

제9조 합병은행의 설립신청은 합병당사자가 한다. 합병당사자는 은행설립 신청시에 기본규약, 경제타산서, 합병계약서, 은행관리 성원명단, 외국환자업무 승인문건 사본, 투자자의 영업허가증 사본 같은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외국은행의 설립신청은 외국투자가가 한다. 외국투자는 은행설립 신청서에 기본규약, 경제타산서, 은행관리 성원명단, 투자자의 재정상태표, 영업허가증 사본, 외국환자업무 승인문건 사본 같은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외국은행지점의 설립신청은 본점이 한다. 외국은행 본점은 은행설립 신청서에 본점의 기본규약, 연차보고서, 재정상태표, 손익계산서와 본점의 영업허가증 사본, 지점의 세무 및 채무에 대해 책임진다는 보증서, 지점의 경제타산서, 은행관리 성원명단, 외국환자업무 승인문건 사본 같은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중앙은행은 은행설립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0일 안에 은행설립을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제13조 은행설립을 신청한 자는 은행설립을 승인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은행소재지의 도(직할시)행정경제위원회에 은행설립 등록을 하고 영업허가증을 받으며 영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으로 소재지의 재정기관에 세무등록을 해야 한다.

제14조 외국투자은행은 승인된 영업기간의 만료, 은행의 통합, 지불능력의 부족, 계약업무의 불리행, 자연재해 같은 사

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산된다. 이 경우 30일 전에 중앙은행에 신청하여 해산승인을 받으며 정산위원회 감독밑에 정산사업이 끝나면 은행설립 등록기관에 등록 취소 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15조 외국투자은행은 영업기간이 끝난 후에도 은행업무를 계속하려는 경우 끝나기 6개월 전에 중앙은행에 신청하여 영업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외국투자은행은 기본규약을 고치거나 은행을 통합, 분리하고 등록자본금과 운영자금, 영업장소를 변경하며 업종을 늘리거나 줄이고 책임자와 부책임자를 바꾸려고 할 경우 30일 전에 중앙은행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고 등록변경 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17조 외국투자은행의 투자가는 중앙은행의 승인밑에 투자한 자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하는 합병은행의 한편 출자가는 상대편 출자가와 합의하여야 한다.

제3장 외국투자은행의 자본금과 적립금

제18조 합병은행과 외국은행은 등록자본금을 조선원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전환성 외화로 1차 불입자본금을 등록자본금의 50% 이상 가져야 한다. 외국은행 지점은 운영자금을 조선원 8백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전환성 외화로 보유하여야 한다.

제19조 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외국투자은행은 은행설립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1차 불입자본금과 운영자금을 중앙은행이 지정하는 은행에 예금하고 부기검증사무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 외국투자은행은 자기 자본금을 채무의 보증에, 또는 자기 부담채무액의 5%이상에 해당하는 규모로 보유하여야 한다.

제21조 합병은행과 외국은행은 예비기금을 등록자금의 25%에 이를 때까지 해마다 연간결산 리익금에서 5%를 떼어 적립하여야 한다. 예비기금은 결산에서 생긴 손실금을 보상하거나 자본금을 늘리는 데만 쓴다.

제22조 외국투자은행은 상금기금, 문화후생기금, 기술발전기금 같은 필요한 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기금의 종류와 적립비율은 외국투자은행이 정한다.

제4장 외국투자은행의 업무와 결산

제23조 외국투자은행은 다음과 같은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할 수 있다.

1. 외국인 투자기업과 외국기업, 외국인의 외화예금
2. 외화대부, 시좌돈자리 잔고초과 지불업무, 외화수형할인
3. 외국환자업무
4. 외화투자
5. 외화채무 및 계약의무 리행에 대한 보증
6. 외화송금
7. 수출입물자 대금결제
8. 비거주자들 사이의 거래업무
9. 외화 유가증권의 매매
10. 신탁업무
11. 신용조사 및 상담업무
12. 기타 업무

제24조 외국투자은행은 하나의 기업에 자기 자본금의 25%

를 초과하는 금액을 대출할 수 없다.

제25조 외국투자은행은 소재지의 중앙은행 지점에 돈자리를 열고 예금지불준비금을 두어야 한다.

제26조 외국투자은행의 결산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이다. 연간 업무결산은 다음해 2월 안으로 한다.

제27조 외국투자은행은 부기검증사무소의 확인을 받은 연간 재정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연간 업무결산이 끝난 날부터 30일 안으로 분기 재정상태표와 필요한 업무통계를 다음분기 첫날 15일 안으로 외화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제28조 외국투자은행은 다음과 같은 우대를 받는다.

1. 영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이익이 나는 첫해에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하며 그 다음 2년간은 50%범위에서 덜 어줄 수 있다.
2. 우리나라 은행과 기업에 유리한 조건으로 대부하여 얻은 리자수입에 대해서는 거래세를 면제한다.
3. 비거주자들 사이의 거래업무를 통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하거나 낮게 받으며 예금지불준비금을 두지 않는다.
4. 은행을 경영하여 얻은 소득과 은행을 청산하고 남은 자금은 공화국의 외화관리와 관련한 법과 규정에 따라 국외로 세금없이 송금할 수 있다.

제5장 제재 및 분쟁해결

제29조 외국투자은행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벌금을 문다.

1. 승인없이 책임자, 부책임자를 바꾸었거나 은행의 위치를 변경한 경우
2. 예비기금을 정한 규모대로 적립하지 않은 경우

3. 업무검열을 방해하였거나 검열에 지장을 준 경우

4. 정기보고 문건을 정한 기간에 내지 않았거나 사실과 맞지 않게 작성 제출한 경우

제30조 외국투자은행이 승인된 업종 밖의 업무를 한 경우와 승인없이 기본규약을 고쳤거나 등록자본금과 운영자금을 늘렸거나 줄인 경우에는 영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31조 은행설립 신청자가 영업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0개월 안으로 은행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에는 은행설립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32조 은행업무와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한다.

IV. 남북경제회담 및 남북고위급 회담(교류·협력분야)일지

1. 남북경제회담 일지

차수	일 자	장소	주요 제의 내용	
			한 국	북 한
1 차	'84. 11. 15	판문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회담 의제 ○ 교역품목 및 방안 ○ 경제협력방안(선교역, 후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회담 의제 ○ 교역품목 및 방안 ○ 경제협력방안(선합작, 후교류)
2 차	'85. 5. 17	판문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회담 공동제안사항 계속 토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총리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동위원회 설치
3 차	'85. 6. 20	판문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교류 및 협력방안 선 토의 ○ 공동위 구성 수정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위 구성후 경제교류 및 협력방안 토의
4 차	'85. 9. 18	판문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경제회담에서 교류 및 협력방안 토의 ○ 교역품목, 방법, 공동위 설치 등에 관한 합의서 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위 구성후 경제교류 및 협력방안 토의 ○ 공동위 구성에 관한 합의서 제의
5 차	'85. 11. 20	판문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개항 합의 촉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합의서 명칭 -사업추진원칙 -교류대상품목 -거래방식 및 결제은행 -경제협력대상 -공동위 기능 -분과위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개항 의제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합의서 명칭 -사업추진원칙 -교류대상품목 -분과위 수와 합의서 서명시 최고책임자로부터 권한위문제, 국호사용여부 합의 촉구

2. 남북고위급회담(교류·협력분야)일지

일자 및 장소	회담내용	비 고
'90. 9. 4~ 7, 서울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	
10. 16~19, 평양	제2차 "	
12. 11~14, 서울	제3차 "	
'91. 10. 22~25, 평양	제4차 "	
12. 10~13, 서울	제5차 "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합의 및 남북총리 서명
'92. 1. 23, 평화의집	분과위 구성·운영방안 협의를 위한 제1차 대표접촉	
1. 29, 통일각	동 제2차 대표접촉	
2. 7, 평화의집	동 제3차 대표접촉	「남북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가서명
2. 18~21, 평양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공동선언」, 「분과위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의 문본교환 및 발효
3. 18, 평화의집	남북교류·협력분과위 제1차 회의	
3. 25, 중감위 회의실	남북교류·협력분과위 제1차 위원접촉	
4. 2, 중감위 회의실	동 제2차 위원접촉	
4. 10, 중감위 회의실	동 제3차 위원접촉	
4. 18, 통일각	남북교류·협력분과위 제2차 회의	
4. 27, 평화의집	동 제3차 회의	
4. 28, 중감위 회의실	남북교류·협력분과위 제4차 위원접촉	

일자 및 장소	회담내용	비 고
<p>'92. 5. 5~8, 서울</p> <p>5. 30, 통일각</p> <p>6. 26, 평화의집</p> <p>7. 28, 통일각</p> <p>8. 10, 중감위 회의실</p> <p>8. 21, 중감위 회의실</p> <p>9. 3, 평화의집</p> <p>9. 7, 통일각</p> <p>9. 15~18, 평양</p>	<p>제7차 남북고위급회담</p> <p>남북교류·협력분과위 제4차 회의</p> <p>동 제5차 회의</p> <p>동 제6차 회의</p> <p>남북교류·협력분과위 제5차 위원접촉</p> <p>동 제6차 위원접촉</p> <p>남북교류·협력분과위 제7차 회의</p> <p>남북교류·협력분과위 위원장 접촉</p> <p>제8차 남북고위급회담</p>	<p>「제7차 남북고위급회담 공동합의문」,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남북연락사무소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 채택·발효</p> <p>「남북화해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및 분야별 (화해, 불가침, 교류·협력)부속합의서 채택·발효</p> <p>*제8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분야별 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 일자 및 장소를 합의하였으나, 북측의 대화거부로 열리지 못했음 (경제교류·협력공동위 제1차 회의는 '92. 11. 19일 개최하기로 합의했었음).</p>

북한의 대외경제 관련 법령

- 합 영 법(개정)
-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
출입규정
- 외국투자기업 노동규정

이 자료는 북한이 최근 발표한 대외경제관련 법령을
「남북경제회담 핸드북」('93.12, 발간) 별책으로 발간한
것입니다.

합 영 법*

제 1 장 합영법의 기본

- 제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법은 우리 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들 사이의 경제기술 협력과 교류를 확대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 제 2 조 우리 나라의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다른 나라의 법인 또는 개인과 공화국 령역 안에 합영기업을 창설하고 운영할 수 있다. 공화국 령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과도 합영기업을 창설하고 운영할 수 있다. 공화국 령역 밖에서의 합영기업 창설은 이 법에 준하지 않는다.
- 제 3 조 합영은 과학기술, 공업, 건설, 운수를 비롯한 여러 부문에서 할 수 있다. 국가는 첨단기술을 비롯한 현대적 기술을 도입하는 대상,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대상, 하부구조 건설대상,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 대상들에 대한 합영을 장려한다.
- 제 4 조 합영당사자는 합영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 생기는 빚에 대하여 자기 출자액 안에서만 책임진다.
- 제 5 조 합영기업은 당사자들이 출자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며 독자적으로 경영활동을 한다.
- 제 6 조 합영기업은 해당 등록기간에 등록된 날부터 공화국의 법인으로 된다. 국가는 합영기업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 제 7 조 국가는 장려하는 대상과 공화국 령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과 하는 합영기업, 일정한 지역에 창설된

* 1984. 9. 8제정, 1994. 1. 20개정

합영기업에 대하여 세금의 감면, 유리한 토지리용 조건의 제공 같은 우대를 한다.

제 8 조 합영기업은 경영활동을 이 법에 따라 한다. 이 법에 규제하지 않는 사항은 공화국의 해당 법과 규정에 준한다.

제 2 장 합영기업의 창설

제 9 조 합영을 하려는 우리 나라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외국투자가는 관계기관들과 합의하고 합영계약을 맺은 다음 정무원 대외경제기관 또는 자유경제무역지대 당국에 기업의 기본규약, 계약서 사본, 경제기술 타산서 같은 것을 첨부한 합영기업창설 신청문건을 내야 한다. 정무원 대외경제기관 또는 자유경제무역지대 당국은 합영기업 창설 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50일 안에 기업창설을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제 10 조 합영기업의 등록은 기업 창설이 승인된 날부터 30일 안에 도(직할시) 행정경제위원회 또는 자유경제무역지대 당국에 한다. 기업을 등록한 날이 합영기업창설일로 된다. 합영기업은 기업을 등록한 날부터 20일 안에 기업소재지의 재정기관에 세무등록을 해야 한다.

제 11 조 합영기업에 출자하는 뜻은 합영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합영당사자는 화폐재산, 현물재산과 공업소유권, 기술비결, 토지리용권 같은 것으로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자한 것의 값은 해당 시기 국제시장가격에 준하여 합영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 12 조 합영당사자는 자기의 출자몫을 상속할 수 있으며 제 3자에게 양도할 수도 있다.

제 13 조 합영기업은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의 승인 밑에 우리

나라 또는 다른 나라에 지사를 내올 수 있다.

제14조 합병당사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출자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출자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의 허가를 받아 출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 합병기업의 등록자본은 투자규모에 따라 총투자액의 30내지 70% 이상 돼야 한다. 등록자본을 늘리려는 경우에는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과 합의하고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자본은 줄일 수 없다.

제 3 장 합병기업의 기구와 경영활동

제16조 합병기업에는 리사회를 둔다. 리사회는 합병기업의 최고결의기관이다.

제17조 리사회는 합병기업의 기본규약을 수정 보충하거나 합병기업의 발전대책, 경영활동계획, 결산과 분배, 책임자, 부책임자, 재정검열원의 임명 및 해임 같은 중요한 문제들의 결정을 한다.

제18조 합병기업에는 책임자, 부책임자, 재정부기성원을 두며 그밖에 필요한 관리성원을 둘 수 있다. 책임자는 자기사업에 대하여 리사회 앞에 책임진다.

제19조 합병기업에는 재정검열원을 둘 수 있다. 재정검열원은 기업의 경영활동정형을 일상적으로 검열할 수 있으며 자기사업에 대하여 리사회 앞에 책임진다.

제20조 합병기업은 기본규약, 리사회의 결정에 따라 관리운영 한다.

제21조 합병기업은 정해진 기간 안에 조업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조업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에 제기하여 조업기일 연장을 승인 받아야 한다.

제22조 합영기업은 영업허가증서를 가져야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 영업허가증서는 투자규모에 따라 정무원 대외경제기관 또는 자유경제무역지대 당국이 발급한다. 영업허가증서를 발급한 날이 합영기업 조업일로 된다.

제23조 합영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공화국 영역 안에서 구입하거나 생산한 제품을 공화국 영역 안에 팔 수 있다. 이 경우 정해진 기간 안에 연간 물자구입 및 제품 판매계획을 해당 기관에 내야 한다.

제24조 합영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수입하거나 생산한 제품을 수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출입 물자에 대해서는 반출입 승인만을 받는다.

제25조 합영기업은 승인된 업종범위에서 경영활동을 해야 한다. 업종을 늘리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정무원 대외경제기관 또는 자유경제무역지대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 합영기업은 종업원을 우리 나라 로력으로 채용해야 한다. 계약에 의해 정해진 관리인원과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은 정무원 대외경제기관과의 합의 밑에 다른 나라 사람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27조 합영기업은 공화국의 노동법과 외국투자기업에 적용하는 노동규정에 따라 로력을 관리, 리용해야 한다.

제28조 합영기업은 외화관리기관과의 합의 밑에 우리 나라의 은행에 돈자리를 두어야 한다. 필요에 따라 외화관리기관과의 합의 밑에 다른 나라의 은행에 돈자리를 둘 수 있다.

제29조 합영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우리 나라 또는 다른 나라 은행에서 대부받을 수 있다.

제30조 합영기업은 경영을 위한 재정부기계산을 외국인 투자기업과 관련한 공화국의 재정부기계산 규범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31조 합영기업은 보험에 들려고 할 경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보험에 들어야 한다.

제32조 합영기업의 종업원들은 직업동맹 조직을 내세울 수 있다. 합영기업은 직업동맹조직의 활동조건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제 4 장 합영기업의 결산과 분배

제33조 합영기업의 결산년도는 1. 1일부터 12. 31일까지로 한다. 연간 결산은 다음해 2월 안으로 한다.

제34조 합영기업의 결산은 총수입에서 원료 및 자재비, 연료 및 동력비, 로력비, 감가상각금, 물자구입경비, 기업관리비, 보험료, 판매비 같은 것을 포함한 원가와 기타 지출을 덜고 결산리윤을 확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35조 합영기업은 등록자본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 될 때까지 해마다 얻은 결산리윤의 5%를 예비기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예비기금은 합영기업의 결산을 매꾸거나 등록자본을 늘리는데만 쓸 수 있다.

제36조 합영기업은 생산확대 및 기술발전 기금, 종업원들을 위한 상금기금, 문화후생기금, 양성기금 같은 필요한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 기금의 종류와 규모, 리용 대상과 범위는 리사회에서 토의 결정한다.

제37조 합영기업은 결산문건을 재정검열원의 검열을 받고 리사회에서 비준한 다음 리윤을 분배해야 한다. 리윤분배는 결산리윤에서 소득세를 바치고 예비기금을 비롯한 필요

한 기금을 공제한 다음 출자몫에 따라 합영당사자들 사이에 나누는 방법으로 한다.

제38조 합영기업은 세금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소득세는 리윤이 나는 해로부터 일정한 기간 감면 받을 수 있다.

제39조 합영기업은 당해년도의 결산 리윤에서 전년도의 손실을 메꿀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기간을 연속해 4년을 넘길 수 없다.

제40조 합영기업은 분기 및 연간 재정부기결산서를 정해진 기간 안으로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과 재정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에 내야 한다.

제41조 다른 나라 합영당사자는 분배받은 리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화국 영역안에 재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소득세에서 재투자분에 해당하는 소득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제42조 다른 나라 합영당사자는 기업운영에서 얻은 리윤과 기타소득, 기업을 청산하고 분배받은 자금을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

제 5 장 합영기업의 해산과 분쟁해결

제43조 합영기업은 존속기간의 만료, 지불능력의 상실, 당사자의 계약의무 불리행, 자연재해 같은 사정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없을 경우 해산된다.

제44조 합영기업은 존속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해산사유가 생기면 리사회에서 토의 결정하고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의 허가 또는 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해산할 수 있다.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의 허가를 받아 해산되는 경우에는 리사회가, 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해산되는 경우에는 재판소

가 청산인들을 임명하고 청산위원회를 조직한다. 청산위원회는 합병기업의 모든 거래 업무를 결속하고 청산을 끝낸 다음 10일 안에 기업등록 취소 수속을 해야 한다.

제45조 합병기업은 존속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에 리사회에서 토의결정한 다음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의 존속기간 연장승인을 받아야 한다. 존속기간의 계산은 도(직할시) 행정경제위원회 또는 자유경제무역지대 당국에 기업을 등록한 날부터 한다.

제46조 합병기업은 행정기관의 지시 또는 행정기관 일군의 행위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해당 웃기관에 신소청원을 할 수 있다. 신소청원을 접수한 기관은 그것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심의처리 해야 한다.

제47조 합병과 관련한 의견 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하며 제3국의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다.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 출입규정*

- 제 1 조 이 규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유경제무역지대 법에 따라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출입질서를 바로 세워 이 지대에 출입하는 외국인들에게 편의를 도모해 주며 나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외국인의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출입은 이 규정에 따라 한다. 공화국 영역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도 이 규정에 따라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출입할 수 있다.
- 제 3 조 외국인의 자유경제무역지대 출입과 관련한 사업은 지대당국의 출입국사업부서가 한다.
- 제 4 조 외국인은 다른나라의 해당기관에서 발급한 려권 또는 그를 대신하는 증명서를 가지고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출입할 수 있다.
- 제 5 조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출입은 국가가 정한 통로로만 한다.
- 제 6 조 공화국의 다른지역을 거치지 않고 직접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오려는 외국인은 지대안의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초청한 문건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초청기관은 외국인이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도착하기 5일전까지 지대당국 출입국사업부서에 출입자들의 명단을 내야 한다.
- 제 7 조 공화국의 다른지역을 거쳐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오려는 외국인은 다른나라에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 및 령사 대표부에서 발급한 사증을 가져야 한다.

*1993. 11. 29 정무원 결정 제75호

제 8 조 다른나라에서 자동차를 리용하여 직접 자유경제무역 지대에 출입하려는 외국인은 지대에 도착하기 5일전까지 서면 또는 인쇄전신이나 모사전신으로 지대당국의 출입국 사업부서에 자동차통행증 발급을 신청해 승인받아야 한다. 자동차통행증의 유효기간은 15일로 한다.

제 9 조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출입을 일정한 기간에 여러 번 반복하려는 외국인은 지대당국 출입국사업부서에 신청하여 30일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다회출입증을 받을 수 있다.

제 10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광증을 가진 다른나라 관광객은 사증없이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출입할 수 있다. 자유경제무역지대를 관광하려는 외국인은 우리나라 해당기관 또는 다른나라에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 및 령사대표부에서 관광증을 받아야 한다.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와있는 외국인이 공화국의 다른지역을 관광하려고 할 경우에는 지대안의 관광봉사기관에서 관광증을 받아야 한다.

제 11 조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출입하려는 우리나라 주재 다른 나라 외교대표부, 경제무역대표부, 국제기구대표부 성원들은 외교부에, 령사대표부 성원은 해당 도행정경제위원회에, 이 밖의 외국인은 우리나라 해당기관에 제기하여 출입증과 자동차통행증을 받아야 한다.

제 12 조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들어왔다가 공화국의 다른지역을 거치지 않고 직접 다른나라로 가는 외국인은 사증없이 출국할 수 있다.

제 13 조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사증없이 들어왔다가 공화국의 다른지역을 거쳐 출국하려는 외국인은 출국하기 5일전에 지대당국 출입국사업부서에 신청하여 사증을 받아야 한다.

제 14 조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와있는 외국인이 공화국의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할 경우에는 떠나기 5일전에 지대당국 출입국사업부서에 신청하여 여행증 또는 사증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자유무역항을 통해 중계되는 무역화물을 자유경제무역지대밖의 공화국 영역을 거쳐 화물자동차로 실어나르려는 외국인인 자동차가 국경을 통과하기 5일전에 해당지역 출입국사업부서에 신청하여 출입증과 자동차통행증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자유경제무역지대 출입과 관련한 여행증, 출입증, 자동차통행증을 발급받을 경우에는 정해진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제17조 여행증, 출입증, 자동차통행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고 할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5일전에 해당 발급부서에 신청하여 기간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

제18조 여행증, 출입증, 자동차통행증은 그 유효기간이 끝난 날부터 1주일안으로 해당기관에 바쳐야 한다.

제19조 자유경제무역지대 출입과 관련한 여행증, 출입증, 자동차통행증을 분실했거나 해당 기일안에 바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 분실한 증명문건을 재발급한 경우에는 정해진 값의 10배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물린다.

제20조 국제테러범, 마약중독자, 마약밀수업자, 전염병환자, 정신병자와 이밖에 환영할 수 없는 인물은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들어올 수 없다.

제21조 증명문건을 위조하였거나 정해진 통로로 다니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증명문건을 회수하고 벌금을 물리며 그 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추방하고 재입국을 금지시킬 수 있다.

외국투자기업 로동규정*

제 1 장 일반규정

제 1 조 이 규정은 외국투자기업과 관련한 법에 따라 외국투자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보장하며 종업원들의 로동생활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 2 조 외국투자기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알선과 채용, 로동보수의 지불, 로동생활 조건의 보장은 이 규정에 따라야 한다. 이 규정에서 규제하지 않은 로동과 관련한 사항은 공화국의 해당 로동법규에 준한다.

제 3 조 이 규정은 공화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투자기업에 적용한다. 외국투자기업에는 외국인투자기업(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과 외국기업이 포함된다.

제 4 조 외국투자기업은 기업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우리나라 인력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다른 나라 사람을 관리인이나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으로 채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정무원 대외경제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 5 조 외국투자기업이 받아들인 인력은 자연재해 같은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일에 동원하지 않는다.

제 6 조 외국투자기업에서 일하는 종업원의 로동보수액은 그의 로동직종과, 기술·기능수준, 로동생산성에 따라 정한다. 로동보수에는 로임·가급금·장려금·상금이 속한다.

제 7 조 외국투자기업은 종업원들이 안전하고 문화·위생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로동조건을 개선하고 그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 증진시키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야

*1993. 12. 30 정무원 결정 제80호

한다.

제 8 조 외국투자기업은 공화국 국민인 종업원들이 사회보험, 사회보장에 의한 혜택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 9 조 외국투자기업은 종업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종업원을 대표하는 직업동맹과 로동계약을 맺어야 한다. 로동계약은 맺은 날부터 법적 효력을 가지며 계약의 수정은 쌍방이 합의하여야 한다. 외국투자기업은 로동계약 문건을 기업소재지 로동행정기관에 내야 한다.

제 10 조 이 규정 집행에 대한 감독통제는 로동행정기관이 한다.

제 2 장 인력의 채용·해고

제 11 조 외국투자기업은 기업운영에 필요한 인력수를 자체로 정하며 인력알선기관과 인력채용계약을 맺고 그에 따라 인력을 받아들여야 한다. 계약시에는 업종별·기능별·인력수·채용기간·인력비·로동생활보장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제 12 조 인력알선기관은 외국투자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기업소재지 안에 있는 인력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기업소재지에서 충족시킬 수 없는 일부 기능공은 다른 지역에 있는 인력으로 보장하여 줄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역 인력알선기관은 해당 기능공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제 13 조 우리나라 기업소를 모체로 하여 창설하는 합작기업, 합영기업은 필요한 인력을 그 기업소의 종업원들 가운데서 먼저 받아들여야 한다.

제 14 조 외국투자기업은 기업소재지 인력알선기관이 보내주는 인력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제 15 조 외국투자기업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직업동맹조직,

해당 인력알선기관과 합의하고 채용기간이 끝나기 전에 종업원을 해고시킬 수 있다.

1. 종업원이 직업병이나 공상이 아닌 병 또는 부상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이미 하던 일 또는 다른 일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기업의 생산경영 또는 기술조건의 변동으로 인원이 남는 경우,
3. 기업이 파산에 직면하여 부득이 하게 인력을 축소하거나 해산을 선포한 경우,
4. 종업원이 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주었거나 로동규률을 엄중히 어긴 경우.

제16조 종업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직을 제기할 수 있다.

1.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득이 하게 일을 그만두거나 다른 일을 해야할 사정이 생긴 경우,
2. 전공이 맞지 않아 자기의 기술·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는 경우,
3. 학교에 입학하여 공부하게 된 경우.

제17조 외국투자기업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종업원을 해고시킬 수 없다.

1. 직업병을 앓거나 일하다가 부상당하여 치료받는 경우,
2. 병으로 6개월까지의 기간에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3. 여성 종업원이 결혼한 경우와 임신, 산전·산후휴가, 젖 먹이는 기간에 있는 경우.

제18조 외국투자기업은 이 규정 제15조 1, 2, 3에 따라 종업원을 해고하거나 제16조 2, 3에 따라 사직을 승인한 경우에는 종업원에게 일한 년한에 따라 보조금을 주어야 한다. 일한 년한이 1년이 못되는 경우에는 최근 3개월 평균로임

액과 일한 년도수에 따라 계산한 보조금을 주어야 한다.

제19조 외국투자기업이 종업원을 해고하거나 사직시키려는 경우에는 1월전에 기업소재지 인력알선기관에 명단을 내야 한다.

제 3 장 기능공의 양성

제20조 외국투자기업은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며 공화국 노동법규에 따라 그들에게 기술·기능급수를 사정하여 주어야 한다.

제21조 외국투자기업은 필요한 경우 기능공 양성을 위한 양성소 또는 양성반을 조직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 자유경제무역지대 당국은 외국투자기업이 요구하는 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양성기관을 조직 운영할 수 있다. 기술인재 양성은 종업원·재직일군 양성, 학교졸업생들의 취업전 양성의 형태로 한다.

제 4 장 노동시간과 휴식

제23조 종업원들의 노동일수는 주 6일, 노동시간은 하루 8시간으로 한다. 노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노동시간을 이보다 짧게 할 수 있다. 계절적 제한을 받는 부문에서는 연간 노동시간범위에서 노동시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24조 외국투자기업은 종업원에게 시간외 로동을 시키지 말아야 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간외 로동을 시키려고 할 경우에는 직업동맹조직과 합의하고 시간외 로동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월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5조 외국투자기업은 공화국의 법에 따라 해당한 종업원에게 명절일과 공휴일 휴식, 정기 및 보충 휴가와 산전·산후 휴가를 주어야 한다. 명절일과 공휴일에 일을 시켰을 경우에는 1주일 안으로 대체휴가를 주어야 한다. 외국투자기업은 해마다 해당한 종업원에게 관혼상제를 위한 1~3일간의 특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기간에는 왕복여행일수가 포함되지 않는다.

제 5 장 로동보수

제26조 외국투자기업의 종업원 월 로임기준은 2백20원(자유경제무역지대에는 1백60원)보다 낮지 말아야 하며 힘들고 어려운 부분의 로임기준은 높이 정하여야 한다. 외국투자기업은 정한 로임기준에 따라 각종 직제별 로임기준, 로임지불형태와 방법, 가급금·장려금·상금 기준을 자체로 정한다.

제27조 외국투자기업은 생산수준, 종업원의 기술·기능 숙련 정도와 로동생산능률의 제고에 따라 로임수준을 점차 높여야 한다.

제28조 외국투자기업은 휴가 및 보충휴가 기간에 해당한 로동보수를 휴가를 들어가기 전에 종업원에게 주어야 한다. 휴가기간에 해당한 로동보수는 휴가받기전 3개월동안의 로동보수 총액을 실제 가동일수에 따라 평균한 하루 로동보수액에 휴가일수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휴가기간의 로동보수액 계산에는 로임, 가급금, 장려금이 포함된다.

제29조 외국투자기업은 종업원의 잘못이 아닌 기업의 책임으로 일하지 못하였거나 양성기간에 일하지 못한 날 또는 시

간에 따라 일당 또는 시간당 로임액의 60% 이상 해당하는 보조금을 종업원에게 주어야 한다.

제30조 외국투자기업은 공휴일에 일을 시키고 대체휴가를 주지 않았거나 로동시간의 연장작업, 밤일을 한 종업원에게 로임과 함께 일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일당 또는 시간당 로임의 50%에 해당하는 가급금을 주어야 한다. 밤일에는 2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의 사이에 일한 것이 포함된다.

제31조 외국투자기업은 명절날과 밤 2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의 사이에 로동시간외 연장작업을 한 종업원에게 로임과 함께 일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일당 또는 시간당 로임액의 1백%에 해당하는 가급금을 주어야 한다.

제32조 외국투자기업은 세금을 바치고 남은 리윤의 일부로 상급기금을 세우고 직업동맹조직과 협의하여 생산과제를 넘쳐 수행하는데 모범적인 종업원에게 상금을 줄 수 있다.

제33조 외국투자기업은 로임, 가급금, 장려금을 주는 날자를 정하고 그 날에 내주어야 한다. 상금은 평가기간 다음 날에 주어야 한다. 로동보수를 주는 날이 되기전에 사직하였거나 퇴직, 해고시킨 경우에는 그 수속이 끝난 다음에 로동보수를 주어야 한다.

제 6 장 로동보호

제34조 외국투자기업은 로동안전시설을 갖추고 그를 개선 완비하여 작업의 안전성을 보장하며 고열, 가스, 먼지를 막고 채광, 조명, 통풍과 같은 산업위생조건을 보장하여 종업원들이 문화·위생적인 환경에서 일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 외국투자기업은 종업원에게 로동안전 기술교육을 준 다음에 일을 시켜야 한다. 로동안전 기술교육기간은 업종

과 직종에 따라 1~2주일로 한다.

제36조 외국투자기업은 여성종업원들을 위한 로동보호 위생 시설을 잘 갖추어야 한다. 임신 6개월이 넘는 여성에게는 힘들고 건강에 해로운 일을 시키지 말아야 한다. 외국투자기업은 탁아소, 유치원을 조직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제37조 외국투자기업은 종업원들에게 로동보호용구, 작업필수품, 영양식료품 같은 로동보호물자를 제때에 내주어야 한다. 종업원들에게 내주는 로동보호물자의 기준은 공화국의 해당 로동법규에 준하여 외국투자기업이 정한다.

제38조 외국투자기업은 작업도중 종업원이 부상, 중독과 같은 엄중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로동보호 감독기관에 제때에 알리고 관계기관의 사고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 7 장 사회보험·사회보장

제39조 외국투자기업에서 일하는 공화국 공민인 종업원은 병 또는 부상, 일할 나이가 지나 일하지 못하는 경우 사회보험·사회보장에 의한 혜택을 받는다. 사회보험·사회보장에 의한 혜택은 보조금·연금의 지불, 정휴양 및 치료가 속한다. 보조금과 연금을 받으려는 종업원은 보건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보조금과 연금을 받아야 할 사유를 확인하는 문건을 외국투자기업에 내야 한다. 외국투자기업은 사회보험 보조금 지불청구서를 사회보험기관에 내어 확인을 받은 다음 은행기관에서 해당한 사회보험 보조금을 받아 로동보수를 주는 날에 해당 종업원에게 내주어야 한다. 정휴양소에 가고 오는데 드는 려비와 장례보조금은 해당 문건에 의하여 먼저 내주고 후에 청산받아야 한다. 사회보장에 의한 연금·보조금은 외국투자기업이 사회보험기간에

신청문건을 내어 수속한데 따라 사회보장 년금지불 기관에서 달마다 신청문건을 내어 수속한데 따라 사회보장 년금지불 기관에서 달마다 정한 날에 대상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40조 사회보험·사회보장에 의한 보조금·년금은 공화국의 노동법규에 따라 계산한다.

제41조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에 의한 혜택은 사회보험기금에 의하여 보장된다. 사회보험기금은 종업원에게서 받아들이는 사회보험으로 적립된다.

제42조 외국투자기업은 종업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양소, 료양소를 조직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정양소, 료양소의 운영비는 사회보험기금에서 낸다.

제43조 외국투자기업은 사회보험료의 납부, 사회보험기금의 지출에 대하여 기업소재지 사회보험기관과 직업동맹조직의 감독을 받는다.

제44조 외국투자기업은 세금을 바치고 남은 리윤의 일부를 종업원들을 위한 문화후생기금을 세우고 쓸 수 있다. 문화후생기금은 종업원들이 문화·기술수준의 향상과 균중문화체육산업·후생시설 운영 같은데 쓴다. 문화후생기금의 사용에 대한 감독은 직업동맹조직이 한다.

제 8 장 제재 및 분쟁해결

제45조 노동행정기관은 외국투자기업이 이 규정을 어기고 우리나라 인력을 채용 또는 해고하였을 경우에는 벌금을 물린다.

제46조 노동행정기관은 외국투자기업이 노동안전시설과 산업위생조건을 갖추지 않았을 경우에 기간을 정해주어 시정

을 하도록 하며 그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정상에 따라 영업을 중지시키거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제47조 벌금적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벌금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안에 벌금을 적용한 기관의 상급기관에 돌려줄 것을 제기할 수 있다. 벌금을 돌려줄 것을 제기받은 상급기관은 그것을 제기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48조 이 규정의 집행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당사자들이 서로 협의하여 해결한다. 분쟁사건은 공화국의 중재기관 또는 재판기관에서 해당한 절차에 따라 해결한다.

남북 경제회담 핸드북

1993년 12월 24일 인쇄

1993년 12월 27일 발행

발행처 남북회담사무국
(전화 730-3656)

집필·편집 윤 형 덕
김 응 희
한 기 수

인쇄처 문성인쇄(주)

統會 93-12-91

(비매품)

